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87-000679-10

위탁  
의료기관용

2024년도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 지침 안내문



- ▶ 본 지침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 2018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안내',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구 건강여성 첫 걸음 클리닉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민원상담 사례집'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으로 통합 발간하여 시·도 및 보건소의 예방접종 담당자가 예방접종 사업별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발간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지침에 대한 오류정정, 내용 수정, 보완 및 제언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정보시스템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예방접종관리과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침내용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문의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 2024년도 국가예방접종 세부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사업 대상	◦ 12세 이하 아동(2010. 1. 1.이후 출생자)	◦ 12세 이하 아동(2011. 1. 1.이후 출생자)	p. 26
지원 비용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2023년 백신 조달 계약 이후 변경 예정으로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9,410원, DTaP-IPV/Hib 혼합백신은 39,220원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2024년 백신 조달 계약 이후 변경 예정으로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 예방접종 시행비용: 2023년 12월 말 예방접종비용 심의위원회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별도 공지	p. 15
비용 상환 기준 변경	-	◦ 일부 국가지원백신 실시기준 변경으로 비용상환 변경('23.8.7.~) - (MMR 1차, 수두) 최소접종 연령(생후 12개월) 단축인정기간 적용안함 -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7세 이상은 Tdap 1회를 포함하여 Tdap/Td 따라잡기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시 비용지원 가능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2차) 일본뇌염 생백신 간 교차접종시 비용지원 가능 단, 키메라 생백신은 NIP 미지원 백신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제6판)	p. 31
문자 발송 채널 추가	-	◦ 문자발송 채널이 문자메시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으로 추가('24.1.1.~.) ※ 단, 국민비서알림서비스에서 필수예방접종 알림받기를 선택한 대상에 한해	p. 43

##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사업 대상	◦ 12세 이하 아동(2010. 1. 1.이후 출생자)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12세 이하 아동(2011. 1. 1.이후 출생자)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임신 중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p. 51

### 3.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17세 여성 청소년 (2005. 1. 1. ~ 2011. 12. 31. 출생자)</li> <li>18~26세 저소득층 여성 (1996. 1. 1. ~ 2004. 12. 31. 출생자)</li> <li>※ 접종당일 자격확인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17세 여성 청소년 (2006. 1. 1. ~ 2012. 12. 31. 출생자)</li> <li>18~26세 저소득층 여성 (1997. 1. 1. ~ 2005. 12. 31. 출생자)</li> <li>※ 접종당일 자격확인 필요</li> </ul>	p. 67
지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지원기준 변경) : (기존) 실제 생년월일 기준 → (변경)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li> <li>(접종 지원기간 예외적용 삭제) : (기존)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접종지원 → (변경) 사업연도 기준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지원</li> <li>(건강상담) 2010~2011년생 대상 비용지원</li> <li>(건강상담 지원기간 예외적용 삭제) : (기존) 1차접종 24개월 하루 전까지 상담비용지원 → (변경) 사업연도 기준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예) 2010년생은 2023. 12. 31.까지 상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대상자의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li> <li>(접종) 2006년생 여성청소년 및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2024. 12. 31.까지 접종시 비용 지원</li> <li>(건강상담) 2011~2012년생 대상 비용지원</li> <li>※ 2011년생은 2024. 12. 31.까지 상담비 지원</li> <li>※ 2012년생은 2025. 12. 31.까지 상담비 지원</li> </ul>	p. 67

### 4.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이상 어르신(1958. 12. 31. 이전 출생자)</li> <li>※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적용하며, 65세 이후에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5세 이상 어르신(1959. 12. 31. 이전 출생자)</li> <li>※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적용하며, 65세 이후에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li> </ul>	p. 81
사업 목표	해당 연도 신규 65세 대상자의 67% 이상	좌동	p. 80
백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폐기<sup>①</sup>(파손), 오접종~</li> <li>① 위탁의료기관 유효기간 미관리로 인한 백신 폐기 포함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소진이 어려울 경우, 관할 보건소에 사전 재분배 등 요청)</li> <li>* 만료 기한일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체 설정할 수 있으며, 변동시 위탁의료기관에 안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기능 추가(참고용)</li> <li>- 백신비 환수 처리 기능 추가</li> <li>- 위탁의료기관 입고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유효기간 관리 기능 추가</li> <li>- 위탁의료기관 입고백신 유효기간 경과 전 모두 소진 시 해당 백신 유효기간 목록 삭제 기능 추가</li> </ul>	p.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의료기관 사업 참여 철회(폐업)시 백신처리 방법(보건소)</li> <li>- (사업참여 중), (폐업기관) 구분하여 작성</li> </ul>	좌동	p. 84
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교육 과정(2023년) 수강 필요</li> <li>※ 보수교육 과정이 없으므로, 2년마다 기본교육 과정 이수 필요. 즉, '21년도 기본교육 이수한 의료기관'은 기본교육 과정(2023년) 수강 필요</li> </ul>	매 2년마다 기본교육 과정 이수 필요	p. 10

### 5. 기타

2023년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록] 위탁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민원상담사례집 추가</li> <li>(점검표) 자율점검, 방문점검 수정*</li> <li>* 2024.2.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반영 예정</li> <li>(보관기간)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온도 기록지(2년 → 5년)</li> </ul>

# 국가예방접종 용어



- » NIP(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국가예방접종
- » IR(Immunization Registry): 예방접종 전산등록
- » VIS(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 예방접종안내문
- » HBIG(Hepatitis B Immunoglobulin):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 »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대상 감염병	두문자어	백신명
B형간염	HepB	Hepatitis B vaccine
결핵	BCG(피내용)	Intradermal Bacille Calmette-Gúerin vaccine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Td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adsorbed
	Tdap	Tetanus toxoid, reduced diphtheria toxoid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and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폴리오	IPV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i>Haemophilus influenzae</i> type b vaccine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DTaP, IPV, <i>Haemophilus influenzae</i> type b conjugate vaccine
폐렴구균 감염증	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PSV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1	Rotavirus vaccine(monovalent)
	RV5	Rotavirus vaccine(pentavalent)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Measles, mumps, and rubella vaccine
수두	VAR	Varicella vaccine
A형간염	HepA	Hepatitis A vaccine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	Inactiv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LJEV(약독화 생백신)	Live-attenu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인플루엔자	IIV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

# CONTENTS 목 차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공통사항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	3
2. 위탁의료기관 사업 참여 방법 .....	8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	8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9
3) 국가예방접종 사업별 내용 숙지 .....	12
4)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방법 .....	12
5)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기록 및 사업 대상 관리 .....	16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18
7) 사업별 자율점검 실시 및 보건소 방문 점검 협조 .....	19
3. 백신 공급방식별 구매 방법 .....	21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25
1) 사업 개요 .....	25
2) 사업 내용 .....	26
2. 위탁의료기관의 역할 .....	28
1) 예방접종 시행 .....	28
2)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	36
3.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지연접종(Recall/Remind) 안내 서비스 .....	43
4. 귀국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	45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 사업 개요 .....	49
2. 법적 근거 .....	50
3. 사업 추진실적 .....	50
4. 사업 목표 .....	51
5. 사업 내용 .....	51
6. 예방처치 일정 .....	54
7. 비용상환 기준 .....	58
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전산등록 .....	58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65
2. 법적 근거 .....	65
3. 사업 추진실적 .....	66
4. 사업 내용 .....	67
5. HPV 예방접종, 건강상담 실시기준 및 방법 .....	71
6. HPV 비용상환 시 유의사항 .....	74
7. HPV 백신 공급 및 관리 .....	75



# CONTENTS 목 차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1. 사업 개요 .....	79
2. 법적 근거 .....	80
3. 사업 추진실적 .....	80
4. 사업 목표 .....	80
5. 사업 내용 .....	81
6. PPSV23 백신 공급 및 관리 .....	83
7.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	85
8. 예방접종 시행 .....	86
9.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	87
1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90

## [별첨자료]



### 주요서식

〈별첨 1-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93
〈별첨 1-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95
〈별첨 1-3〉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	96
〈별첨 1-4〉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97
〈별첨 1-5〉 예방접종 예진표 .....	98
〈별첨 1-6〉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 .....	99
〈별첨 1-7〉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	100
〈별첨 1-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101
〈별첨 1-9〉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	102
〈별첨 1-1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	103
〈별첨 1-11〉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	104
〈별첨 1-12〉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	105
〈별첨 1-13〉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	106
〈별첨 1-14〉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	107
〈별첨 1-15〉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	113
〈별첨 1-16〉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의료기관) .....	113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방법 .....	117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123
3.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	135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	138
5.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	142
6.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	150



###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1. 아나필락시스 정의 .....	155
2.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	155

# CONTENTS 목 차

## [부록]



### 관련 법령

1.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등의 관련 근거(약칭「감염병예방법」) ..... 161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 170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 173
4.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 181



###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1. 백신 접종기관 준비사항 ..... 185
2. 백신 관리 담당자 지정 ..... 186
3. 백신 입고 및 재고 관리 ..... 187
4. 백신 보관 및 관리 계획 수립 ..... 189
5.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 관리 ..... 190
6. 백신 보관 온도 관리 ..... 193
7. 백신 배치 및 정리 ..... 196
8. 백신 보관 장비 유지관리 ..... 198
9. 백신 보관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 200
10.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 201
11. 백신 폐기 ..... 204
12. 백신 보관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 204
13. 기타 .....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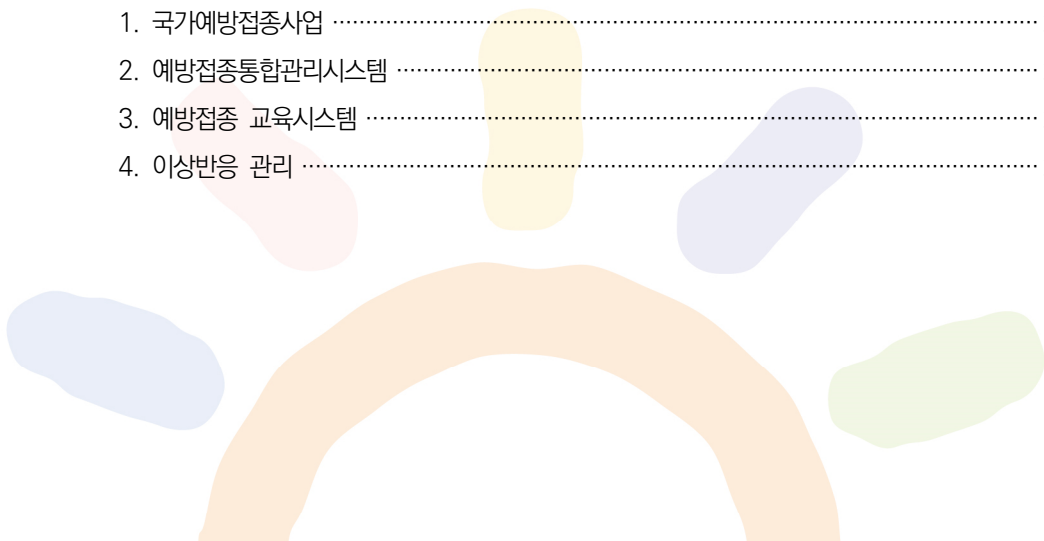
###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1. 어린이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4) .....	209
2. 백신 접종법 .....	210
3.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	212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213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	214
6. Tdap/Td 따라잡기 .....	215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3) .....	217
8.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	219
9.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의료인용) .....	220
10.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감염자관리 안내문(보호자배포용) .....	221
11.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안내문(대상자용) .....	222
1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	223
13. 국가예방접종 백신 유통 현황(2023. 10. 기준) .....	224
14. 2022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	227



### 민원상담 사례집

1. 국가예방접종사업 .....	231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270
3.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	277
4. 이상반응 관리 .....	280



# I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공통사항

<b>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b>	<b>3</b>
<b>2. 위탁의료기관 사업 참여 방법</b>	<b>8</b>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8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9
3) 국가예방접종 사업별 내용 숙지	12
4)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방법	12
5)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기록 및 사업 대상 관리	16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18
7) 사업별 자율점검 실시 및 보건소 방문 점검 협조	19
<b>3. 백신 공급방식별 구매 방법</b>	<b>21</b>





#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으로 예방접종률 향상, 유지하여 감염병 퇴치수준 기반 강화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3조의4,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의5, 제21조의6, 제29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6조, 제47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0-4호)

## 🔍 추진경과

연도	내용
2002년 7월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사업 시행
2009년 3월	◦ 12세 이하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 시행 ※ 백신비 지원
2012년 1월	◦ 12세 이하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 시행 ※ 백신비 및 시행비 일부 지원(본인부담금 5,000원)
2013년 5월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보건소 예방접종 시행
2014년 1월	◦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비용 본인부담 폐지 ※ 백신비 및 시행비 전액 지원(본인부담금 0원)
2016년 6월	◦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시행
2021년 1월	◦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
2022년 3월	◦ 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시행 ※ 13~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2023년 3월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사업 시행



## 사업 목표 및 전략

» (사업목표) 예방접종을 향상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 사업전략

전략	전략내용
1. 공공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의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li> </ul> </li> </ul> </li> <li>◦ 예방접종업무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실시</li> </ul>
2. 대국민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예방접종 대상 보호자에게 자녀의 다음접종 및 누락접종 안내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자서비스는 필수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정보 수신 동의자에게 제공</li> </ul> </li> <li>◦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a href="https://nip.kdca.go.kr">https://nip.kdca.go.kr</a>) 등에서 올바른 전문정보 제공</li> <li>◦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관련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li> <li>- 국·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서비스 제공</li> </ul> </li> </ul>
3. 예방접종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관련 범부처 통합 예방접종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주민정보): 지역사회 예방접종 대상자 정보 공유</li> <li>- 교육부(학생정보): 초·중학교 입학생의 인적정보 및 접종정보 공유</li> <li>- 보건복지부(보육시설 아동정보 등): 어린이집 입소자의 인적정보 및 접종정보 공유, 복지시설·기초생활수급자·장애아동의 정보 공유</li> <li>- 건강보험공단(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의 접종정보 공유</li> <li>-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대상자의 과거 접종정보 공유</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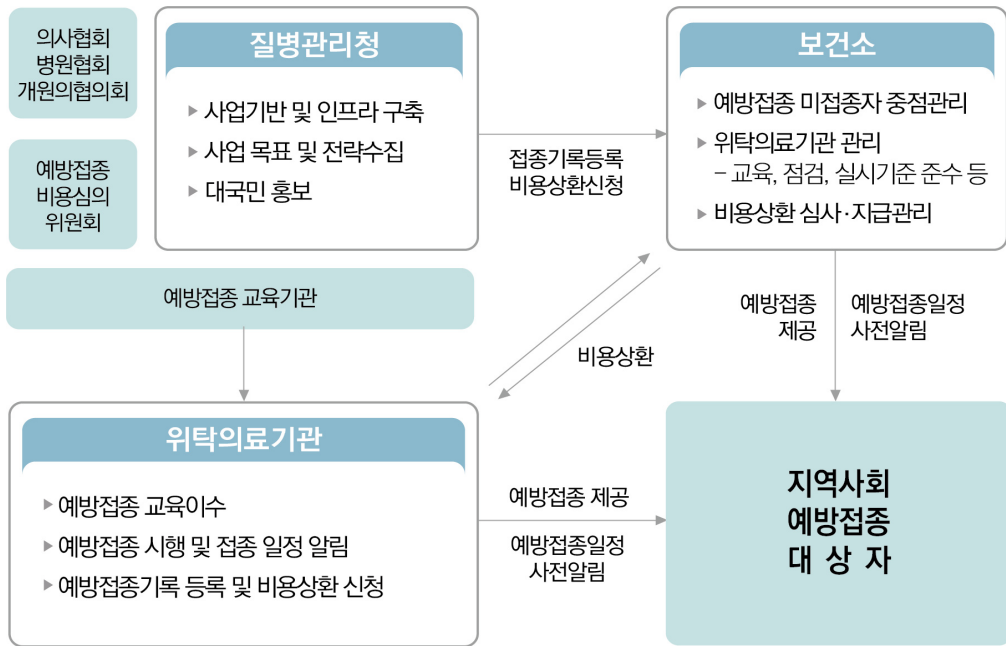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예방접종별 사업대상에게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사업	지원내용
12세 이하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비(18종) 및 예방접종 시행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플루엔자 - 절기별 인플루엔자 사업관리 지침 참조</li> </ul> </li> </ul>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처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면역글로불린 1회</li> <li>②B형간염 기초접종 1~3차</li> <li>③항원·항체 정량검사 1차 비용</li> </ul> </li> <li>* 검사결과에 따라 재접종(최대 3회) 및 재검사(최대 2회)</li> </ul>
HPV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에 대한 본인부담금</li> </ul> </li> </ul>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시행 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li> </ul> </li> </ul>



## 사업체계



## 위탁의료기관 계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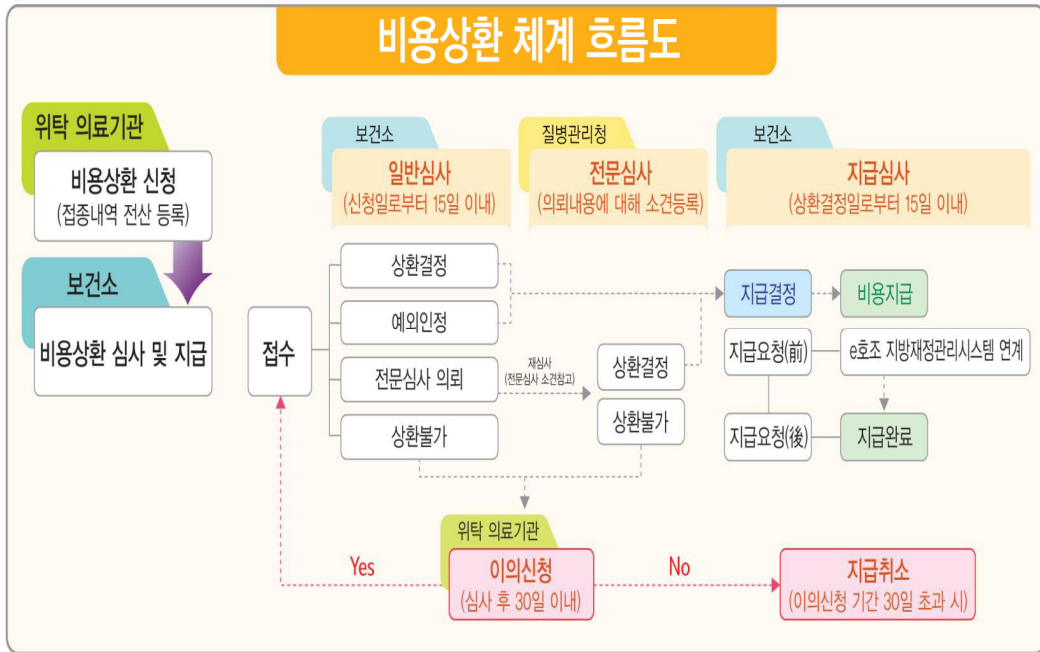
1. 예방접종 교육 이수(의료기관)

  - 사업 참여 전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을 통해 공통필수 및 기본교육과정 이수
  - ※ 위탁의료기관 예진의사는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계약체결(보건소, 의료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보건소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날인하여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후 보건소에서 교부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수령 및 비치
3. 위탁의료기관 공고(보건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위탁의료기관 공고

## 🔍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체계



» (위탁의료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해당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이 사업 대상 기준 및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한 내역에 대해 당일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어린이 사업, B형간염 주사기사업, HPV 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 (지자체)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비용 지급 심사\* 후 비용 지급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심사



🔍 기관별 역할

구분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	위탁의료기관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계획 수립</li> <li>· 사업 관리지침 개발</li> <li>· 사업효과 평가 및 정보 환류</li> <li>· 미접종자 관리방안 마련</li> <li>· 예방접종 담당자 전문 교육 실시</li> <li>· 예방접종 전문교육과정 운영</li> <li>· 대국민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예방접종 계획 수립</li> <li>· 시·군·구 예방접종 계획 점검 및 지원</li> <li>· 시·도 의사회 등 관련 기관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 유지</li> <li>· 시·군·구 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미접종자 관리 방안 마련</li> <li>· 예방접종담당자 전문교육 이수</li> <li>· 지역주민 대상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예방접종 계획 수립</li> <li>· 지역 의사회 등 관련기관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li> <li>· 사업 시행</li> <li>· 지역사회 미접종자 관리</li> <li>· 예방접종담당자 전문교육 이수</li> <li>· 위탁의료기관 교육이수 관리</li> <li>· 관내 지역주민 대상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담당자 전문 교육 이수</li> <li>· 공통필수/기본/보수 교육 이수</li> </ul>
예방 접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관리</li> <li>· 접종률 분석 등 현황 모니터링</li> <li>· 예방접종사전알림</li> <li>· 비용상환 현황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종 현황 모니터링</li> <li>· 관내 지역주민 대상 홍보</li> <li>·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분석</li> <li>· 시·군·구 비용상환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실시기준 숙지</li> <li>· 예방접종실시</li> <li>· 접종기록 등록·관리</li> <li>· 접종 현황 모니터링</li> <li>· 관내 예방접종사업 관련 유관기관에 홍보</li> <li>· 예방접종 사전알림 실시</li> <li>·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접종환경 구비</li> <li>· 예방접종 실시기준 숙지</li> <li>· 예방접종실시 전 과거력 확인 후 접종 시행</li> <li>· 예방접종실시</li> <li>· 접종기록 등록·관리</li> <li>· 예방접종 사전알림 관리</li> <li>· 접종 비용상환 신청</li> </ul>
백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수급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백신수급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구매 및 지역내 백신수급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관리 철저</li> </ul>
위탁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의료기관 현황 및 관리현황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관할 위탁의료기관 현황 모니터링</li> <li>· 위탁의료기관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li> <li>·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 실시</li> <li>· 위탁의료기관 공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계약 체결</li> <li>· 자율점검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li> <li>· 업무협조체계 유지</li> </ul>
예방 접종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li> <li>· 시·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지원</li> <li>·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li> <li>·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반응 발생 보고</li> <li>· 시·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운영</li> <li>· 예방접종 피해조사 실시</li> <li>· 예방접종 소액 피해보상 심의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반응 발생 신고 및 보고</li> <li>· 시·군·구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운영 (기초조사)</li> <li>· 예방접종 피해보상 접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반응 발생 신고 및 보고</li> </ul>
개인 정보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예방접종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 자세한 내용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사업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위탁의료기관 사업 참여 방법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3. 국가예방접종 사업별 내용 숙지
4.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방법
5.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기록 및 사업 대상 관리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7. 예방접종 자율점검 실시 및 보건소 방문점검 협조



### 01 | 예방접종 교육 이수

#### 🔍 예방접종 교육 권한 신청 및 교육 이수

- »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전 참여 희망 사업별 교육 이수 필요
- » **(예방접종 교육 권한 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가입 및 로그인(개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로그인 → 화면 좌측 ‘권한정보’ 클릭 →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 ※ 해당 권한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 8399, 8386)에서 승인함
- » **(사업별 교육이수)** 의료기관 예진의사는 사업 참여 전 ‘공통필수’와 참여 희망하는 ‘사업별 예방접종 기본교육과정’ 이수
  -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참여 희망하는 사업별 교육 이수
- **(운영기간)** 2024. 3. 4. ~ 2025. 2. 28.

구분	교육내용
공통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 참여(위탁계약 체결) 및 갱신 등을 희망할 경우 이수해야할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 유지를 위해 매 2년마다 이수 필요</li> <li>①위탁계약 체결 전 기본교육 시, ②위탁계약 갱신 전 또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시</li> </ul> </li> </ul>
기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이수해야할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 참여는 최근 2년 이내 수료한 기본교육 과정만 인정함</li> <li>※ 기본교육 이수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 인정하지 않음</li> </ul> </li> </ul>
보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이수한 기본교육 또는 보수교육 기한(2년)이 만료한 경우 이수해야할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계약 갱신기간(5년)과 관계없이 매 2년마다 반드시 공통필수와 함께 이수 필요하며, 기한 도래 1개월 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팝업창으로 의료기관에 안내</li> <li>※ <b>(보수교육 미이수) 비용상환 신청 불가</b>하며, 교육이수 및 계약 갱신 후 비용상환 신청 가능</li> </ul> </li> </ul>



## 02\_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 **(계약체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지자체에서 판단 및 고려하여 위탁계약 체결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위탁계약 체결 전 ①사업취지, ②위탁계약 조건, ③사업 지침 준수, ④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⑤관련 시스템 사용법, ⑥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 사업내용 등 숙지해야함

**[참고]**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근거하여 **의사(의과진료과목)**를 두어야 사업 참여 가능  
제43조(진료과목 등)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계약서류)** 위탁계약서, 교육 수수료증\*, 통장사본, 사업별 참여 시행 확인증\*\*
  - ※ HPV 사업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협약서’ 함께 제출
  - \* 공통필수, 기본교육, 보수교육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해당 교육 수수료 필요
  - \*\* **의료기관은 실제 접종 중인 백신을 모두 표기**해야 하며, 표기한 백신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일반인에게 안내되므로 변동시 **현행화 필요 (※ 현행화 누락시 비용상환 신청 불가)**
- » **(계약승인)**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는 보건소 승인한 날부터 계약 유효 (비용상환 신청 가능)
- » **(지정서 게시)** 계약 체결 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출력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받아 게시
- » **(백신관리)**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백신 관리 철저

- ▶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 중인 모든 백신은 계약 체결 필요  
(예) 국가예방접종 18종 백신 중 의료기관에서 10종 백신에 대한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면 10종 백신에 대해 계약체결 가능  
**즉, 일부 백신만 선택적으로 참여 불가**
- ▶ 매년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 자율 및 방문점검 시 계약된 참여백신 구비 여부, 백신 보관 관리, 유효기간 경과백신 처리 등 관리 철저

## 🔍 재계약(계약 갱신): 계약기간 갱신 및 보수교육 이수 필요

» (계약갱신) 5년마다 계약 갱신 필요 ※ 계약기간 만료시점 1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교육이수) 공통필수 및 참여 사업별 보수교육 이수 필요(매 2년)

※ 계약갱신(매 5년) 및 교육이수(매 2년) 한 경우 → 비용상환 신청 가능

※ 계약만료일과 교육수료일 확인방법(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승인관리' 메뉴에서 계약만료일 및 최종 교육 수료일 확인 가능

※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은 보수교육 대신 기본교육(매 2년) 이수 필요

» (계약승인) 보건소 승인일 기준 자동 갱신일 반영

» (기관정보 변경) 의료기관 정보(요양기관번호, 관할 보건소)가 변경되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

- 계약체결 후 기관명 또는 대표자명만 변경했다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오른쪽 상단 '나의정보' 에서 변경 가능

※ 단, 변경사항은 계약갱신(5년) 후에 '의료기관 지정서'와 '위탁계약서'에 반영됨



## 🔍 계약 해지

- » (계약 해지 통보) 보건소는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의료기관에 사전통지 없이 계약 해지 가능
  - 단, 해지일로부터 1년간 모든 국가예방접종 사업 참여 불가능\*을 숙지 필요
    - \* 어린이(B형간염 주사기, HPV 포함),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단, 코로나 19,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은 제외)
  - 신규 계약 시 이전에 발생한 사항을 안내하고, 재발 방지 확인 후 계약 진행
- ※ 예) 위탁계약 해지일 2023. 11. 12. → 2024. 11. 12.부터 계약 진행 가능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제3조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주요 위반 사례 예시]

- ① 사업 시행 전 접종 후 접종 일을 사업 기간 중으로 등록
  - ⇒ 확인된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계약 해지 이후 접종 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가
  -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불가
- ②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접종 내역 허위 등록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해지, 계약 해지 이후 접종 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인정
- ③ 총액계약-사전현물공급 백신과 민간 개별구매 백신의 혼용
- ④ 무료접종 시행 후,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비용 청구한 경우
- ⑤ 백신 냉장고에 음식물 보관 및 적정온도(2~8℃) 유지 이탈 등
- ⑥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하여 오접종<sup>1</sup>이 발생한 경우
  - \*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발생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보건소에서 알게 된 경우 위탁해지 가능
- ⑦ 예진표 보관(5년),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보관(5년), 온도 기록지 보관(5년)

- » (일부 사업만 해지) 해지할 사업(백신)의 '시행확인증 정보'에서 '해지신청'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 서명 후 제출, 나머지 사업은 유지
  - ※ 위탁의료기관은 전산누락된 접종기록이 없는지 확인 후 시행확인증 수정 제출 → 보건소 승인 필요
  - ※ '전체 계약 해지 신청서' 제출 → 보건소 승인 없이 참여 중인 모든 사업 자동 해지(국가예방접종 사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 » (폐업신고) 계약 해지 절차 없이 폐업 신고했다면, 위탁 계약 해지 같음
  - ※ 의료기관에서 폐업신고 시 자동 계약 해지 처리되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이 소멸되니, 반드시 폐업 전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비용상환 신청) 완료 필요
- » (휴업신고) 6개월 이상 휴업 시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체결
  - ※ 정당한 사유(의료기관 이전, 폐업 등)로 계약 해지 했다면 **신규계약** 가능
- » (HPV 사업) 건강상담 시행여부를 위반했다면 관할 보건소에서 사업 참여 해지 가능

☞ (참고) 12세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의 주요 위반 사례 예시

- 참여 의료기관에서 건강 상담 시행을 거부함
- 참여 의료기관이 건강 상담을 시행하지 않고, 상담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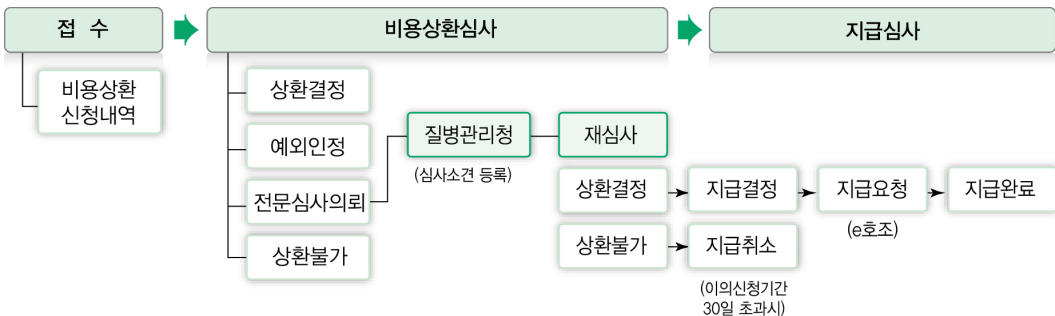
### 03 | 국가예방접종 사업별 내용 숙지

- » 위탁의료기관은 참여할 사업의 대상,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숙지하여 접종을 실시함
  - ※ 2024년 국가예방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숙지 필요

### 04 |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방법

#### 🔍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절차

- ◆ 관내 주민이 관할 보건소와 직접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 시·군·구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급
- ◆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1일소요) 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 심사





» 비용상환 업무 처리 기한

※ 법적근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구분	내용	처리 기한	처리 기관	법적근거
비용상환	신청	비용상환 신청기한(접종 후 30일 이내) 폐지(2015년) 단,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당일에 전산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 등록된 기관에 비용지급 ※ 접종 전 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과거 접종력 반드시 확인	의료 기관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단, <b>신생아 제외</b> ) ※ 위탁의료기관에서 보완 자료 제출에 소요된 기간 (10일)은 제외	보건소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제8조(심사관련 보완자료 요청) 제9조(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비용 지급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보건소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이의 신청	신청	비용상환 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료 기관	제11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심사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 비용상환 관련 기관별 역할 및 유의사항

기관	역할	유의사항
질병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도입 백신 비용상환 기준 마련 및 안내</li> <li>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비용상환 관리</li> <li>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확인 요청</li> <li>보건소 전문심사의뢰건의 심사조건 작성</li> </ul>	-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접종 비용상환 현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접수/미지급 현황</li> <li>- 비용상환 지급기한 미준수 현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용지급 기한 준수 여부 모니터링</li> <li>- 제9조(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의 통보)</li> <li>-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li> </ul>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상환 신청내역 접수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및 비용상환 기준을 참조하여 상환신청 내역의 지급 심사</li> <li>-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수, 심사 및 비용지급 실시</li> </ul> </li> <li>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적합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인적, 중복접종, 비용기준 미준수 접종내역 등</li> </ul> </li> <li>비용상환이 적합하나 시스템 비용신청이 되지 않는 접종내역의 비용청구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종기록 및 상환심사 내역은 신청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로 약 하루 뒤 전송</li> <li>시스템 메뉴 '미접수/미지급내역'을 상시관리하여 비용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li> <li>미전환 신생아번호 대상 및 접종기록 정기적으로 관리(생후 1개월 이상 출생 미신고)</li> <li>'신생아번호관리시스템'으로 전환관리 후 비용처리(미전환 신생아번호 대상)</li> </ul>

기관	역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의료기관에서 피접종자의 관할 보건소로 요청 ⇨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적합성 1차 검토 후 '상환가능'으로 판단한 건 ⇨ 질병관리청으로 비용청구 요청</li> <li>◦ 신생아번호로 등록된 접종내역은 정기적으로 번호 전환관리 후 지급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번호관리시스템'으로 정기적 관리</li> <li>- 생후 1개월 이상 출생 미신고 대상은 임시관리번호 안내 및 발급 후 비용지급심사</li> </ul> </li> <li>◦ 심사결과 이의신청 시 일반심사(당초 심사)를 시행한 보건소에서 이의심사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 다음 날 행안부인증 결과 확인</li> <li>◦ 행안부 인증오류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정보 오류사항 확인 및 수정 후 비용상환 심사 가능(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수정가능)</li> </ul> </li> <li>◦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는 예방접종 비용지급 별도 관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한 예방접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접종자 본인 확인</li> <li>- 과거 접종력 등 확인 후 예방접종 시행</li> <li>- 접종력 및 이중인적(외국인등록번호, 관리번호 등)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전산조회 및 보호자에게 확인 후 권장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li> </ul> </li> <li>◦ 예방접종 당일 접종내역 전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접종 등 방지를 위해 접종 당일 등록</li> <li>-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 등록한 기관에 비용지급</li> </ul> </li> <li>◦ 전산등록 후 비용상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1개월 이상 출생 미신고 대상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도록 안내 ⇨ 해당 번호로 접종기록 등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인적 생성 및 접종기록 중복접종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인적 및 과거 접종력 미확인 등으로 불필요한 접종 시행 시 비용상환 제한</li> </ul> </li> <li>◦ 접종기록 등록정보가 불완전하면 비용신청이 되지 않음(백신 제조번호 등)</li> <li>◦ 임시신생아번호는 반드시 보호자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신고 후 접종기록 통합 및 신속한 비용상환 업무를 위함</li> <li>- 보호자는 모(母)의 인적정보 등록 원칙</li> <li>- 기타 보호자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참조 후 본인확인 필요</li> </ul> </li> <li>◦ '행안부오류내역' 확인 후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로 수정(등록한 의료기관이 수정 가능)</li> <li>◦ B형간염 2차 또는 BCG 접종 시 B형간염 1차 접종기록이 등록된 인적 유무 반드시 확인(보호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인적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 ⇨ 필요시 보건소에 인적통합 요청</li> </ul>



##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대한민국 전자관보 (정책자료)전자관보, 질병관리청 누리집(공고/공시)에 공고

※ 백신비 등 변동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25,590
B형간염	HepB	0.5mℓ	3,790
		1.0mℓ	6,63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11,760
	Td		13,850
	Tdap		22,550
폴리오	IPV		16,2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4,4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36,70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11,300
폐렴구균 감염증	PCV(단백결합) 13		63,960
	PCV(단백결합) 10		52,950
	PPSV(다당질)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950
수두	VAR		15,760
일본뇌염	IJEV(불활상화 백신)	베로세포유래0.4mℓ	12,860
		베로세포유래0.7mℓ	19,980
	LJEV(약독화 생백신)		14,610
A형간염	HepA		13,01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56,550
	HPV 4		66,410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 1(로타릭스)		77,610
	RV 5(로타텍)		52,190

\* 2023. 08. 01. 공고가 기준이며, 2024년 보건소 백신의 조달 계약 이후 변경 예정

2. 예방접종 시행비용(1회당, 2023년 기준): 단독 백신 19,610원,  
 혼합백신 4가(DTaP-IPV) 29,410원, 5가(DTaP-IPV/Hib) 39,220원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2023년 기준)

구분	1회당 지원 단가(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9,220
B형간염 예방접종	28,680
항원·항체 정량검사	60,420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 05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기록 및 사업 대상 관리

### 🔍 예방접종 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 예방접종 기록은 피접종자의 누락접종과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전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종기관 간 공유
- » 접종기관 간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위탁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위탁계약조건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 🔍 사업 대상자 관리

- » 예방접종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본인 확인 후 시행
  - (행안부 오류내역 확인)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오등록한 경우로 행안부 오류내역 확인하여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정정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팝업창 오른쪽 상단에 해당 의료기관의 '행안부오류내역'을 제공하니 잘못된 인적정보를 반드시 정정(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정정 가능)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신고 전 접종기록 관리(B형간염 1차, BCG)를 위해 발급

구분	임시 신생아번호 발급 및 유의사항
임시 신생아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신고 전 접종기록 등록(B형간염 1차, BCG)을 위해 사용하는 임시번호임</li> <li>신생아번호는 내국인(7자리: 생년월일-성별)으로 등록함</li> <li>*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전환 필요, 이중으로 인적번호 및 접종기록이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번호를 처음 등록한 접종기록의 인적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및 관리</li> <li>-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면 행안부 연계(익일)되어 인적 관할 보건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li> </ul> </li> <li>(주민등록번호 자동보완) 신생아번호는 생후 2개월(내국인)까지 행안부 연계되어 인적번호가 자동보완 되어 주민등록번호 형태로 변경됨</li> <li>- (자동보완 불가) 신생아번호 인적 정보와 출생신고 후 인적정보(생년월일, 보호자 정보 등)가 불일치하면 자동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의료기관은 신생아번호로 접종등록 시 인적관련 정보 정확하게 등록</li> <li><b>B형간염 2차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B형간염 1차 접종내역이 등록된 신생아번호 인적이 존재하는지 시스템에서 조회 후 인적번호 없을 시 신규등록(이중인적 등록 방지)</b></li> <li>- (기등록 신생아번호 유무 조회)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서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부모 및 기타)를 검색조건으로 조회하여 동일한 인적이 있는지 확인 필수</li> <li>- (주민등록번호 발급 후 방문) 정보 불일치로 인적번호 자동보완이 되지 않은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신규로 등록하지 않고 신생아번호 유무를 확인 후 기등록된 신생아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등록 하여야 함(외국인등록번호는 자동보완 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전환 후 접종 등록)</li> <li>* 전환방법: 등록시스템 “<input checked="" type="checkbox"/>신생아(주민번호 없음)” 체크박스를 해제(<input type="checkbox"/>)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저장한 후 방문 당일 실시한 접종 내역을 등록함</li> <li>(관리번호 발급 안내) 부득이하게 출생신고(1개월 이내)가 지연되는 경우,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발급 안내 필요(보건소만 발급 가능)</li> </ul>

» (임시관리번호 발급 안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사업대상에게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안내 필요

※ 과거 임시관리번호(예방접종만 가능) 발급 여부 확인 필요

구분	임시관리번호 관련 유의사항
임시관리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의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인적 번호</li> <li>* 임시관리번호 대상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후 반드시 인적통합이 필요하니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거나 시스템 게시판 Q&amp;A 요청(이중등록 주의)</li> </ul>
발급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인) 시설아동번호가 없는 시설아동, 북한이탈주민, 출생 미신고자 등</li> <li>(외국인) ①외국인등록번호 면제자, ②미등록 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주한 외국공관 직원 자녀 등</li> <li>② 비자, 여권(입국일)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 확인 후 관리번호 발급</li> </ul> </div>
보건소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현장발급하여야 함(유선발급 불가)</b></li> <li>피접종자(보호자)의 신분증(여권 등)을 지참한 후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li> </ul>
접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번호 발급 보건소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li> <li>※ 외국인 관리번호발급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가능('22.1.18.~)</li> <li>* 시행일 이전 소급적용 불가</li> </ul>



## 06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 접종 후 예방접종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부록 III-7 참조)

###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발생 시 대응법(별첨 III 참조)

- 접종 후 접종기관에 20~30분 동안 머물러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후속조치 체계 마련
-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별 역할 숙지(예진 의사, 간호사, 보조원 등)

### » 이상반응 신고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예방접종안전관리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기준

구분	세 부 내 용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범위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부록 I 참조)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가능 피해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발생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일부 개정(22.1.25.)에 따라 피해보상신청 기준 완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

구분	세 부 내 용
역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발생사례</li> <li>◦ 사례 발생 시 기관별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이상반응 담당자는 중증이상반응 발생사례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li>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a href="https://is.kdca.go.kr">https://is.kdca.go.kr</a>)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예방접종안전관리 → 중증이상반응 신고관리</li> <li>- 시·도 역학조사반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실시 및 분석</li> <li>-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이상반응과 백신과의 관련성 규명</li> </ul> </li> </ul>
피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예방접종피해 보상 신청 건</li> <li>◦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피해 보상 신청 접수</li> <li>◦ 시·도 역학조사반은 보상신청 사례에 대한 기초피해조사 실시</li> <li>◦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피해조사 결과 검토 및 필요시 정밀피해조사 실시</li> <li>※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및 피해보상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조</li> </ul>



07 | 사업별 자율점검 실시 및 보건소 방문 점검 협조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 점검 협조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실시(연 2회)

- (자율점검 실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적 등과 관계없이 참여 중인 사업별 점검표를 통합 작성(상·하반기 각 1회)하여 제출(전자문서)
  - ※ 어린이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사업, HPV 지원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 ※ 성인(어르신,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만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은 하반기 자율점검만 시행(절기사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방법]

-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메뉴에서 [점검표 등록] 클릭 및 작성 → [확인 및 서명] 클릭 → 서명 → 저장(제출 완료)
- (수정) 제출한 자율점검표 수정이 필요하다면,
  - (보건소 승인 전) 위탁의료기관에서 점검표를 삭제 후, 재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 승인 후) 관할 보건소에 점검표 삭제 요청 후, 재작성하여 제출

◆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사항**

- **(일반사항)**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게시, 계약 체결한 백신 사전 구비, 예방접종 예진표 및 예방접종 안내문(MS) 비치 등
- **(예방접종 실시)** 예진표 비치 및 작성, 접종력 확인(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예방접종 수첩), 백신종류 및 투여방법 설명,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 반응 설명,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접종 후 20~30분간 이상 반응 관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문 제공, 이상 반응 신고제도 설명, 접종기록 전산등록 등
- **(백신관리)**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백신 구입시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백신 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 백신 보관 온도 2~8℃ 유지, 온도 점검(1일 2회), 유효기간 확인, 백신 폐기 처리 등
- **(기록보존)** 예진표 보관(5년),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보관(5년), 온도 기록지 보관(5년)

» **위탁의료기관 방문점검 협조(연 1회 이상)**

- **(방문점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점검 실시(연 1회 이상(수시))

※ 보건소는 점검기간 내 사전 예고 없이 방문 가능하며, 미흡사항 조치 확인 등을 위해 1회 이상 방문 점검 후 점검 결과 등록(중복등록 가능)

**[방문점검 사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확인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는지 등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 지침 등 변경사항 준수 관리 철저(필요 시 자체교육 실시)
- 백신 보관 냉장고의 청결 상태 및 콜드체인 유지 등 점검

◆ **온도 이탈 주의사항**

- **(온도 이탈 주요사례)** 냉장고 고장 및 이상, 멀티탭 사용 등으로 인한 전원 미공급
- **(온도계 문제)** 온도계 고장, 디지털온도계, 자동온도기록계 미보유 등
- **(관리 부주의)** 알람온도 오 설정 및 온도계 알람 무시(알림 off), 냉장고 온도조절 미숙, 백신 상온 방치, 냉동보관, 백신관리 담당자 주관의 육안 모니터링 미실시 등

◆ **행정조치 예시**

- **(주의)**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백신 파손, 경미한 온도 이탈\* 등 사고 1회 발생한 경우
  - \* 사고보고서 제출 후 사용 가능 판정을 받은 사례
- **(경고)** 온도 이탈 사고가 2회 반복 발생 또는 백신관리담당자가 직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
  -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대한 숙지 부족 등
- **(해지)** 온도 이탈 사고가 2~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대량의 백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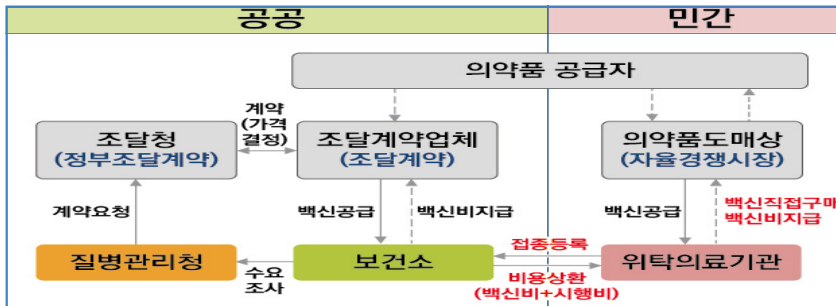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 현황 파악 및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모든 의사의 예방접종 전문 교육과정(공통필수, 기본교육,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3 | 백신 공급방식별 구매 방법

» (민간개별구매) 위탁의료기관이 백신 물량을 개별 확보하고, 정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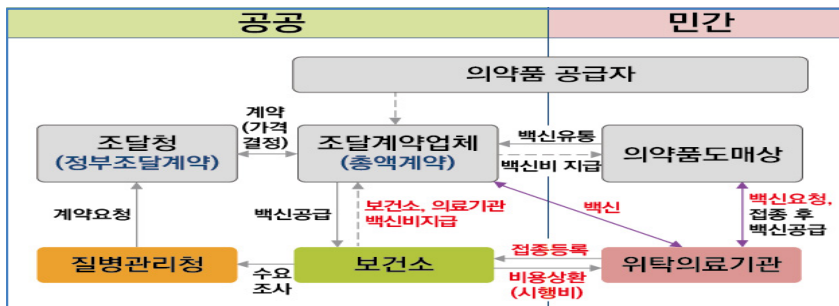
※ 15개 품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Hib, DTaP-IPV/Hib, Td, Tdap, MM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약독화 생백신), 수두, RV1·5가, A형간염(소아용)



» (정부총량구매)

◦ (사후비용차감) 정부에서 특정기간 동안 사용할 물량을 일괄 구매해 확보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정부사업에 사용한 물량의 백신비에 대해 국가가 도매상으로 지원하고, 업체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구매비용을 환급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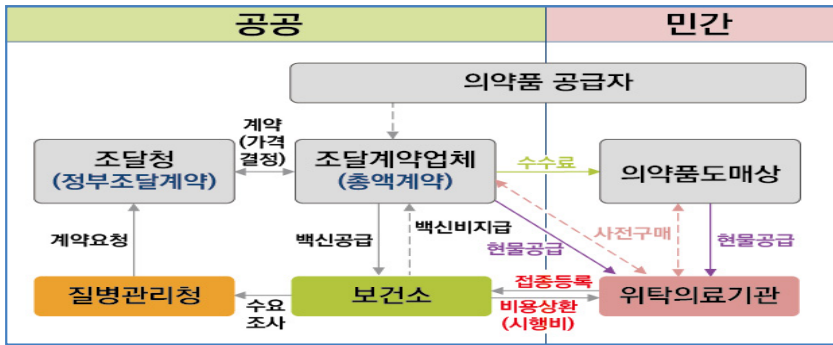
※ 2개 품목: HPV 2가·4가



◦ (사후현물공급) 정부에서 특정기간 동안 사용할 물량을 일괄 구매해 확보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정부사업에 사용한 물량을 사후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

※ 2개 품목: PCV 10가·13가

\* 위탁 의료기관에서 '사후현물공급' 공급받아 보건소에서 조달업체로 백신비를 지급하였으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 삭제 시(오접종, 중복접종, 등록 오류 등) 보건소는 해당 백신비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비 환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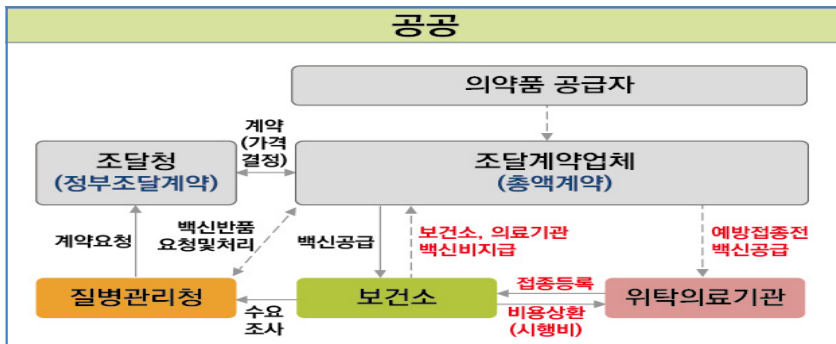


- **(사전현물공급)** 정부가 사업 물량을 일괄 구매 확보해, 사업 전·후로 정해진 규칙과 방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 현물 백신을 배분하고 재분배 하는 방식

※ 5개 품목: 인플루엔자\*, 피내용 BCG, PPSV,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 어린이·임신부 인플루엔자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제외(민간개별구매)

“사전현물공급”으로 공급한 백신의 위탁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폐기(파손, 유효기간 미관리로 인한 폐기포함), 오접종, 중복접종 발생 시 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대체하여 접종 또는 반납(대체 접종(반납) 불가 시 보건소에서 백신비 환수처리)



» **(현물 비축)** 수급불안 대비 현물 비축 사용체계 구축 및 운영

- **(대상)** 전량 수입 의존 백신으로 집단유행 발생 가능 및 국외상황(국외수요증가 및 생산여건) 등에 따라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백신
- **(구축방식)**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조달계약’에 수요기관으로 공급하는 ‘현물공급물량’의 납품과 ‘비축 백신’ 보관 및 순환교체 관리 구분
- **(운영방식)** 조달업체 비축 백신 보관·관리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보건소 등 백신 공급

\* 비축 백신 중 유효기간 도래 백신(3개월 이하)에 대해 현물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 전환된 수량만큼 ‘현물공급물량’에서 ‘비축물량’으로 전환하여 비축물량 유지

# II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1. 사업 개요</b>	<b>25</b>
1) 사업 개요	25
2) 사업 내용	26
<b>2. 위탁의료기관의 역할</b>	<b>28</b>
1) 예방접종 시행	28
2)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36
<b>3.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지연접종(Recall/Remind) 안내 서비스</b>	<b>43</b>
<b>4. 귀국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b>	<b>45</b>





# 1 사업 개요

## 01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과거 예방접종비용이 보건소 이용자에게 한정적으로 지원되어 민간의료기관의 접종비용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 » 이에,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까지 확대 지원함

### 🔍 추진경과

#### » 시범사업 실시 및 근거 법령 제·개정

연도	추진내용	상세내용
2005 ~ 2006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민간의료기관 필수접종비용 지원 시범사업 실시 - 7~12월: 대구 및 군포</li> <li>◦ 2006년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 실시 - 1~12월: 강릉, 연기, 양산</li> </ul>
2006 ~ 2007	근거 법령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6.12.29.)</li> <li>◦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2007.10.)</li> </ul>

#### »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확대 추진

연도	상세내용
2009. 3월	백신비 지원
2012년	백신비 및 시행비 일부 지원(본인부담금 5,000원)
2014년	예방접종비용 전액(본인부담금 폐지)

### » 민간의료기관 지원백신 항목 확대 추진

날짜	백신종류
2009. 3. 1.(8종)	◦ BCG(결핵, 피내용), HepB(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풍진), IJEV(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 VAR(수두), Td(파상풍, 디프테리아)
2011. 10. 6.(9종)	◦ 8종, <sup>추가</sup>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2012. 1. 1.(10종)	◦ 9종, <sup>추가</sup>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2013. 3. 1.(11종)	◦ 10종, <sup>추가</sup>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2014. 2. 14.(12종)	◦ 11종, <sup>추가</sup> LJEV(일본뇌염 약독화생백신)
2014. 5. 1.(13종)	◦ 12종, <sup>추가</sup> PCV(폐렴구균 감염증)
2015. 5. 1.(14종)	◦ 13종, <sup>추가</sup> HepA(A형간염)
2016. 6. 20.(15종)	◦ 14종, <sup>추가</sup>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016. 10. 4.(16종)	◦ 15종, <sup>추가</sup> IIV(인플루엔자불활성화백신)
2017. 6. 19.(17종)	◦ 16종, <sup>추가</sup> DTaP-IPV/Hib(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2023. 3. 6.(18종)	◦ 17종, <sup>추가</sup> RV(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02 | 사업 내용

### 🔍 사업 내용

#### » (사업대상) 12세 이하 어린이(2011. 1. 1. 이후 출생자)

- ※ 사업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적용함. 만약,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지원
- ※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증빙서류로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변경(의료기관 수정불가)

#### » (지원내용)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 (지원백신) 18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IIV), 로타바이러스(R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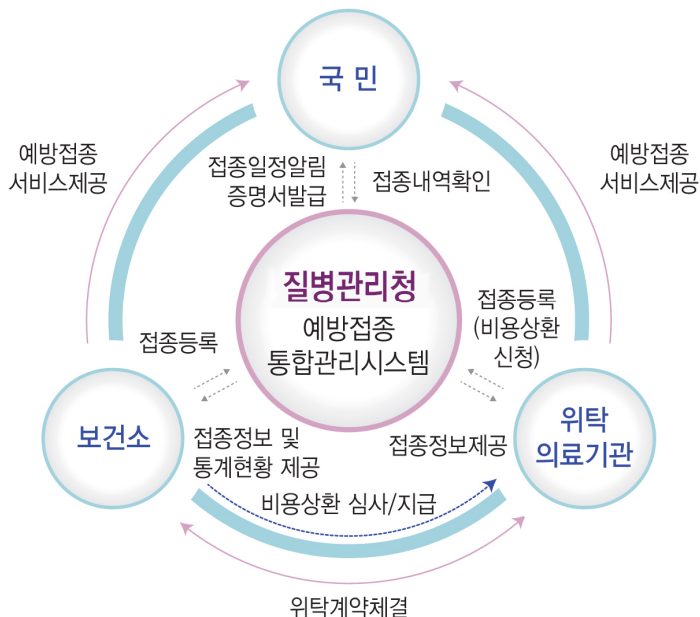
◆ 사업별 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 연령이 다른 백신

백신	지원연령
HepA (A형간염)	2012. 1. 1. 이후 출생자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12~26세 여성 지원 ※ 자세한 내용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조(ρ00.)
IIV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어린이 사업 지원 백신에 HPV, IIV 포함

※ HPV 및 IIV 사업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연령 상이함

» 사업체계



## 2 | 위탁의료기관 역할



### 01 |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 절차

##### • 의료기관 방문

예방접종 전 보호자에게 예진표 작성 안내(예진표 보관 기간 5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과거 접종내역 확인(접종내역 조회 동의 확인)

접종대상자 예진 및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동의 확인

예진 결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설명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및 다음 예방접종일정 안내

#### 🔍 예방접종 시행

#####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 ① 예방접종 예진표(별첨 I-5)를 비치하고, 예방접종 전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작성토록 안내
- ② 피접종자 본인 확인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에서 과거 접종내역 확인

※ 출생신고 전 생후 1개월 이내 접종(B형간염 1차, BCG)이 전산등록되지 않았다면, 신생아번호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종내역을 확인

※ 전산등록 되지 않았으나, 보호자에게 접종을 확인했다면, 접종기관(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

※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됐다면,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 후 접종 실시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무료접종가능



- ③ 예진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설명
- ④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하여 접종 실시(p. 173~180 참조)
- 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및 다음 예방접종 일정 안내
  - ※ 지역 주민 중 보건소 이용자의 접종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건소 접종 권장

## 🔍 예방접종 시행의 세부 내용

### 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보관

- » 예방접종 예진표(별첨 I-5)를 비치하고, 예방접종 전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작성 안내 후 보관(5년,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시 접종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 ② 예방접종 대상자의 본인 확인 및 과거 접종력 확인

- » 예방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
  -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정확한 접종을 위해 접종 전 본인 확인
  - (출생신고 전 신생아 확인) 임시신생아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와 보호자(모(母) 원직)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모(母)의 인적 등록을 원칙으로 하나 모(母)의 정보를 모른다면, 기타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정보 확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후 등록

-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예방접종 기록 통합 관리를 위해 정확한 보호자 인적정보 필요
- ※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됐다면,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안내(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발급)

- (외국인 대상자 확인) 외국인등록번호(「출입국관리법」 제31조)로 본인 확인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등록면제자와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시관리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 ※ 임시관리번호 발급은 접종 대상자의 보건소 방문이 원칙(유선발급 불가)

#### » 과거 접종력 확인

-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과거 접종내역을 반드시 확인





#### ④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과 비용상환 기준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관리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유의사항]

- **최소접종 연령 및 최소접종 간격 준수**
  - 최소접종 연령 및 최소접종 간격을 준수하여 접종함(p. 212 참조)
  - 5일 이상 이른접종은 무효이며, 해당 접종 이후 다음접종과의 접종간격 확인 후 재접종
- **약독화 생백신 간 접종간격 준수**
  - 수두, MMR,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간 동시접종이 가능하나 각 약독화 생백신을 따로 접종할 경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 준수(4일 이하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
- **권장하지 않는 교차접종 지양**
  1. **우발적인 교차접종의 접종력은 인정되는 접종(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 DTaP, DTaP-IPV, DTaP-IPV/Hib, DTaP-IPV-HepB-Hib\* 기초접종의 교차접종 (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
    - HPV2, HPV4, HPV9\* 백신의 교차접종
      - \* 단, DTaP-IPV-HepB-Hib, HPV9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신은 아님
  2. **교차접종 시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는 접종**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간 교차접종
- **권장하는 접종 연령 준수**
  1. **DTaP 백신은 7세 미만에서 접종, DTaP 접종을 미완료한 7세 이상에서는 Tdap 백신으로 접종**
    -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7~10세 연령에서 Tdap 백신으로 접종(11~12세 추가접종 시 Tdap 백신 접종 가능)
    - \* 2018. 10. 1.부터 Tdap 백신 변경된 실시기준 적용
  2. **수두, MMR 1차 최소접종 연령(생후 12개월) 단축인정기간(4일 이하 오차(grace period)) 인정 제외 (2023. 8. 7. ~)**
- **불필요한 추가접종 지양(지연접종시 추가접종 생략)**
  -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IPV: 3차 접종이 지연되어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 단,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 필요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3차 접종이 지연되어 4~9세에 실시된 경우 6세 추가접종은 생략 후 12세에 접종
    - 3차 또는 4차 접종이 지연되어 10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Hib, PCV 접종 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다르므로 주의
    - Hib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종류	첫 번째 접종 시 연령	기초접종	추가접종
PRP-T 또는 HbOC	생후 2~6개월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14개월	1회	2개월 후 1회
	생후 15~59개월	1회	-



• Hib 자연접종 시 따라잡기 접종일정

최소 접종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 접종간격
생후 6주	4주: 생후 12개월 미만 1차 접종한 경우	4주: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생후 7개월 미만 한 경우	8주(마지막접종):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만 필요
	8주(마지막 접종): 생후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1차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59개월이며 1차 접종을 생후 12개월 미만 하고 2차 접종을 생후 15개월 미만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후 15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전 접종을 생후 15개월 이상에서 한 경우	

• PCV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종류	첫 번째 접종 시 연령	기초접종	추가접종
PCV10	생후 2~6개월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59개월	2회	-
PCV13	생후 2~6개월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23개월	2회	-
	생후 24~59개월(건강한 소아)	1회	-
	생후 24~71개월(폐렴감염 감염 고위험군)	2회	-

• PCV 자연접종 시 따라잡기 접종일정

최소 접종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 접종간격
생후 6주	4주: 생후 12개월 미만 1차 접종한 경우	4주: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며 이전 접종을 생후 7개월 미만 한 경우	8주(마지막접종):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 또는 접종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 받은 고위험군
	8주(마지막 접종): 건강한 소아로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7~11 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상이며 1회 이상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한 소아로 1차 접종을 PCV13 으로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단, PCV10으로 접종한 경우 8주 간격으로 접종(마지막 접종))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24개월이 후에 한 경우	



- 7세 이상 DTaP 접종 지연 시 Tdap/Td 따라잡기 일정 준수(부록 III-6)
  -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7세 이상은 Tdap 1회를 포함하여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접종 필요
-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

백신	이식 후 첫 접종시기	기초접종		추가접종
		횟수	최소접종 간격	
<b>불활성화 백신</b>				
B형간염 <sup>1)</sup>	6개월	3	1차-2차 4주, 2차-3차 8주 (1차-3차 16주)	-
DTaP/Tdap/Td <sup>2)</sup>	6개월	3	1차-2차 4주, 2차-3차 6개월 <sup>2)</sup>	- <sup>2)</sup>
폴리오 <sup>3)</sup>	6~12개월	3	4주	- <sup>3)</sup>
폐렴구균 <sup>4)</sup>	3~6개월	3	4주	이식 후 ≥12개월
Hib	6~12개월	3	4주	-
인플루엔자 <sup>5)</sup>	4~6개월	1	-	매년 <sup>5)</sup>
A형간염	6~12개월	2	6개월	-
일본뇌염 <sup>6)</sup>	6~12개월	2	1차-2차 4주	2차 접종 후 ≥11개월
사립유두종바이러스 <sup>7)</sup>	6~12개월	3	1차-2차 4주, 2차-3차 12주 (1차-3차 5개월)	-
<b>약독화 생백신</b>				
MMR <sup>8)</sup>	24개월	2	4주	-
수두 <sup>9)</sup>	24개월	2	13세 미만: 3개월 13세 이상: 4주	-

<sup>1)</sup>B형간염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0, 1, 6개월 일정으로 접종한다.

<sup>2)</sup>나이에 관계없이 DTaP 백신으로 3회 접종할 수 있으며 7세 이상에서는 Tdap 백신 1회 접종 후 Td 백신 2회 접종으로도 가능하다. 1차와 2차 접종 사이의 최소간격은 4주이며, 2차와 3차 접종 사이의 최소 간격은 최소 6개월 간격을 둔다. 단, 7세 미만의 소아는 2차와 3차 접종은 최소 4주 간격을 두며, 4차 접종을 3차 접종과 최소 6개월 간격을 두어 접종한다. 이후 연령에 따라 권장 접종 횟수로 접종한다.

<sup>3)</sup>폴리오는 4세 이전 접종하는 경우 연령에 따른 접종 스케줄을 따르며, 4세 이후 3차 접종 시 2차와 6개월 이상의 간격을 준수하여 4차를 생략한다.

<sup>4)</sup>폐렴구균에 대한 기초접종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하며 필요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3개월 후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추가접종은 폐렴구균 다당백신으로 접종하되 이식편대숙주병이 있으면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한다.

<sup>5)</sup>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 4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1회 더 접종하여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받는 생후 6개월 ~ 9세 미만의 소아는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으로 매년 접종하여야 한다.

<sup>6)</sup>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6~12개월부터 0, 1, 12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한다. 1차와 2차 접종 사이의 최소 간격은 4주이며, 2차와 3차 접종 사이 최소 6개월 간격을 두어 접종한다. 이후의 추가접종은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일반적인 접종 일정을 따른다. 3차 접종이 4세 이후에 시행되었다면 12세에 1회 추가 접종하여 완료한다. 10세 이후에 3번째 또는 4번째 접종을 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완료한다. 11세 이후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0, 1, 12개월의 3회 접종으로 완료한다.

<sup>7)</sup>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6~12개월 이상 경과한 후의 11세 ~ 26세의 여성에게 0, 1, 6개월(HPV 2가) 또는 0, 2, 6개월(HPV 4가 또는 9가)의 일정으로 접종한다.

<sup>8)</sup>MMR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하여야 하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접종을 추천한다.

<sup>9)</sup>수두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전 수두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서 이식 2년 후, 이식 편대 속주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면역억제제 중단 1년 후, 마지막 IVIG 투여 후 최소 8개월이 지나서,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한다(2-1-8 원칙).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2023) p. 598 참조

##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 예방접종 실시한 기록은 ‘자체 전산시스템’ 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당일 등록 (중복접종 등 방지)

### » 예방접종 전산등록 기준 준수

- 표준예방접종시기에 맞춰 접종한 내역의 차수는 순차적으로 등록

#### [예방접종 전산등록 기준 및 유의사항]

##### • DTaP-IPV, DTaP-IPV/Hib 혼합백신

- DTaP-IPV 4가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 ⇨ ‘DTaP-IPV 1~3차에 등록
- DTaP-IPV/Hib 5가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 ⇨ ‘DTaP-IPV/Hib 1~3차에 등록
  - ※ DTaP 기초접종은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
  - ※ DTaP-IPV, DTaP-IPV/Hib 혼합백신과 DTaP, IPV 단독백신을 중복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
  - ※ DTaP 4차 접종은 DTaP 단독백신으로 접종 ⇨ DTaP 4차에 등록
- DTaP 4차, IPV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4~6세 어린이가 DTaP-IPV 혼합백신으로 추가접종 ⇨ ‘DTaP-IPV 추가(4차)’에 등록
  - ※ DTaP-IPV 추가(4차) 접종 전 DTaP 4차 단독백신 접종력 확인
  - ※ DTaP-IPV 추가(4차) 접종은 DTaP 5차, IPV 4차 접종과 동일

##### • Td/Tdap 백신

- DTaP 접종을 완료\*한 11~12세 어린이가 Tdap(또는 Td) 백신 접종 ⇨ ‘Tdap 6차(Td 6차)’에 등록
  - \* DTaP 접종 완료자: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 DTaP 접종력이 불안정한 7세 이상 어린이가 ‘Tdap/Td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접종 ⇨ ‘Tdap 6차(Td 6차)’에(적합한 의학적 소견 선택 후 중복등록 가능)
  - \* (의학적 소견) 7-9세 따라잡기 일정 접종, 10세 이상 따라잡기 일정 접종 중 선택



- DTaP 기초접종을 한번도 받지 않은 7세 이상 어린이가 Td 백신으로 3회 기초접종(1차는 Tdap 백신 접종 권고) ⇨ ①Tdap 백신 접종은 'Tdap 6차'에 등록, ②Td 백신 접종은 'Td(그외) 1, 2차'에 순차적으로 등록  
※ 1~2차는 4주, 2~3차는 6개월의 접종간격을 준수하고 첫 1회 때 Tdap 백신으로 접종
- Hib, PCV 백신
  - 접종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달라지더라도 1차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 MMR 백신
  - 홍역 유행으로 생후 6~11개월 영아에게 접종 ⇨ 'MMR 1차'에 등록(의학적 소견 등록)
  - 생후 12개월 이전 1차 접종하고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에 접종 ⇨ 'MMR 1차'에 중복등록(의학적 소견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선택·입력)
- 일본뇌염 백신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4~9세에 실시(6세 추가접종 생략)하고 12세에 추가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에 등록
  -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으로 교차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차'에 등록  
※ 이후 접종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완료하고 등록
  - 약독화 생백신간 교차접종 ⇨ 순차적 등록
- 로타바이러스 백신
  - 1차 접종 후 교차접종 ⇨ 교차시행한 백신의 2차에 순차적 등록

## 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및 예방접종 안내문 제공

###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무르면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관찰한다.
- 귀가 후 자녀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고열과 경련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도록 한다.
- 아기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우며, 접종 당일과 다음 날에는 과격한 신체활동 금지합니다.

### » 예방접종별 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 제공

- 예방접종 후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에서 내려 받도록 안내한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안내문' 검색) 다운로드



## 02\_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 🔍 국가예방접종 비용상환 기준

#### » 주민등록번호 발급자의 비용상환 기준

비용상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12세 이하 어린이(2011.1.1. 이후 출생자)</li> <li>-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li> <li>* 2011년 이후 출생자가 백신별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하면 비용지원 가능</li> </ul>
BCG (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59개월까지 지원</li> <li>-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일 때 비용지원(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li> <li>- BCG 피내용 백신은 다인용 백신으로 실제 사용한 백신 수량에 대해서만 백신을 공급하므로 백신 개봉 후 첫 접종에 대해서만 백신 청구 예) 1vial 개봉 후 5명 접종 시 백신은 최초 접종건만 비용상환 인정(시행비는 건당 지급)</li> </ul>
Hep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세 이하: 0.5mL 백신 사용</li> <li>◦ 11세 이상: 1.0mL 백신 사용</li> </ul>
Hib, PC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59개월까지 지원</li> <li>- 백신별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서도 비용지원 ☞ 부록 '5. 접종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Hib, PCV 백신 접종 고위험군</li> </ul>
H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 1. 1. 이후 출생자 지원</li> </ul>
IJ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 비용지원 기준</li> <li>- 3세 미만: 0.4mL(0.25mL 접종) 백신 사용</li> <li>- 3세 이상: 0.7mL(0.5mL 접종) 백신 사용</li> </ul>

####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비용상환 기준

신생아번호 대상 비용상환 관련 유의사항	
접종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정보를 반드시 함께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li> <li>◦ 보호자 등록 원칙은 '모(母)'의 인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비용신청 ⇨ 출생신고 시 행안부 데이터(내국인) 자동 연계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변환(등록된 신생아번호 및 보호자 인적정보 기반)되나 시스템 등록정보와 행안부 인적정보가 불일치하면 변환되지 않고 신생아번호로 지속 ☞ 신생아번호의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정확한 보호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함(인적번호 및 접종기록 통합관리)</li> <li>◦ '모(母)'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타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로 확인 필요</li> <li>◦ 신생아번호는 생후 1개월 이내 전산 등록 및 비용신청 가능(B형간염 1차 및 BCG)</li> </ul>



신생아번호 대상 비용상환 관련 유의사항	
관리번호발급 안내 (보건소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후 1개월 이후 출생 미신고 신생아는 임시관리번호(예방접종을 위한 번호)를 발급하여 예방접종 시행 후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li> <li>☞ 관리번호발급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발급 이후 접종기록 및 인적정보가 통합되어야 하므로 보건소 방문하도록 안내 ⇨ 접종기록 관리 및 이종지급 방지</li> </ul>
시설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로 등록하고 비용상환 신청</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CG 또는 B형간염 2차 또는 접종등록 시</li> <li>☞ 접종 대상 조회 시 B형간염 1차 접종내역이 전산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자의 인적정보로 조회하여 신생아번호로 등록된 인적 유·무 반드시 확인</li> <li>* 시스템 대상 검색조건: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amp; 피접종자명,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amp; 보호자명</li> <li>☞ 동일대상의 신생아번호 인적(B형간염 1차, BCG 접종내역이 등록됨)이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신규등록' 하면 이중인적으로 등록되니 주의(이중인적에 대한 중복접종에 대해 비용환수 조치)</li> </ul>

» 외국인 예방접종 대상자의 비용상환 기준

외국인 대상 비용상환 관련 유의사항	
비용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는 내국인에 준하여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li> <li>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기준에 부합 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li> <li>※ 여권 등으로 대상자 반드시 확인 필요(여권이 없는 아동은 보호자 여권 등으로 확인)</li> </ul>
접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해당 사업 참여)</li> <li>☞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2022.1.18.~)</li> </ul>

## 예외인정 및 상환불가 접종의 비용상환 기준

» 예외인정 접종의 비용상환 신청(의학적 소견이 타당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구분	대분류	소분류	비고
공통	◦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이전 접종 최소접종 연령 미준수 · 이전 접종 최소접종 간격 미준수	-
	◦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 의학적 소견 입력 시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으로 선택 후 비용신청 가능	· 이식일자	-
	◦ 면역저하 상태 동안 받은 접종의 재접종(항암치료 후 등)	· 상세사유작성 ※ 면역저하 상태일 때 접종했음을 알 수 있는 상세사유작성	-
B형간염	◦ 고위험군 재접종	· HBsAg 양성 산모의 출생아 · B형간염 만성 감염자의 가족 · 혈액제제 수혈 환자 · 혈액투석 환자	-
BCG	◦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 생후 3개월 내에는 TST 없이 접종가능	· 입원일 및 퇴원일 ※ 출생직후 NICU 입원→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BCG 접종한 경우 TST 결과 없이 비용지원 가능	-
Td 6차	◦ 7~9세 따라잡기 일정 접종	-	-
Tdap 6차	◦ 10세 이상 따라잡기 일정 접종	-	-
일본뇌염 (IJEV, LJEV)	◦ 과거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된 교차 접종	-	-
IJEV	◦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예정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1~2차 최소접종 간격 7일 이상적용	· 의학적 소견 입력 시 '방문국가 및 체류기간' 입력 후 비용상환 가능 예) 일본 방문하여 60일 체류 예정	-
Hib	◦ 고위험군 접종 * 침습 Hib 감염 고위험군 소아에 해당 · Hib 접종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도 접종	· 상세사유작성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Hib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상세사유 작성	-
PCV	◦ 고위험군 접종 * 침습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에 해당 · PCV 접종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도 접종 · 접종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받은 고위험군은 8주 간격을 두고 4차 접종	· 상세사유작성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상세사유 작성	-
PPSV	◦ 고위험군 접종 * 2세 이상 침습 폐렴구균 질환 고위험군 소아에 해당	· 상세사유작성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2세 이상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상세사유 작성	-
MMR	◦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	· 홍역 확진 환자 접촉자 (국내 유행상황 시,	-



구분	대분류	소분류	비고
		확진자 명단확인) · 홍역 유행지역 거주자 (국내 유행상황 시) · 홍역 유행 국외지역 여행 (출국일, 국가명 등 기재)	
HPV	◦ 면역저하소아 * HPV 백신 면역저하자는 총 3회 접종 지원	· 상세사유작성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HPV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상세사유 작성	-
RV	◦ 과거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한 불가피한 교차접종 * RV5가로 한 번이라도 접종되면 총접종 횟수가 3회가 되도록 접종	-	-
주의사항	◦ 접종등록 팝업창 '의학적 소견' 입력 시 <b>사유입력</b> 클릭하여 비용신청 사유에 맞는 대분류를 선택 후 비용상환 신청되므로 주의 필요 ※ 일부 3차 의료기관의 자체 웹서비스 시스템으로 연계 등록 시 비용신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내 필요 (예: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등록을 의학적 소견 대분류 '기타'로 등록 시 비용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의학적 소견 하위분류 선택 항목 외 '기타'로 작성한 경우는 비용기준 적합성 검토 및 의학적 소견 누락 내용 수정하도록 한 후 심사 시행(백신별 실시기준 준수) ◦ Hib, PCV, PPSV 고위험군 및 HPV 면역저하소아 대상 확인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의 해당 백신별 고위험군 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별첨자료 참고('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표) ※ 고위험군 접종은 해당 사업대상 연령 범위 내에서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시 비용지원 기간 예외적용 기준

구분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시 비용지원 기간 예외적용 기준
지원대상	◦ 어린이 사업: '2011년~2012년 출생자가 2024년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경우
예외적용 지원기간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조혈모세포이식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 - 예외적용 대상이 다시 시작하는 접종일정을 완료하기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일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비용지원 기간을 연장함 ☞ 예시) '2011년 출생아' '2024.3.3일 조혈모세포이식' ⇨ 접종 시 '2027.3.2일까지 연장
HPV 상담비	◦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시 상담비는 지원하지 않음
유의사항	◦ 접종등록 시 의학적 소견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대분류 선택하여 이식일을 등록 후 비용신청 가능(해당 경로로 입력하지 않으면 비용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대상이 지원기간 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 상환불가 접종기준

구분	상환불가 접종기준
동일백신 및 동일차수의 중복접종(2009.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접종</li> <li>- 접종차수가 중복되어 등록되었다면 이전 접종력 확인(차수 오류, 유효여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접종은 등록칸에 '노란색'으로 표시( )되어 식별 가능</li> </ul> </li> </ul>
'단축인정기간' 보다 이른접종  · 최소접종 연령에서 5일 이상 앞당긴 접종(2012. 7. ~) · 최소접종 간격에서 5일 이상 앞당긴 접종(2013.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접종 연령 보다 5일 이상 이른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른접종 여부는 '2017년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적용</li> <li>*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을 희망하면 출생증명서류 확인 후 보건소에서 변경</li> </ul> </li> <li>◦ 최소접종 간격 보다 5일 이상 이른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른접종은 무효접종으로 재접종이 필요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li> </ul> </li> </ul> <p>※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 4일 이하의 오차) 적용 제외 접종 주의                      ⇨ 약독화 생백신과 약독화 생백신 사이의 최소접종 간격 4주 반드시 준수                      ⇨ VAR, MMR 1차 접종 시 최소접종 연령의 단축인정기간 적용 제외 주의</p> <p>예) 최소접종 간격 또는 최소접종 연령에 해당되는 날짜가 10월 9일이라면 10월 5일에 접종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상환 가능하고, 이보다 이르게 접종한 경우는 비용상환 불가</p>
서로 다른 IJEV의 교차접종 (2014. 8. 1. ~ 2023. 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뇌염 생백신 사이의 교차접종</li> <li>* 2023. 8. 7. 이후 일본뇌염 생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건 비용상환 가능(국가지원 백신에 한함)</li> </ul>
불필요한 추가접종 (2014.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연접종 등으로 다음 차수의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접종(5차 생략)</li> <li>☞ DTaP 3차와 4차 사이의 접종간격이 4개월 이상이라면 재접종 불필요</li> <li>☞ IPV 3차를 2차와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4세 이후 접종(4차 생략)</li> <li>☞ IJEV 3차를 4~9세에 접종 시 4차를 12세에 실시하여 완료(5차 생략)</li> <li>☞ Hib 및 PCV 백신은 접종 시작 나이 및 중간에 접종이 지연되면 해당 나이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가 다름에 주의 ⇨ 지침서 내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및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 일정표'를 참고</li> </ul> </li> <li>◦ 첫 접종 나이에 따라 총접종 횟수가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PV 1차를 9~14세에 접종 시 2차로 완료(3차 불필요)</li> <li>☞ 65세 이상 연령에 PPSV23 1회 접종하였으면 추가접종 불필요</li> </ul> </li> </ul>
IJEV와 IJEV의 교차접종 (2014.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사이의 교차접종</li> </ul>
서로 다른 IJEV와 IJEV의 교차접종 (2015. 5. 1. ~ 2017.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뇌염 불활성화-베로세포 유래 백신과 쥐뇌조직 백신 사이의 교차접종</li> <li>* 2017. 2. 1. 이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건 비용상환 가능</li> </ul>
4세 이후 IPV 3차 접종 (2019. 4.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세 이후 IPV 3차 접종 시 이전 접종과 최소접종 간격 6개월 미준수한 경우</li> </ul>
DTaP 1~5차 접종완료자 Td 백신 접종 (2020. 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TaP 1~5차 접종 완료한 7~10세 대상에게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li> </ul>



구분	상환불가 접종기준					
허가기준 이외 사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TaP-IPV 백신(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접종으로 허가된 백신을 추가접종에 사용 시 비용상환 불가</li> </ul> </li> </ul>					
	제품명	용법·용량	허가범위	비용상환		시행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비이 (보령바이오파마)	· 기초: 1회 용량 0.5ml씩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기초 추가	○ X	20. 7. 1.
	테트라심 (사노피파스퇴르)	· 기초: 1회 용량 0.5ml씩 · 생후 2, 4, 6개월에 3회 · 추가: 4~6세 0.5ml 1회	기초 및 추가접종	기초 및 추가	○	-
	인편탁사이피비이주 (GSK)	· 기초: 1회 용량 0.5ml씩 · 생후 2, 4, 6개월에 3회 · 추가: 4~6세 0.5ml 1회	기초 및 추가접종	기초 및 추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세 이상에서 1차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2022. 3. 21. ~)</li> </ul> </li> </ul>						
RV1과 RV5 백신 교차접종 (2023. 3.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V1 백신과 RV5 백신을 교차하여 접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총 3회)하기 위해 이전 발생한 백신으로 접종했다면 비용상환 신청 가능</li> </ul> </li> </ul>					
RV 백신 최대접종연령 초과 (2023. 3.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14주 6일 초과하여 1차 접종한 경우</li> <li>· 생후 8개월 0일 초과하여 접종한 경우</li> </ul>					

※ 백신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을 미준수한 접종은 비용지원이 불가하므로 심사에 유의  
 ☞ 예시(HepB 재접종) '항체 미형성' 사유로 재접종은 비용지원 불가(필요시 고위험군에 한하며 적합한 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 예시(Tdap/Td 따라잡기 일정)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7세 이상 소아에게 'Tdap/Td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반드시 Tdap 백신 접종력이 필요한 대상에게 Td 백신 접종 시 접종력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지원 불가

## 🔍 비용상환 신청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시 비용상환 신청(별첨II 참조)
  -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기록 등록 시 자동으로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이 '비용상환 신청비용' 생성되므로 신청금액 확인 후 등록
    - ※ 교육 수료번호 기간만료 시 비용신청 불가하며, 교육이수 및 계약 갱신 후 비용신청 가능

## 🔍 비용상환 신청 결과 조회

- » 비용상환은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수 및 지급심사함
  -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등록
  - ※ 등록된 접종정보가 불완전하면(백신정보 누락 등) 비용상환 신청이 안되므로 정확하게 등록
- » 비용상환 심사결과는 ‘상환결정’, ‘예외인정’, ‘상환불가’, ‘전문심사의뢰’, ‘인증오류’로 분류

심사결과	세 부 내 용
상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대상 기준에 적합하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li> <li>◦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완료시 심사결과에 ‘지급완료’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최소접종 연령 및 최소접종 간격)을 준수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li> </ul> </li> </ul>
상환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접종, 이른접종(최소접종 연령 또는 최소접종 간격 미준수)</li> <li>◦ 불필요한 추가접종(자연접종으로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li> <li>◦ 일본뇌염 교차접종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li> </ul>
예외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적 소견이 타당한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 등(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li> </ul>
전문심사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전문심사를 의뢰한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접종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보건소에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에 ‘전문심사의뢰’ ⇨ 회신결과에 따라 상환여부 결정</li> </ul> </li> </ul>
인증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접종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불가</li> <li>☞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정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및 심사불가 ⇨ 인적정보 신규등록 의료기관에서 오류사항 수정 시 접수 가능</li> </ul> </li> </ul>

## 🔍 비용지급 결과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결과’ 메뉴에서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가 지급한 비용 확인 가능(별첨자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참고)
  - ※ 지급된 비용에 대해 기간별, 접종내역별, 보건소별로 검색 가능

### 3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지연접종(Recall/Remind) 안내 서비스 ●●●

- ※ 해당 서비스는 '예방접종예진표'에 문자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
- ※ (문자발송 채널 추가) 보호자가 국민비서알림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에서 '필수예방접종 알림 받기'를 신청했다면, 국민비서알림서비스 채널로 발송됩니다('24.1.1~). 미신청자는 기존 문자메시지 채널로 발송 예정

#### »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개요

- (내용)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자녀의 다음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
- (필수예방접종 종류)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
- (사전알림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알림 방법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
- 사전알림 공고
  - 지자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 공고를 통해 사전알림 공고
  - 매년 1월 첫째 주 월요일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절차

- 보호자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 하고, 접종기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서비스 제공
  - (사전예약) 접종기관에서 보호자와 다음접종일을 사전 예약했다면, 예약일 2일 전에 접종기관명으로 문자 발송

**(예시)** 안녕하세요  
 000님 다음 예방접종일 안내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2차  
 예방접종 예약일은 2000년 0월 00일입니다.  
 예약일에 접종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접종기관에 문의하여 예방접종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방접종 등과 관련한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 ☎ 1577-1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한 기관명>

- **(사전 미예약)** 접종기관에서 보호자와 다음접종일을 사전 예약하지 않으면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른 접종시기 시작일에 지자체장 명의로 문자 발송  
 ※ 지자체장 명의로 발송 시 발신자번호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LMS번호로 발송됨

**(예시)** (시·군·구청장)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000 어린이의 다음 접종 시작시기를 안내드립니다.  
 ○ 다음 예방접종: IPV(폴리오) 1차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접종일정을 문의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다국어 사전알림)** 다국어\* 다음접종 사전알림 안내 서비스는 접종기관에 ‘휴대전화번호’와 ‘희망언어’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2016. 7. 시행)  
 \* 12종 언어: 네덜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주베키스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 **필수예방접종 지연접종 안내 개요**

- 2013년 출생아부터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하면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누락접종을 안내하는 서비스
- **(알림 주체)** 질병관리청명(예방접종관리과 전화번호)

**(예시)** 질병관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000 어린이의 다음 예방접종이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아 안내드립니다.  
 ○ 전산 미등록 내역  
 - DTaP 1차  
 이미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고, 미완료한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접종일정을 문의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국가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에 동의한 보호자에게 안내



## 4 귀국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 »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귀국 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안내
  -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한 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영문증명서로 접종하신 기관에서 피접종자가 직접 확인·발급
  - 국내에서 어린이집 입소 또는 초·중학교 입학 시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또는 서명)이 표시된 서류 필요
    - ※ 민간기업에서 발급한 아기수첩은 보호자에게 자녀의 접종내역을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불가

### 〈관련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 »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사인(Official Signature or Stamp)된 서류'를 지참하고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 요청하면 전산 등록 실시



# III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 사업 개요	49
2. 법적 근거	50
3. 사업 추진실적	50
4. 사업 목표	51
5. 사업 내용	51
6. 예방처치 일정	54
7. 비용상환 기준	58
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전산등록	58





# 1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는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이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신생아 감염 가능성은 산모의 B형간염 e항원(HBeAg)이 양성인 경우 65~93%, B형간염 e항원이 음성인 경우는 19~25%임<sup>1)</sup>
- »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는 대부분 불현성 감염 후 90% 이상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가 되며 40~50대에 만성간염이나 간경화증으로 이행됨
- » 주산기감염 위험이 높은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백신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 75~80%가 예방되고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97%까지 예방이 가능함<sup>2)</sup>
-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함

## 🔍 추진경과

연도	추진경과
2002. 6. 26.	◦ 정부·의료계가 공동으로 B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2002. 7. 1.	◦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 시작
2008. 9. 22.	◦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 WPRO)에서 한국 B형간염 관리 성과 인증
2014. 1. 1.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수행 방식 변경 - 'B형간염 예방수첩(쿠폰수록)' 발급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비용청구 방식 변경
2014. 6. 5.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1) Kwon SY, Lee CH.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hepatitis B virus infection. Korean J Hepatol. 2011 Jun;17(2):87-95. J Hepatol. 2011 Dec;55(6):1215-21

2) Y. Ghendon. WHO strategy for the global elimination of new cases of hepatitis B. Vaccine 8(supl);129-133

## 2 | 법적 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3 | 사업 추진실적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신규 등록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1.
대상자 추계	12,287	11,956	10,699	9,077	7,977	7,396	6,679	6,384	6,074	4,691
신규 등록자	12,120	11,656	10,173	8,237	7,069	6,103	5,067	4,339	3,540	2,876
등록률	98.6	97.5	95.1	90.7	88.6	82.5	75.9	68.0	58.3	61.3

- \* 자료 : 2023. 11. 30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2014년 전산등록관리 이후 현황)
- ※ 등록자 수 기준 : 사업 대상자 수첩 발행년도 기준
- ※ 대상자 추계 = 연도별 출생아 수 X 산모 표면항원 양성률('14~'17년: 2.8~2.5%, '18년 이후 2.4% 적용)
- ※ 산모 표면항원 양성률 추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모의평균 출산연령, 모의연령별(5세 간격) 출생 현황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만 10세이상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자료 이용

### 🔍 항원·항체 검사결과(2014. 1. 1. ~ 2023. 11. 30.)

구 분	항원·항체 검사결과	명	비율(%)
	사업종료 대상자	153,245	100
성공 (97.67%)	HBsAg (-) / Anti-HBs (+)	149,562	97.60
	HBsAg (-) / Anti-HBs (-)	120	0.08
실패 (2.33%)	HBsAg (+) / Anti-HBs (-)	3,555	2.32
	HBsAg (+) / Anti-HBs (+)	8	0.01

- ※ 2014년 비용지원 방식 변경(쿠폰→전산화) 이후 등록된 예방처치 후 검사결과 현황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4 사업 목표

- » 10세 미만 소아의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률 0.1% 미만으로 유지
  - ※ Regional Action Plan for Viral Hepatitis in the Western Pacific 2016-2020 : 2020년까지 5세 미만 영유아 표면항원(HBsAg) 양성률 1%미만, B형간염의 주산기 전파율 2%미만 달성

## 5 사업 내용

- » (사업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1. 1. 1. 이후 출생자) 중 산모의 임신 중 산전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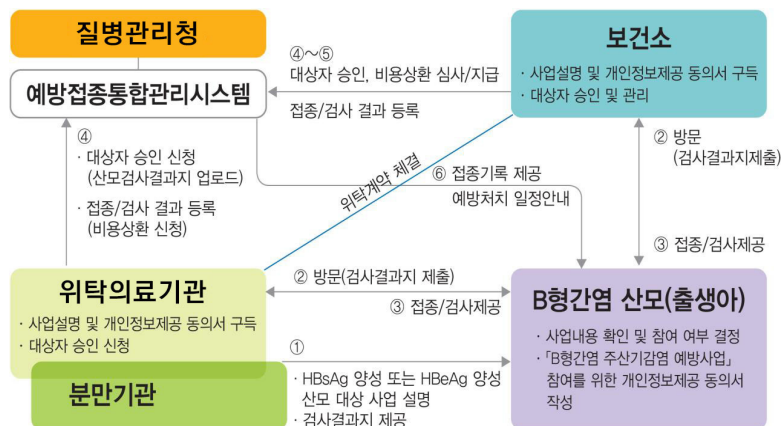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모의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

- ※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발급면제자))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지원 (미등록 외국인)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지원
- ※ 신생아번호(생년월일-성별)는 비용상환 접수 불가, 13자리 번호로 보완 후 접수 가능

- » (지원내용) ①면역글로불린 투여 1회, ②B형간염 예방접종 3회, ③항원·항체 정량검사 1차 비용 지원

※ (추가지원)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최대 3회) 및 재검사(최대 2회) 지원

### » 사업체계





기관	내용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장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li> <li>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승인·관리 및 비용상환 심사·지급</li> </ul>
위탁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 확인, 사업 내용 설명 및 참여 독려</li> <li>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및 대상자 신청(산모검사결과 입력, 결과지 업로드 등)</li> <li>B형간염 예방처치(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접종, 검사시행 등) 및 전산등록(비용상환 신청)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구독한 기관에서 5년간 보관</li> </ul>
B형간염 산모(출생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전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검사 실시</li> <li>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제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접종/검사는 비용지원 ※ 검사기관과 분만기관이 다를 경우 검사결과지를 분만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참여 요청</li> </ul>

###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질병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운영 총괄</li> <li>관련 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및 비용지원 기준 마련</li> <li>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교육 과정 운영 및 홍보</li> <li>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li> </ul>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홍보 등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지역 의사회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li> <li>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li> <li>예방접종 담당자 전문교육과정 이수</li> <li>(위탁계약 관리) 사업설명, 신규 참여 독려, 계약체결(갱신), 의료기관 점검관리, 교육이수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 등</li> <li>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li> <li>사업 대상자 승인처리 및 대상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승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대상자관리에서 대상자(신규, 중간참여) 승인 처리 * 미전환 7자리 신생아번호와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인적정보 확인 및 정보 통합</li> <li>- (대상자 전환 승인) 과거 수첩(쿠폰) 대상자 전환 승인처리 *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후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에 별도 전환요청 필요</li> <li>- (미완료자 관리) 접종 및 검사 미완료자 관리(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실시) * 자비 접종/검사 시행한 경우에도 검사결과에 따른 사업종료처리 또는 대상자 추적 관리 지속을 위해 반드시 접종내역/검사결과 전산 등록(결과지 업로드)</li> </ul> </li> <li>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예방접종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li> <li>예방접종 소액 피해보상 심의 실시</li> </ul>
분만/접종/검사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참여시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전자문서 제출) * 구비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 동 사업 참여 시 B형간염 예방접종 시행 필수</li> <li>(산전진찰기관/분만기관) 산모 B형간염 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지 발급</li> </ul>



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형간염 양성 산모 대상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및 사업 참여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홍보물 배부 등으로 사업 이해도 제고</li> </ul> </li> <li>◦ 예방처치 중요성 및 접종/검사 예방처치일정 안내</li> <li>◦ 대상자 승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신청) 시스템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 문자수신 동의여부 확인 및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등록 시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 입력 및 결과지 제출(시스템 업로드) 필수</li> <li>※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및 보관(보관기간: 5년)</li> </ul> </li> <li>- (과거 쿠폰대상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보건소에 전환승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종/검사 미완료한 과거 쿠폰 대상자(2013년 이전 대상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지속 지원 가능하며, 동의서 구득 후 보건소 유선연락 필요(방법) 구득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팩스 전송 → 보건소에서 시스템에서 전환 → 시행 기관에서 접종/검사 내역 전산등록(검사결과는 파일 업로드)</li> </ul> </li> </ul> </li> <li>◦ 접종/검사 실시 및 내역 전산등록(비용상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 후 12시간 내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및 전산등록</li> <li>- B형간염 항원·항체 정량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전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원·항체 검사 결과지 제출(시스템 업로드) 필수</li> <li>※ 자비 접종/검사 시행한 경우에도 검사결과에 따른 사업종료처리 또는 대상자 추적 관리 지속을 위해 반드시 접종내역/검사결과 전산 등록</li> </ul> </li> </ul> </li> <li>◦ 권장일정을 준수하여 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정량검사법) 실시</li> <li>◦ 항원·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재접종/재검사 또는 사업 종료 안내</li> <li>◦ 검사결과 감염자(항원양성, 항체음성)에게는 감염자관리 안내문 및 관련 정보 제공</li> <li>◦ 연 2회 자율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자율점검표 제출(전산등록))</li> <li>◦ 보건소 방문점검 등 사업운영 사항 협조</li> <li>◦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기록은 피접종자의 중복접종 및 접종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종기관 간 공유하며,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li> <li>※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탁계약조건 제6항에 따라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 사업 참여 해지</li> </ul> </li> </ul>

## 6 예방처치 일정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일정

1차 접종 → 2차 접종 → 3차 접종 → 1차 항원·항체 검사 → '항체 미형성시'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검사 → '항체 미형성시' 2차 재접종 → 3차 재접종 → 3차 항원·항체 검사

※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접종 및 검사 진행여부 결정(p. 57 참조)

※ 예방처치 일정(검사 및 재접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 시 비용 지원 가능하므로, 누락된 검사 및 재접종은 전산등록을 완료하도록 안내 필요

#### » (B형간염 예방접종 일정) 생후 0, 1, 6개월

- (접종용량) 10세 이하 0.5ml, 11세 이상 1.0ml

※ 영유아는 대퇴부 전외측에 근육주사

※ 첫 접종은 출생 후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HBIG, 0.5ml)과 함께 부위를 달리하여 접종

※ 면역글로불린 투여 지연 시 늦어도 생후 7일 이내 실시

	접종 및 검사	접종 및 검사 권장 시기	접종부위	최소연령	최소간격
기 초 접 종	1차 접종 (백신, 면역글로불린)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대퇴부 전외측	-	-
	2차 접종(백신)	생후 1개월	대퇴부 전외측	생후 4주	1차 접종 후 4주
	3차 접종(백신)	생후 6개월	대퇴부 전외측	생후 24주	2차 접종 후 8주 & 1차 접종 후 16주
	1차 항원·항체검사	생후 9~15개월	-	생후 9개월 이상	-

#### » 미숙아의 B형간염 예방접종 일정

-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kg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

- (예방접종 일정) 생후 0, 1, 2, 6~7개월

※ 미숙아 재접종은 신생아의 몸무게가 2kg이 넘지 않을 경우 전문의 판단하에 접종일정 조정

출생 직후 1차 → 1차 접종 1개월 후 미숙아 재접종 → 미숙아 재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 → 2차 접종 4개월 후 3차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항원·항체검사

◦ (적정검사 시기) 생후 9~15개월

- 지연된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시행,
  - ※ 권장 검사시기가 생후 9~15개월인 이유는 HBIG에 의한 수동항체가 아닌 예방접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
  - ※ 지연접종 시 최소접종 연령 및 최소접종 간격을 지켜야 하며,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 이후 검사 진행(지연접종이 아니면, 가급적 권장 검사 시기를 준수하여 시행)

◦ (권장검사 종류) 권장 검사법으로 실시하면 비용지원이 가능

- 표면항원 및 항체 검사방법 중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권장
  - ※ 자문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장검사 방법(항체가 확인 가능)	인정
<b>효소면역검사법 (Enzyme immunoassay : EIA)</b> 미세입자효소면역검사법(microparticle enzyme immunoassay : MEIA) 형광효소면역측정법 (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 : FEIA) 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 ELISA) * EIA는 RIA와 비슷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으며, 항체량의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함	○
<b>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 CIA,CLA,CLIA)</b> * CLIA는 고형물로 크기가 작은(microparticle) 자석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검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음	○
<b>전기화학발광 면역측정법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 ECL)</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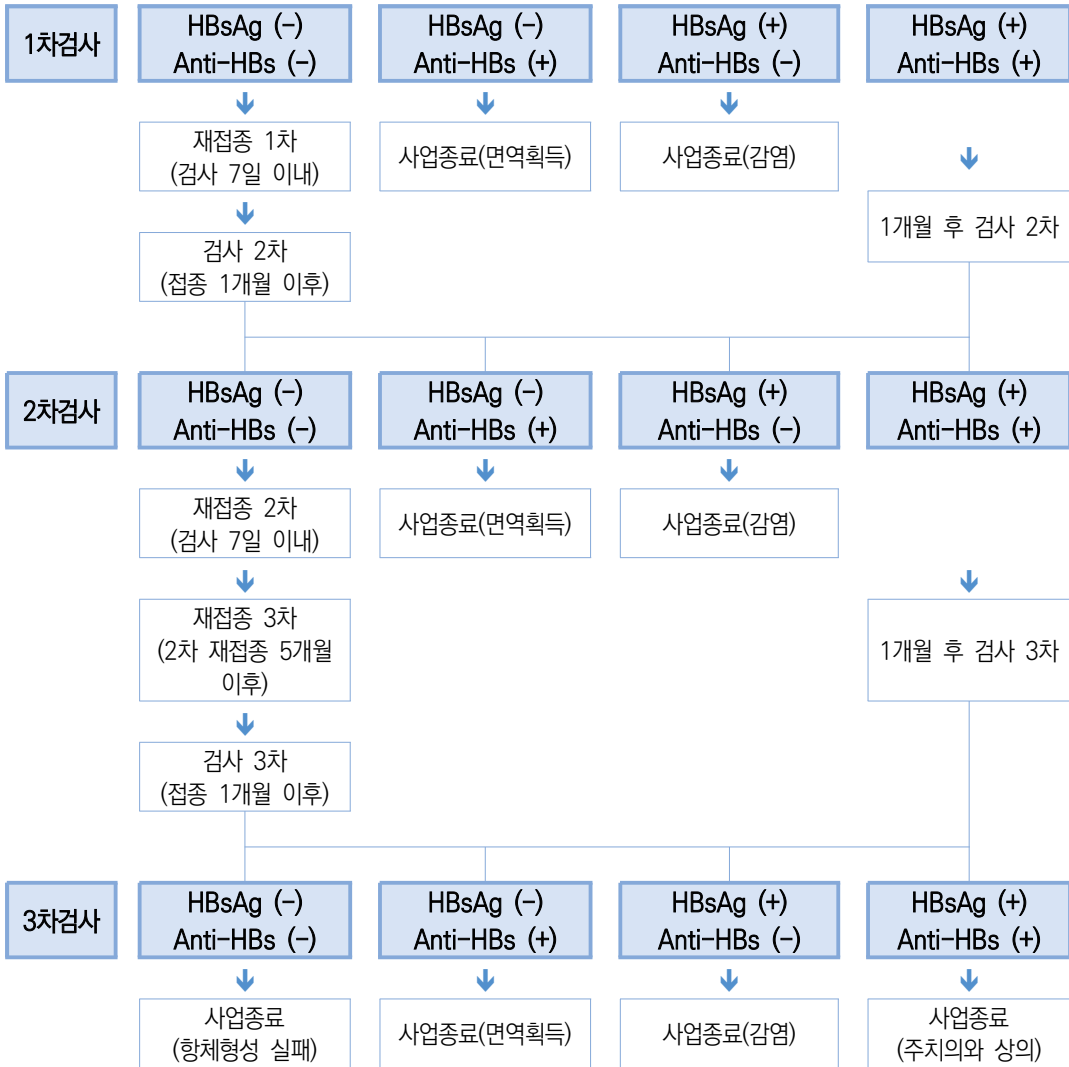
※ 비권장검사(비용지원 불가): 항체가의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검사 예

방사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 : RIA) * 효소 대신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지자로 이용하여 반응시킴으로써 항원 및 항체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항체가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단계가 필요함	X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Immunochromatography assay : ICA) * 현장검사 시약은 검사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간단히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X
수동혈구응집법 (Passive hemagglutination : PHA) * 민감도가 EIA나 RIA보다 1,000배 정도 낮아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X

- **(결과 전산등록)** 검사결과 전산등록 및 결과지 파일 업로드
    - 모든 항원·항체 검사결과(양성, 음성)와 정량결과(항원·항체가/단위)를 함께 입력
      - ※ 업로드 파일에서 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만 표기
  - **(판독기준)** 항체가의 정량 검사결과 판독 기준
    - 예방 가능한 ‘항체가’는 10 mIU/mL 이상
    - 항원이 음성이고 항체가 음성(항체가가 10 mIU/mL 미만)일 경우 재접종 필요
      - ※ 주의: 시험 기기별로 단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 기준에 준하여 판독
- » 재접종 및 재검사 일정: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 결정
- **B형간염 1차 재접종**
    - **(대상)** B형간염 1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 **(방법)** 1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재접종
  - **B형간염 2차, 3차 재접종**
    - **(대상)** B형간염 2차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미형성자[HBsAg(-), anti-HBs(-)]
    - **(방법)** 2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1차 재접종일로부터 1개월 후) 2차 재접종하고, 2차 재접종일로부터 5개월 이후 3차 재접종 실시
  - **재접종 시 최소접종 간격**
    - **(2차 재접종)** 1차 예방접종 후 1개월 이후
    - **(3차 재접종)** 2차 예방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1차 예방접종 후 최소 16주 이후



### 기초접종(1~3차) 및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 처치 일정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일정 알림

#### » 예방처치 일정 사전알림 및 미완료알림 문자 발송

※ 기초접종 이후 항원·항체 검사일정부터 발송(기초접종은 전체 사업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안내 중)

기초 접종 3회(1~3차) 접종 완료 → 1차 검사 안내(생후 9개월 도래시 또는 3차 접종 후 1개월경과 시(3차 접종 연령이 생후 9개월 이상일 경우)) → 검사 결과에 따른 재접종 또는 재검사 안내(재접종은 검사일 기준 7일 내 접종 미등록 시(단, 3차 재접종은 2차 재접종 후 5개월 도래 시), 재검사는 검사일 기준 1개월경과 시)  
 ※ (미완료자 알림문자) 전산 미등록자 대상 권장기간으로부터 1개월경과 시 재안내 문자 발송

## 7 비용상환 기준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비용 지원 범위

※ 2011. 1. 1. 이후 출생자는 접종 또는 검사가 지연되어도 비용지원 가능

- (면역글로블린 및 백신) 면역글로블린 1회 및 기초접종 3회(1~3차) 지원
- (항원·항체 검사) 기초접종 후 1회 검사비 공통 지원, 검사결과에 따른 재검사 시 1~2회 추가 지원
  - ※ 항원·항체검사는 반드시 정량검사법(EIA, ECL, CIA 등)으로 시행
  - ※ 정성검사 또는 항원·항체 중 한 가지만 검사했다면 비용상환 불가하며 재검사 필요
- (추가 예방접종) 검사결과에 따른 재접종 시 1~3회 추가 지원
  - ※ 접종 및 검사 진행 순서는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예방처치일정(실시기준)에 따르며, 진행 순서가 다르면 비용상환 불가
  - ※ 접종/검사 등록 시 이전 단계 시행내역 전산등록이 누락됐다면 전산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상환 신청 불가(이전 내역 시행기관에서 전산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요청하도록 안내)

## 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전산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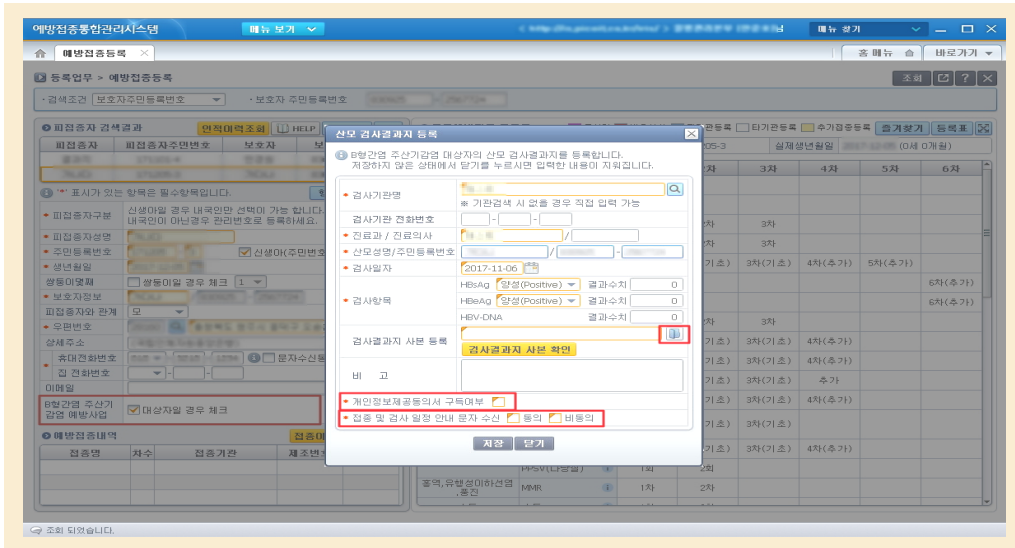
### 🔍 접종/검사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방법

#### » 신규대상자 등록(승인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클릭
- 대상자 인적정보 조회 화면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산모검사결과 입력, 결과지 업로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여부 체크, 문자 수신 동의 여부 등을 체크 후 '저장' 버튼을 클릭
  - ※ 검사 항목에서 HBsAg 양성 또는 HBeAg 양성 대상자는 등록 가능
  - ※ 검사결과지 파일 업로드 필수(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만 표기)
  - ※ 문자 수신동의자는 항원·항체 검사 일정 도래 시 사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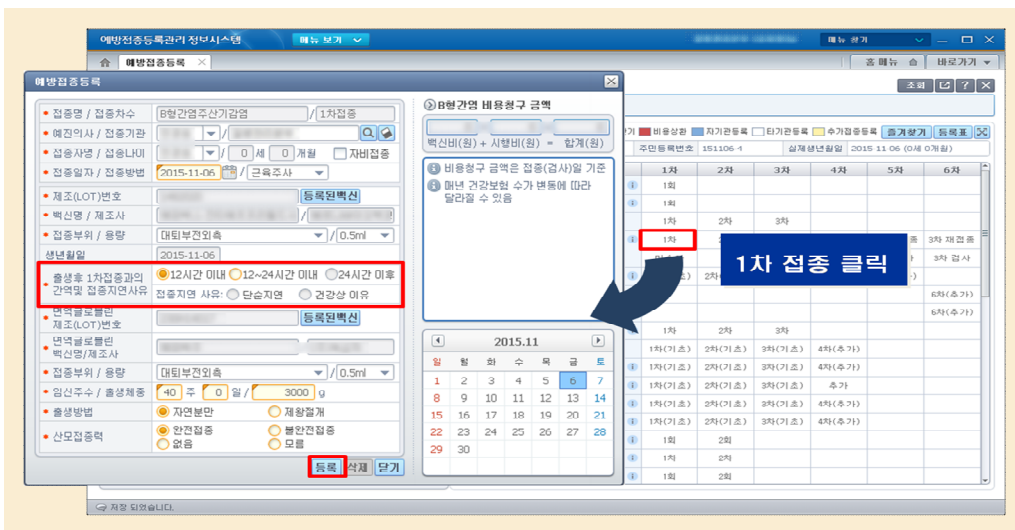


- 저장 시 우측 표준예방접종 등록표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일정에 맞게 자동 변경



» 예방접종 및 검사결과 등록

- (1차 접종) 면역글로불린과 B형간염 접종 정보 등록
  - ※ 접종시간, 분만주수, 출생 시 체중, 출생 방법, 산모 예방접종력 정보 등 입력
  - ※ 1차 접종 등록 후 보건소에서 '대상자 승인' 완료 시 다음 접종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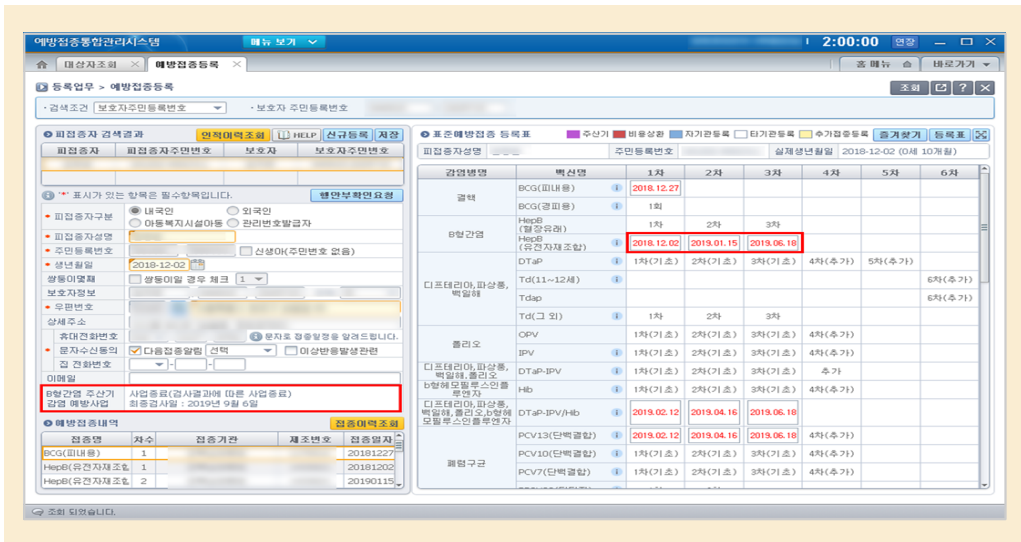
- (미숙아 재접종) 미숙아(출생시 체중 2kg 미만)는 1개월 후 1차 재접종이 필요하며 접종은 '미숙아 재접종' 칸에 등록
  - ※ 미숙아 재접종은 피접종자의 '접종 시 체중' 항목 추가 입력 필요
- (순차적 등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접종 및 검사는 일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등록
  - ※ 기초 1~3차 접종 후 1차 항원·항체 검사(정량검사법) 실시.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검사 → 2차 재접종 → 3차 재접종 → 3차 항원·항체 검사



- (항원·항체 검사 결과 등록) 검사일자, 검사항목, 정량검사 결과(항체가 포함)를 정확히 등록 후, 파일 시스템에 검사결과지 업로드 필요

### » 사업 종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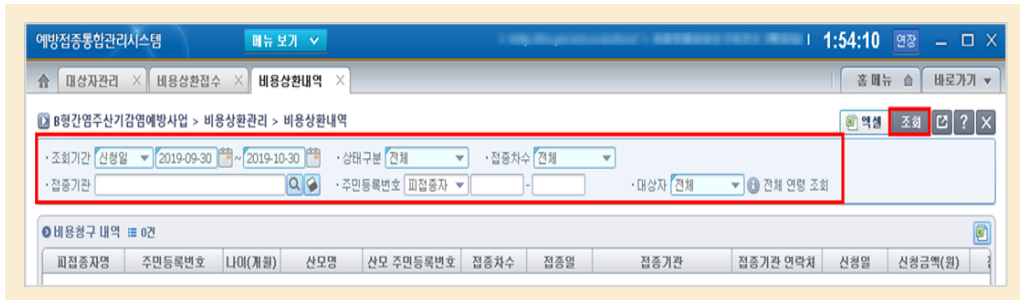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체크란이 공란으로 표시되며,
  -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상 보라색 박스, 검사 입력칸 자동 변경
    - ※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체가 10 mIU/mL 이상 입력(저장)하면 사업 종료 처리
    - ※ 보건소는 관리 종료자의 종료 여부와 사유를 확인 가능하며, 관리 미종료자는 확인 후 관리재개 조치 가능





» 비용상환내역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비용상환관리 → 비용상환내역에서 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비용상환 내역 조회 가능





# IV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65
2. 법적 근거	65
3. 사업 추진실적	66
4. 사업 내용	67
5. HPV 예방접종, 건강상담 실시기준 및 방법	71
6. HPV 비용상환 시 유의사항	74
7. HPV 백신 공급 및 관리	75



## 1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인생의 전환기인 여성 청소년에게 전문 의료상담과 진찰,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춘기 여학생의 약 59%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생리를 시작하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약 4.6%는 성경험이 있음(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 2015년)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며,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은 15~34세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접종이 요구됨.
- » 이에, HPV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인 성경험 이전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12세가 지났어도 성경험이 없다면, 예방효과가 높으므로 대상자 확대를 통한 접종의 기회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추진경과

-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실시(2016. 6. 20. ~)
-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실시(2022. 3. 14. ~)

## 2 법적 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3호)
-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5호)

### 3 사업 추진실적

» 12~17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등록 현황(2016 ~ 2023. 11.)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11.
1~3차 누적	242,958	431,609	352,379	334,429	385,863	373,124	330,794	354,104

\* 2023. 11. 30.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18~26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등록 현황(2022. 3. ~ 2023. 11.)

(단위: 건)

연도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2022	13,570	6,804	952
2023	3,642	6,591	7,932

\* 2023. 11. 30.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받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접종현황으로 소견등록 기준 자료임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누적 접종률

(단위: 명, 건, %)

구분	대상자수	1차접종		2차접종	
		접종건수	접종률	접종건수	접종률
2003년생	236,495	153,083	64.7	134,517	56.9
2004년생	227,370	179,793	79.1	161,590	71.1
2005년생	209,619	187,228	89.3	168,640	80.5
2006년생	216,463	194,961	90.1	172,878	79.9
2007년생	240,189	218,395	90.9	198,679	82.7
2008년생	226,886	203,318	89.6	180,491	79.6
2009년생	216,693	186,198	85.9	154,943	71.5
2010년생	228,555	182,194	79.7	122,603	53.6

\* 2023. 11. 30.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대상자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여성청소년

## 4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17세 여성 청소년(2006. 1. 1. ~ 2012. 12. 31. 출생자)</li> <li>18~26세 저소득층* 여성(1997. 1. 1. ~ 2005. 12. 31. 출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소득관련 자격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li> </ul> </li> </ul> <p>※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 한부모가정 여부는 지원대상 기준이 아님</p>	
지원내용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 HPV 예방접종비용 2~3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접종을 14세 이하 연령에서 시작한 경우 2회 접종 필요</li> <li>- 1차 접종을 15세 이후 연령에서 시작한 경우 3회 접종 필요</li> <li>※ HPV 백신은 첫 접종 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 상이</li> </ul> </li> </ul>
	건강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2012년생) 사춘기 성장 발달, 초경 관련 등에 대한 상담을 접종과 함께 제공</li> <li>※ 건강상담 비용은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li> <li>※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시행 가능</li> </ul>
지원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li> <li>※ HPV 9가(가다실9) 백신 미지원</li> </ul>	
비용 지원 기간	접종 비용지원	· (2006년생, 1997년생)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상담비 지원	· (2011년생) 2024년 12월 31일까지 1~2차 접종 시 상담비 지원 · (2012년생) 2025년 12월 31일까지 1~2차 접종 시 상담비 지원

### »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소득수준(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정 여부는 지원대상 기준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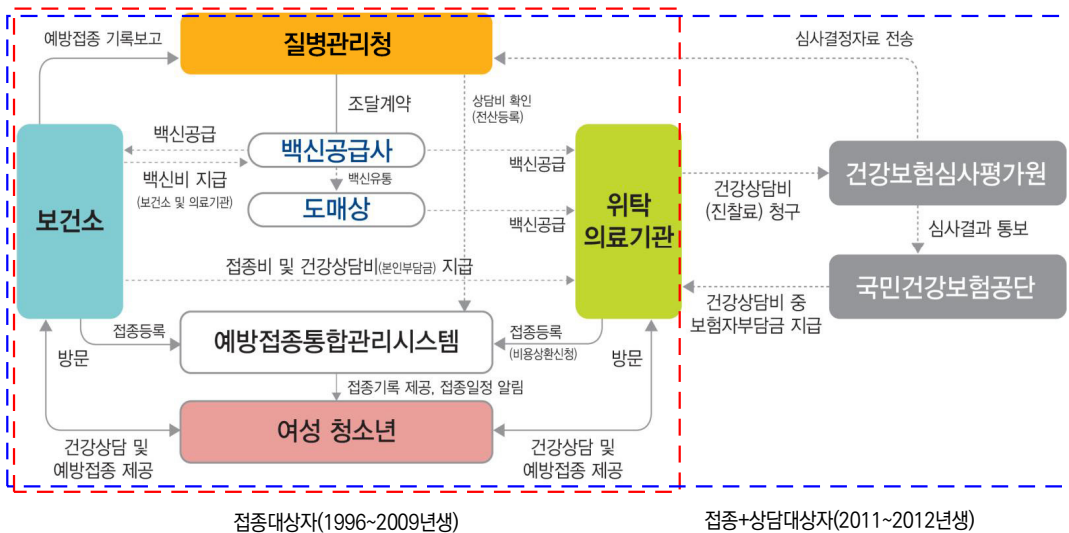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소득관련 자격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확인방법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 HPV 접종란 클릭 → 의학적 소견/기타 사유 사유입력 선택 → '18~26세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택 → 행복e음확인 클릭 → 체크박스 표시여부 확인(☑표시되면 접종 대상자)
- (자격 서류 확인) 전산상 행복e음으로 대상자 확인 불가 시 접종 당일 발급된 자격 확인서류\*로 확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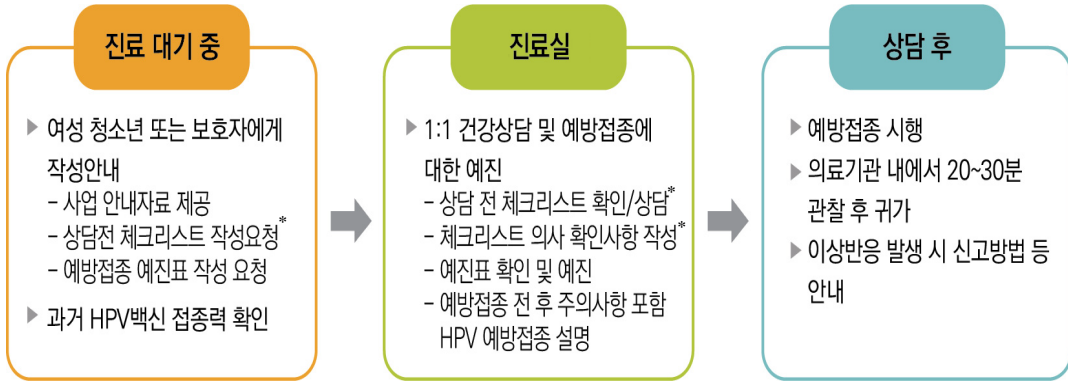
» 사업체계



기관	역할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장이 관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li> <li>위탁의료기관에서 청구한 비용상환 신청 내역에 대해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심사 후 비용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 지급, 백신비는 조달계약업체에 지급</li> <li>※ 건강상담비 중 공단부담금 외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청구 심사결정 후 위탁의료기관에 지급</li> </ul> </li> </ul>
위탁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상담 및 예방접종을 실시</li> <li>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시 비용상환 신청</li> <li>건강상담비(진찰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li> </ul>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의료기관이 청구한 건강상담비에 대해 심사</li> <li>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의료기관에 건강상담비 중 보험자부담금 지급</li> </ul>



» 서비스 제공 절차(\* 상담 포함 시)



☞ (참고) 예방접종 시 접종대상자가 부득이하게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와 동행하지 않은 경우

-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접종 동의서 및 예진표를 구득하고,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유선 상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접종 시행
- \* HPV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서식 다운로드 가능
- \* (서식 다운로드)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 ‘HPV국가예방접종사업 동의서식 모음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질병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총괄</li> <li>◦ 관련 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및 비용지원 기준 마련</li> <li>◦ HPV 백신 예방접종 및 상담 비용지원 관리(건강상담비* 지급 관리 포함)</li> <li>◦ 백신수급 및 조달계약 체결 및 관리 등</li> <li>◦ HPV 예방접종 교육 과정 운영 및 홍보</li> <li>◦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li> </ul>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진찰료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심사 및 지급</li> </ul>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및 시스템 이용법 안내</li> <li>- 위탁의료기관 신규계약 및 재계약 관리(5년마다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비서류: 계약서, 교육 수료증, 통장사본, 사업 참여 확인증, HPV 백신공급 협약서</li> <li>· 제출된 서류 모두 보건소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li> </ul> </li> <li>- 위탁의료기관 점검관리(연 2회(상·하반기) 자율점검, 연 1회 이상 방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확인</li> </ul> </li> </ul> </li> <li>◦ 사업 대상자 예방접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PV 1차 접종 후 2, 3차 접종 일정 안내 및 미접종자 관리</li> </ul> </li> </ul>



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담비*(진찰료 중 본인부담금) 및 예방접종 비용상한 관리</li> <li>◦ 백신구매 및 지역내 백신수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사용량은 분기별 구매량 확인 후 백신 공급 실시</li> <li>- 위탁의료기관 사용량에 대해 조달계약업체에 백신비 지급</li> <li>- 위탁의료기관 백신 공급 협약서 관리</li> </ul> </li> <li>◦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 역학조사 실시, 예방접종피해보상 접수 피해조사 실시, 예방접종 소액 피해보상 심의 실시</li> </ul>
위탁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서,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제출</li> <li>◦ 건강상담 전 점검표* 및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안내</li> <li>◦ 과거 HPV 예방접종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문진 또는 예방접종수첩 상 과거 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접종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안내, 접종한 백신 종류(접종일) 확인 후 건강상담 및 접종 실시함</li> </ul> </li> <li>◦ 상담 체크리스트 확인 및 표준 상담 업무 흐름도에 따라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완료 후 점검표는 의료기관에서 보관(5년 보관)</li> </ul> </li> <li>◦ 상담 후 부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전문의 진료 안내*</li> <li>◦ 예진표를 토대로 예진 실시 및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등 설명</li> <li>◦ 접종 백신을 확인하고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부위에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종 시 극도의 긴장이나 접종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접종 후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므로, 접종은 등받이 있는 의자에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 것을 권장</li> <li>-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후속조치 체계 마련,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 역할 지정 및 숙지</li> </ul> </li> <li>◦ 다음 접종 및 건강상담 일정* 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전화 문자 수신에 동의할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예방접종일 등록</li> <l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와 예방접종 예진표에 기록된 휴대전화번호가 일치 하는지 확인</li> </ul> </li> <li>◦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후 귀가 안내</li> <l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전산등록(예방접종 비용상한 신청) 및 요양청구 프로그램에 상담비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기록은 접종 당일에 순차적으로 등록</li> <li>- 접종 당일 전산등록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접종 발생 시 접종기록을 먼저 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지급</li> </ul> </li> <li>◦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이상반응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웹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로 유선 신고</li> <li>-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li> </ul> </li> <li>◦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실시 및 보건소 방문점검 협조</li> <li>◦ 예방접종 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li> </ul> </li> <li>◦ 백신 보관 및 관리 철저</li> <li>◦ 여성청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사업 안내자료 제공</li> </ul>

\* 건강상담 관련 내용으로 2011~2012년생만 해당



## 5 HPV 예방접종, 건강상담 실시기준 및 방법

###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

첫 접종 시기	접종 횟수	백신	차수	다음 접종 간격	최소 접종간격
12~14세	2회	HPV2 HPV4	1차	6~12개월	5개월
			2차	-	-
15~25세	3회	HPV2	1차	1개월	4주
			2차	5개월	12주
			3차	-	-
15~26세	3회	HPV4	1차	2개월	4주
			2차	4개월	12주
			3차	-	-

#### ※ 실시기준 ※ 첫 접종 당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 14세 이전 1차 접종 시 총 2회 접종

- 2회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보다 이르게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HPV 2가, 4가) 1차 접종 후 5개월 이내에 2차 접종 시 두 번째 접종과 최소 12주 이상의 간격(1차와 3차의 간격은 5개월 이상)을 유지하여 3차 접종
  - ※ 최소 접종간격보다 이르게 접종하여 총 3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1차, 3차 접종 비용지원
  - ※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미준수한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 ※ 9세부터 접종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비용상환 불가

##### ◦ 15~26세 1차 접종 시 총 3회 접종

##### ◦ 면역저하자는 백신별 권장 간격에 따라 총 3회 접종 필요

- ※ 사업 대상 중 면역저하자는 3회 접종 모두 비용지원

#### » (접종용량 및 방법) 1회 0.5ml, 상완 삼각근 근육주사

#### » 동시접종 및 교차접종

- (동시접종) 다른 약독화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
  - ※ 동시 접종 시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 권장

- **(교차접종)** HPV 2가, 4가 백신 간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 ※ 단, 이전에 사용한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국내에 해당 백신이 공급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참고) HPV 9가 백신 유통에 따른 세부 안내사항** ※ 2017년 제2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 (교차접종) HPV 2가, 4가 백신과 9가 백신의 교차접종은 안전성, 면역원성, 효능에 대한 연구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권장하지 않음
- (기존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기존 HPV 2가, 4가 백신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9가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므로 국가 권장여부는 추가 근거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함
- (동시접종) Tdap 등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함

### » 금기 및 주의사항

- 이전 백신 접종 후 또는 백신 성분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있었던 경우
- 급성 중증 열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도록 안내 및 관찰

## 🔍 HPV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주의사항

### »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및 예방법

- **(국소반응)** 접종부위 통증, 부어오름, 발적 등
- **(전신반응)**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두드러기 등
  - \*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포함한 중증 이상반응은 극히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나, 다른 영유아 백신과 비교하여 특별히 빈도가 높지 않음
-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도록 안내하고 피접종자의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신속 대응, 평소에 대처법 숙지

☞ **예방접종 후 일시적인 실신에 대한 주의 필요**

- 청소년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시 긴장이나 통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경우가 있으며, 넘어지면서 다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필요
- 실신은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 가능하며 주로 청소년 및 젊은 성인에서 단체 예방접종 시 발생
- 의료기관 주의사항
  - 접종은 등반이 있는 의자에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 것을 권장
  - 예방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도록 안내 및 관찰



🔍 건강상담 내용 및 과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세 여성 청소년(2011. 1. 1. ~ 2012. 12. 31.) 출생자</li> </ul>
상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춘기 성장발달 및 초경 관련 건강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상담은 대상자가 작성한 점검표(별첨서식 1-8) 내용을 토대로 제공</li> <li>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프로그램/매뉴얼'에 게재되어 있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의료인용 상담 교육자료'를 숙지하고 활용</li> </ul> </li> <li>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진료 대기 시 사업 안내 자료(보호자용 리플렛, 건강상담 대상자용 안내문, HPV 예방접종 안내문)를 제공하고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 작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 집중시 작성하는 예진표와 같이 작성하도록하고, 예진표와 함께 5년간 보관</b></li> </ul> </li> <li>상담은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며, 대상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 확인 후 의사 확인사항을 작성하고,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를 활용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장발달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상담을 시행(달력형 상담도구 등을 활용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춘기 성장발달 개요와 대상자의 성장발달 상황, 여성청소년에게 흔한 부인과적 질환(무월경, 월경통, 월경 이상)에 대한 설명과 질환의 유무 확인 등</li> <li>※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전문가에게 의뢰 등의 조치</li> <li>※ 상담대상자 외 또는 추가 검사나 진료에 대한 비용은 지원내용이 아니므로 별도의 비용 발생 시 보호자 설명 및 동의 필요</li> </ul> </li> <li>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암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백신 안전성과 권장 접종 시기 등 보호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li> </ul>
시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급여대상자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시행 가능</li> <li>국민건강보험급여대상 외      보건소에서만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시행 가능</li> </ul>
상담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2차 상담 시 동일한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에 따라 진행</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p><b>&lt;여성 청소년 대상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Flowchart)&gt;</b></p> </div> <p>※ 예방접종 시 건강상담 함께 제공(대상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생략 가능, 의료기관에서 선택적 제공 불가)</p>



» **접종 당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순차적 등록**

- ※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접종기록을 먼저 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됨
- 과거 접종력이 누락 되었으면,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 요청하도록 안내
- **(면역저하자)** 순차적으로 등록하되, 의학적 소견(면역저하 사유) 등록
- **(조혈모세포이식 등)** 해당차수(기존 접종 날짜)에 중복등록 하되, 의학적 소견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선택 후 이식일자 추가 입력

## 6 HPV 비용상환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저소득층 자격 여부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창에서 ‘행복e음’으로 확인</li> <li>◦ 자격이 변경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gt;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gt; 비용상환심사 &gt; 일반내역, 이의내역 심사 &gt; ‘의료기관 행복e음 확인이력’ 클릭 &gt; 접종일자가 의료기관 확인일시와 같은지 (접종당일 확인여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값이 ‘Y’인지를 확인(대상 자격여부)</li> <li>◦ 자격확인 서류: 당일 발급된 자격확인서류로 자격여부를 확인 * 자격확인서류로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조회 불가능함</li> </ul>
건강상담비 신청방법 (12세 대상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및 적용기준: 건강상담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당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1-가. 초진 진찰료 수가 적용</li> <li>* 2024년도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지원</li> </ul> </li> <li>◦ 신청 시 주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건강상담비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병분류기호 R688</b>(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기재하고, <b>청구 명세서의 특정 내역구분 (MT002)에 F012를 기재하여 청구</b></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날 동일 의사에게 사업에서 제공하는 상담 이외 별도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은 진찰료 1회 청구, 건강상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나, 검사, 처치 등의 다른 진료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필요(명세서 각각 작성)</li> <li>* 상담절차 및 HPV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강상담비(진찰료):</b>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전액 국가지원</li> <li>◦ <b>건강상담비 본인부담금 지급절차:</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 완료 자료를 받아 검토 →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본인부담금을 반영 후 지급요청 →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li> <li>※ 본인부담금은 국가지원이므로 대상자로부터 동 상담 비용(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 금지</li> <li>※ HPV 접종시 상담을 시행한 경우에만 진료비 청구 가능, 예방접종만 한 경우는 진료비 청구 금지</li> </ul>
비용지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종비 (2006년생, 1997년생)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li> <li>◦ 건강상담비 (2011년생)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담비 지원</li> </ul>
지원기간 예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 상담비 미지원</li> <li>(2006년생) 2024년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조혈모세포 이식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li> <li>- 예외적용 대상이 다시 시작하는 접종일정을 완료하기 위해 조혈모세포이식 일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비용지원 기간을 연장함</li> </ul> </li> </ul>



## 7 HPV 백신 공급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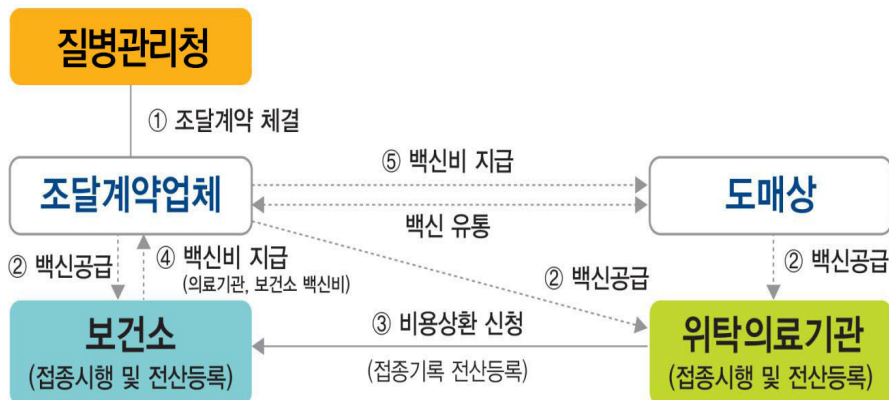
» (계약방식) 보건소 및 의료기관 사용량에 대한 총액계약

» 기관별 백신공급 및 비용상환

구분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조달계약업체	도매상
백신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관리청에서 분기별 사용 물량 조사 후 공급량 확정</li> <li>조달계약업체에서 백신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의 백신공급 협약업체에서 직접 백신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의료기관에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의료기관에 공급</li> </ul>
백신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서 승인)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공급 협약서' 승인</li> <li>조달계약업체에서 청구한 백신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서 업로드) HPV 백신 계약 변경 시 시스템에 업로드 및 승인 확인 ⇒ 비용청구 및 지급을 위해서 백신계약 내용에 대한 보건소 승인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상환 지급결정 건을 해당 보건소로 백신비 청구</li> <li>지급된 백신비는 실제 백신을 공급한 도매상에게 전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계약업체에 백신비 정산</li> </ul>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건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접종 후 전산 등록 (비용상환 신청)</li> </ul>		

\* 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

» 위탁의료기관 사용 백신의 백신비 지급절차 및 기관별 역할



〈 백신 공급 및 비용 지급 절차 〉

- ☞ (위탁의료기관)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로 비용상환 신청(전산등록)
- ☞ (보건소) 지급심사 후 상환결정된 건에 대해 백신비는 조달계약업체로, 시행비는 의료기관으로 상환
- \* 다만, 조달계약업체 외 도매상(협약업체) 통해 공급된 백신은 조달계약업체가 도매상으로 백신비 지급

### » HPV 예방접종 오등록 시 백신 등록 처리 방법

- 도매상에서 백신비 지급요청(또는 지급완료) 후에는 비용상환 접수취소, 접종내역 삭제가 불가
- 도매상과 백신문제 처리를 위해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백신 담당자 (☎ 043-719-6816~6818)와 통화 후 조치 필요
  - ※ 잘못 등록한 접종내역에 대한 삭제, 접종일자 변경 시 건강상담 실시내역 등을 확인하고, 비용지급 보건소(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 요청

### » 협조 및 참고사항

- **(위탁의료기관)** 국가사업으로 사용한 백신만 보건소에서 백신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기관별 접종건,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사업으로 소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백신 확보
  - **(백신비 자체 지급)**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된 접종건의 백신, 의료기관 과실로 오염되거나 파손된 백신, 유효기간이 경과된 백신 등은 의료기관에서 백신비 자체 지급
  - **(변경협약서 등록 및 승인요청)** 백신협약업체 변경 시, 변경된 업체와 작성한 협약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관할 보건소에 승인요청 필요
    - ※ 기존에 협약된 업체에서 공급한 백신을 소진한 후 협약업체 변경
    - ※ 보건소의 승인 이후 전산등록된 건은 변경된 업체로 백신비 지급, 이전 업체에서 공급한 백신이 남아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백신비 지급
  - 국가예방접종으로 사용되지 않은 백신의 비용 지급 등은 참여 의료기관과 협약업체(조달계약업체 또는 도매상) 간 자체적으로 관리(백신 구매 및 대금 지급 등)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1. 사업 개요	79
2. 법적 근거	80
3. 사업 추진실적	80
4. 사업 목표	80
5. 사업 내용	81
6. PPSV23 백신 공급 및 관리	83
7.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85
8. 예방접종 시행	86
9.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87
1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90



# 1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치명적이며, 균혈증의 경우 사망률은 60%, 수막염의 경우 사망률은 80%에 이룸
  - \*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
- »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효과는 예방접종이 효과적이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이 15.4%로 낮은 수준(2012년)
  - 이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 및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을 추진함

## 🔍 추진경과

연도	내용
2012.	어르신 대상 국가지원 예방접종 항목확대 추진
2012. 11.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 선정
2013. 1.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기경험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
2013. 2.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2013. 5.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분산접종 실시(5~6월 75세 이상, 11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 ※ 2013~2015년 따라잡기(Catch-up) 접종
2014. 8.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접종 이용 제한 폐지 ※ 행정제도 개선과제 접수(2014. 2. 4.), 시·도 간담회(2014. 2. 14.)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의견 수렴
2015.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선정(2015~2017, 2019, 2021)
2015. 12.	폐렴구균 접종 미완료자 대상자관리 시스템 구축
2017.	대상자관리를 위해 65세 이상 대상자 행정안전부 주민정보 연계
2020. 6.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으로 한시적 확대 시행
2021. 1.	민간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 지속 확대 실시

## 2 | 법적 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 3 | 사업 추진실적

- » 사업대상: 65세 어르신(1958. 1. 1. ~ 12. 31. 출생자)
- » 사업실적
  - 1958년 출생자 접종률: 58.8%(436,496명)
  - ※ 2023. 11. 30.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된 자료로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4 | 사업 목표

- » 해당 사업 연도 신규 65세 대상자의 67% 이상으로 유지



## 5 사업 내용

» (사업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르신

※ 사업대상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1959.12.31. 이전 출생자임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대상에 포함

※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자)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발급(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22.1.18.~)에서 무료접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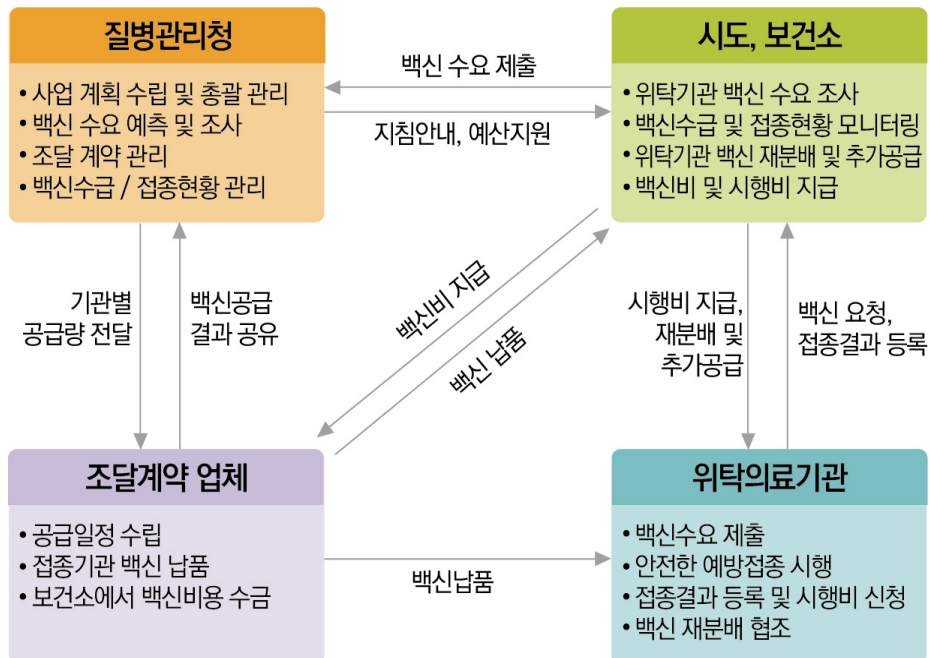
» (사업시기) 연중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과 동일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 (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사업체계



##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질병 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 예방접종 계획 수립, 사업 관리지침 개발, 사업 예산관리 등</li> <li>◦ (백신공급 및 관리) 백신 수급 및 조달계약 체결 및 관리 등</li> <li>◦ (예방접종 시행 관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교육자료 작성 및 배포, 접종 현황 모니터링</li> <li>◦ (예방접종 안전관리)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시·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지원,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운영</li> </ul>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li> <li>◦ (예방접종 시행) 피접종자 본인 확인, 예진 및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등 설명,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li> <li>◦ (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 사업 안내, 계약관리, 비용상환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안내)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및 시스템 이용법 안내</li> <li>- (계약관리) 위탁계약서, 교육수수료증*, 참여확인증, 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필수, 기본교육(매 2년 이수) 필요한 의료기관의 교육 수수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는 보건소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li> </ul> </li> <li>- (의료기관 점검)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실시 확인 및 방문점검(연 1회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방문점검으로 확인</li> </ul> </li> <li>- (비용상환 관리) 실시기준에 준한 접종 내역 비용 심사 및 비용지급</li> </ul> </li> <li>◦ (백신관리) 백신구매 및 지역내 백신수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사용량은 분기별 구매량 확인 후 백신 공급 실시</li> <li>- 위탁의료기관 백신 수요량 파악, 수급현황 모니터링, 회수 및 재분배, 잔량관리 등</li> </ul> </li> <li>◦ 예방접종 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li> <li>◦ 예방접종 미접종자 관리</li> <li>◦ (이상반응 관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보고 및 역학조사 실시, 예방접종 소액 피해보상 심의 실시</li> </ul> </li></ul>
위탁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계약체결) 위탁계약서, 교육수수료증*, 참여확인증, 통장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필수, 기본교육(매 2년 이수)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교육 수수료 필요</li> </ul> </li> <li>◦ (예방접종 시행) 피접종자 본인 확인,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안내. 예진 및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등 설명,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한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li> <li>◦ (이상반응 관리)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20~30분 동안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후 귀가 안내</li> <li>◦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단받으면 지체없이 이상반응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웹 신고 또는 관할 보건소로 유선 신고</li> <li>*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li> </ul> </li> <li>◦ (점검 협조)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연 2회) 실시 및 보건소 방문점검(연 1회 이상) 협조</li> <li>◦ (예방접종 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예방접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위탁계약 해지</li> <li>◦ (백신 보관 및 관리 철저) 수요 제출, 백신 회수 및 재분배 협조 등</li> </ul>



## 6 PPSV23 백신 공급 및 관리

### 백신 구매 및 공급

»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 공급방식과 동일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

구분	내용
일괄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관리청은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PPSV23 백신을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li> </ul>
백신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신 구매 후 분배기준, 보건소 수요량에 따라 조달계약 업체에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공급</li> </ul>
보유 백신 대체 및 백신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폐기<sup>①</sup>(파손), 오접종, 중복접종 등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대체하여 접종 또는 반납</li> <li>① 위탁의료기관 유효기간 미관리로 인한 백신 폐기 포함(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소진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에 사전 재분배 등 요청)</li> <li>* 만료 기한일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체 설정할 수 있으며, 변동시 위탁의료기관에 안내 필요</li> <li>※ 단,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백신으로 접종 또는 반납이 어렵다면, 보건소에서 공문 또는 고지서 발급 등으로 백신비 환수 처리</li> <li>※ 위탁의료기관 입고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유효기간 기능을 활용하여 관리</li> <li>※ 위탁의료기관 입고백신 유효기간 경과 전 모두 소진 시 해당 백신 유효기간 목록 삭제 기능 추가</li> </ul>

### 백신 공급 절차

구분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	위탁의료기관
수요조사 및 확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신 구매량을 확정하기 위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폐렴구균 백신 수요 조사</li> <li>시도에서 제출한 백신 수요량, 목표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구매량 확정</li> </ol>	보건소에서 제출한 백신 수요량 검토 및 결정 후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지역내 접종 대상자, 접종 목표*, 전년도 공급량·접종 건·잔여량·가용예산·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사업량 시·도에 제출 * 65세 신규 대상의 67.0% ('24년)	보건소에 사업량 제출
조달 계약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여 조달계약 체결 및 체결 결과를 시·도 및 보건소 공유	-	-	-

구분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	위탁의료기관
백신 공급	분기별 보건소·위탁의료기관 구매계약량 확인, 공급가능량, 보건소 지역 내 재고 등을 고려해 공급량 결정하고 조달계약업체에서 일괄 공급 ※ 백신 수입상황에 따라 공급주기 변경 가능	-	-	-
백신 재분배	필요시 기본원칙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시·도 및 보건소 백신 재분배 실시	필요시 질병관리청의 기본원칙 및 사업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내 보건소 백신 재분배 실시	필요시 질병관리청의 기본원칙* 및 사업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백신 재분배 실시	사업기간 중 보건소가 기관별 접종건, 백신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재분배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

\* 미접종자 대비 잔여 백신이 과다한 경우 백신 회수, 백신이 부족한 기관(또는 지역)으로 백신 공급

### 🔍 백신 입·출고 내역 확인(의료기관)

» 의료기관 정보 우측 하단 [백신별 입·출고 정보]에서 내역 확인 가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의료기관 정보관리 → 의료기관 정보 → 백신별 입·출고 정보 → 이력보기

###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해지(폐업)시 백신 처리 방법(의료기관)

» (참여 중) 백신 잔량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및 참여확인증 수정 불가능

◦ 보건소에서 백신 잔량 등을 확인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해지(폐업) 예정일을 관할 보건소에 사전 안내 필요

» (폐업신고) 별도 계약해지 절차 없이 폐업신고 하면, 백신 잔량과 상관없이 자동 계약 해지

◦ 보건소에서 백신잔량 등을 확인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안내 필요



## 7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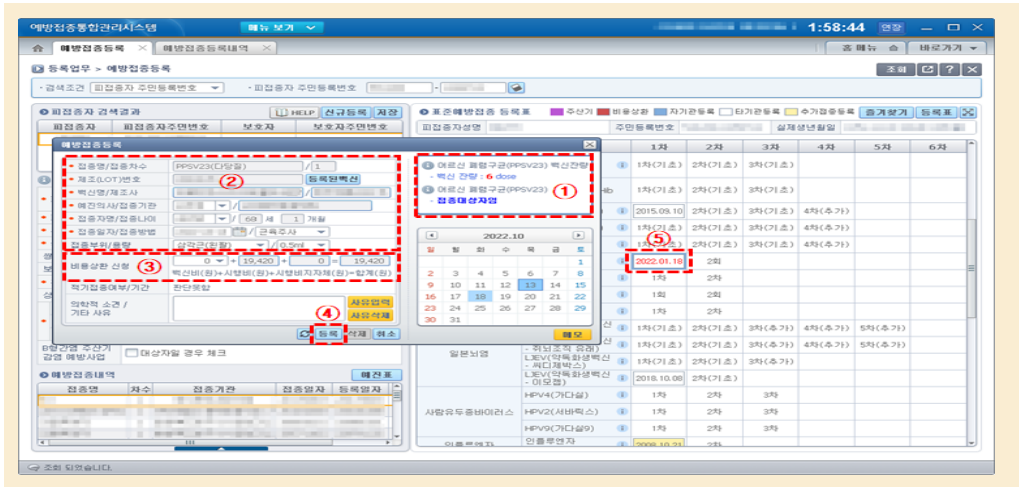
- » (접종백신 및 횟수)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 » (실시기준) 65세 이상 연령에서 접종 → 추가접종 불필요
  - 단, 65세 이전 연령에서 접종 → 이전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하였고, 65세 이상이 된 시점에 1회 재접종
    - ※ 65세 예시: 접종연도-출생연도 = 65세, 2024년-1959년 = 65세
- » (접종부위 및 방법) 상완 외측면에 피하 또는 삼각근에 근육주사
- » (동시접종) 다른 약독화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
  - ※ 동시접종 시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 권장
- » (금기사항)
  - 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
    - ※ 가벼운 감기와 같은 경미한 급성질환은 백신접종 금기사항이 아님

## 8 | 예방접종 시행

### » 피접종자 본인 확인 및 과거 접종력 확인

-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간격\* 등을 고려하여 접종 시행 결정

\* PPSV23 → PPSV23 5년, PCV13 → PPSV23 1년(최소 8주), PPSV23 & PCV13 → 각 백신별  
간격 모두 고려



[그림] 피접종자의 접종 가능여부 확인

### » '예방접종 예진표'와 '예방접종 후 안내문' 배부

-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예방접종 후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안내
  - ※ 부록Ⅲ. 예방접종 후 안내문(p. 224 참조)

### » 예진 및 주의사항 설명

- (기존 진료환자) 건강상태 및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 확인, 접종 후 국소 이상반응 (통증, 부종 등) 및 주의사항 설명
- (처음 의료기관 방문자)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 상담 후,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 확인, 접종 후 국소 이상반응(통증, 부종 등) 및 주의사항 설명

\* 별첨. 기저질환자 확인목록(p. 99 참조)



### » 접종실시 및 전산등록

- 과거 접종력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실시 및 전산등록
  - ※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전산등록

### » 이상반응 관찰

- 접종 후 20~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
  - ※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 구비, 후속조치 체계마련 및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별 역할 숙지(예진 의사, 간호사, 보조원 등)
  - ※ 별첨Ⅲ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p. 153 참조)

## 9 |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

### ■ 관리원칙

#### 1. 거동불편자

「의료법」의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축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 2. 보건소는 거동불편자가 생활하는 기관에서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접종 시행

- ① 요양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후 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 ②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 중인 고령 환자는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 또는 축탁의에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권고
- ③ 사회복지시설의 축탁의가 의료기관 소속이라면 소속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후 해당기관 의료진이 공급받은 백신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접종
- ④ 사회복지시설 축탁의가 개인 자격이거나, 축탁의가 없다면 보건소가 접종관리
  - ※ 개인 자격 축탁의가 보건소 사업에 협조(무료)한다면 축탁의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가 관리하도록 함
- ⑤ 사회복지시설 축탁의는 가급적 관할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소속 의사로 권고

## 🔍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 범위

- » 「의료법」의 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촉탁의가 지정된 시설만 해당)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 » 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정의

시설명		정의	법령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제3조의2
정신병원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중 촉탁의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	「의료법」 제3조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요양 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정신요양시설		법 23조에 따라 입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 법 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가 입소에 동의를 한 정신질환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복지법」 제16조3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숙인복지법」 제16조4



## 요양병원 및 사회복지시설별 사업 방식

구분	촉탁의 유무	촉탁의 소속	사업 방식
요양병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li> </ul>
사회복지 시설	촉탁의 있음	의료 기관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배정</li> <li>촉탁의가 주도하여 예진, 접종, 등록 실시</li> <li>예방접종 시행비는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상환</li> </ul> </li> <li>촉탁의 소속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다르다면, 두 기관 간의 거리·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접종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li> </ul>
		개인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기관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가 접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촉탁의 협조가 있으면 촉탁의의 예진/접종이 가능하나, 시행비 청구는 불가하고, 백신 제공과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담당</li> </ul> </li> </ul>
	촉탁의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기관에 한하여 보건소가 접종관리*</li> </ul>

\* 보건소 접종관리: ① 촉탁의가 없으면,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단기적으로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접종하도록 안내, ② 보건소가 보건소 백신으로 직접 접종, ③ ①의 촉탁의 계약이 없을 시, 보건소 관리 하에 인근 위탁의료기관이 방문하여 접종하고 시행비 상환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 » (요양병원, 정신병원)** 실시기준에 준한 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당일 등록. 단,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비용상환 신청 가능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이 어렵다면, 보건소에서 당일 등록 필요
- » (사회복지시설)** 사업 참여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가 실시기준에 준한 접종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당일 등록하면 비용상환 신청 가능
  - ※ 만약, 촉탁의가 없거나 개인자격은, 보건소가 접종관리 후 접종기록 전산등록

##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 접종의 백신 관리

-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가 다르다면,**
  - (백신 예상수요량)**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 관할 보건소' 간 상호 협의하여 제출 및 배정
  - 단,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예상수요량 제출 및 배정을 권고함**

## 🔍 촉탁의 예방접종의 기본원칙

### »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

①백신 콜드체인 유지, ②접종 후 대기 장소 확보, ③응급처치세트 및 앰블런스 등의 안전장비 구비

## 10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 경미한 반응은 30~50% 발생  
※ 대부분 48시간 이내 소멸
- 발열, 근육통, 중증도 이상의 국소반응은 1% 미만으로 나타남
- 심각한 전신반응은 드물  
※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신청, 역학조사 등 이상반응 관련사항(p. 18 참조)

## [별첨자료]

### I. 주요서식

〈별첨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93
〈별첨 I-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95
〈별첨 I-3〉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96
〈별첨 I-4〉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97
〈별첨 I-5〉 예방접종 예진표	98
〈별첨 I-6〉 어른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	99
〈별첨 I-7〉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100
〈별첨 I-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01
〈별첨 I-9〉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102
〈별첨 I-1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103
〈별첨 I-11〉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104
〈별첨 I-12〉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105
〈별첨 I-13〉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106
〈별첨 I-14〉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107
〈별첨 I-15〉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113
〈별첨 I-16〉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의료기관)	113





〈별첨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 쪽)

제1조	계약목적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	--

제2조	“수탁기관”	의 료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요 양 기 관 종 별		표 시 과 목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전 자 우 편 주 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의료정보시스템		[ ]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	---------	----------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 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li> <li>■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li> </ul>
-----	------------------	--

제5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li> </ul>
-----	------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관〉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확인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위탁계약조건 〉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⑦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며, 참여 내용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하여야 한다.



<별첨 I-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전자(또는 서면)-○○-○○호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1. 의료기관명 :
- 2. 대 표 자 :
- 3. 소 재 지 :
-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별첨 I-3〉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제 0000000000 호

# 교육수료증

성 명 : 홍길동

소 속 : 의료기관 / 홍길동병원

교육과정명 :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 교육 (2024)


교육기간 : 2024.03.04.~2025.02.28.

교육시간 : ★ 시간

면허번호 : 00000

 질병관리청귀하는 질병관리청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위 상기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 합니다.

2024.03.04

 질병관리청



〈별첨 I-4〉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참 여 백 신 시 행 확 인 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의 료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대 표 자		전 화	
주 소 (소 재 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시행여부	
결핵	BCG(피내용)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Hep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d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dap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폴리오	I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PCV10(단백결합백신 10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CV13(단백결합백신 13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PSV23(다당백신 23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수두	VAR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A형간염	HepA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LJEV(약독화 생백신-씨디제박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IIV(0.5ml)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로타바이러스	RV1(로타릭스)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RV5(로타텍)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 . . .	
		대표자	(서명)





〈별첨 I-6〉 어른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

(뒷면)

◦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군	질환명
정상면역성인	만성 심혈관 질환(고혈압 제외) <sup>1)</sup> 만성 폐 질환 <sup>2)</sup>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알코올 중독 간경변을 포함한 만성 간 질환 흡연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을 가진 자 <sup>3)</sup>	겸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비장 기능장애 및 비장제거술
면역저하자	선천성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sup>4)</sup> HIV 감염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백혈병, 림프종 전신적인 약성 종양 면역억제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전신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 고형 장기 이식 다발성 골수종 호지킨병 조혈모세포이식

1) 울혈성 심부전과 심근증 포함

2)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및 천식 포함

3)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나 면역저하자는 1차 다당 백신 접종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차 다당 백신 접종이 권장됨

4) B세포(체액면역) 또는 T세포 결핍증, 보체결핍증(특히, C1, C2, C3, 및 C4 결핍증), 탐식구 질환(만성 육아종 질환은 제외)



〈별첨 I-7〉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정보			
항 목	시 행 여 부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항원·항체검사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서명)</p>			





〈별첨 I-9〉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 기 관 정 보

의 료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대 표 자		전 화	
주 소 ( 소 재 지 )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정보

항 목	시 행 여 부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시행 * 건강상담은 12세 여성 대상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 . . .

대표자

(서명)







<별첨 I-12>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의 료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대 표 자		전 화	
주 소 ( 소 재 지 )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사업 대상	백신 종류	시 행 여 부
인플루엔자	어르신	II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어르신	PPSV23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참여를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 . . .</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span></p>			





<별첨 I-14>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 율 점 검 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 록 사 항			
요양기관번호		의료기관명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 소 (소재지)			
대표자		전 화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의 사 : 명 <input type="checkbox"/> 간 호 사 : 명 <input type="checkbox"/> 행 정 요 원 : 명	<input type="checkbox"/> 간 호 조 무 사 : 명 <input type="checkbox"/> 전 산 요 원 : 명 <input type="checkbox"/> 백신관리 전담자 : 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input type="checkbox"/>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 예방 접종 시행 여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비용 지원	
		<input type="checkbox"/> BCG(피네)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input type="checkbox"/> DTaP <input type="checkbox"/> Td <input type="checkbox"/> Tdap <input type="checkbox"/> IPV <input type="checkbox"/> DTaP-IPV <input type="checkbox"/> Hib <input type="checkbox"/> DTaP-IPV/Hib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CV10, 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CV13, 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PSV23, 다당) <input type="checkbox"/> MMR <input type="checkbox"/> 수두 <input type="checkbox"/> A형간염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 (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씨디저박스) <input type="checkbox"/> 로타바이러스 (RV1, 로타릭스) <input type="checkbox"/> 로타바이러스 (RV5, 로타텍)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HPV 2가 <input type="checkbox"/> HPV 4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input type="checkbox"/> HBIG 투여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항원·항체 검사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PSV23, 어르신)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어르신)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임신부)	
기타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BCG(경피)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서포배양(이모 접주)) <input type="checkbox"/> HPV 9가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b>1. 일반사항</b>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또는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인증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2)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백신을 사전에 구비해둔다.		
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지원내용 및 접종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4)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		
5)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하고 있다.		
6) 보건소 방문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다.		
7) 예방접종 예진 의사 부재* 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 예진 의사 휴가 등으로 의료기관내 예방접종 예진이 불가능한 전반적인 상황		
8) 현재,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에 의과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의사가 재직하고 있다.		
9)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은 예방접종 예진이 가능한 의사가 모두 퇴사하여 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즉시 보건소로 통보하여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해야 함을 알고 있다.		
<b>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b>		
1)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비치(보유)하고 있다.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예진시,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일정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을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한다.		
5)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한다.		
6)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반드시 피접종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설명한다.		
8)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한다.		
<b>3. 예방접종 실시</b>		
1) 준비된 백신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한다.		
3)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을 설명한다.		
4)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한다.		
5)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뺀 부위를 가볍게 수초간 눌러준다.		
<b>4. 예방접종 후</b>		
1)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제도를 설명한다.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20~30분 정도 접종 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한다.		
<b>5. 기록보존</b>		
1) 예방접종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한다. ※ 보관기간 : 5년		
2)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은 수정한다.		
3) 예방접종기록은 접종 당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b>6. 비용상환</b>		
1) 국가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로 피접종자에게 추가 진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접종 후 전산등록을 지연하여 중복접종으로 등록했다면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참여 백신의 시행정보가 변경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현행화 하여 비용상환 신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다.		
<b>백신관련 점검사항</b>	<b>점검결과</b>	
	<b>예</b>	<b>아니오</b>
1)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구입 또는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 5년		
3) 백신보관 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4) 「백신전용 냉장고」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보관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성애가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6) 냉장고 내부의 안쪽 또는 외부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7)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백신 보관온도를 2~8℃ 유지한다.		
8)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9) 과거 5년 동안의 온도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다. ※ 최소 5년 이상 보관		
10)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은 냉장고내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분리한 후,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있다.		
<b>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점검사항</b>	<b>점검결과</b>	
	<b>예</b>	<b>아니오</b>
1) 13세 이상에서 HPV 예방접종만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다. ※ 건강상담 미제공		



2) 대상자의 1차 접종 시기에 따라 총 지원 횟수가 달라짐을 알고 있다.		
3)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중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4) 12세 대상자에게 건강상담과 예방접종은 반드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두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알고 이행하고 있다.		
5)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비치하고 있으며, 상담 전 대상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6) 상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7)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바탕으로 상담흐름도(Flowchart)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8) 상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향후 자궁경부암 검진의 필요성 등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9)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의 의료인 항목을 작성하고 있다.		
10) 상담 시 사춘기 성장발달과정과 무월경·월경이상·월경통 등 여성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하는 월경 관련 질환 등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1) 상담 대상자가 작성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보관하고 있다. ※ 보관기간 : 5년		
12) 상담 대상자가 상담을 거부하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력 등록 시 '상담안함' 항목을 체크하고 있다.		
13)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산 시스템, 또는 자격 증명서류를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14) HPV 예방접종 및 상담은 전액 무료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b>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일반사항</b>	<b>점검결과</b>	
	<b>예</b>	<b>아니오</b>
1)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기준, 예방처치 일정 등)을 잘 알고 있다.		
2) B형간염 산모가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에게 사업 내용과 중요성, 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리플렛 등 홍보물을 비치하여 안내 시 활용하고 있다.		
5) 사업대상 산모에게 사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구득하고, 보관하고 있다. ※ 보관기간 : 5년(단, 예방처치 관리 일정이 5년 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관리 종료시까지 추가보관)		
6) 보호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산모 외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7)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산모의 임신 중(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검사결과(HBsAg 양성 또는 HBeAg 양성)를 제출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산모검사 결과지는 시스템 업로드		
8) 기초접종, 항원·항체 정량검사, 재접종, 재검사 등 권장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알고 있다.		
<b>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면역글로불린 투여 관련 점검사항</b>	<b>점검결과</b>	
	<b>예</b>	<b>아니오</b>
1) 출생 후 12시간 내 HBIG 및 B형간염 백신 접종을 부위를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출생 후 12시간 내 투여하는 HBIG과 B형간염 백신 접종은 분만시기(주말/심야 등)에 관계없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3) 체중 2KG 미만인 저체중아에게도 출생 12시간 내에 HBIG 투여를 실시하고 있다.		
<b>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접종 관련 점검사항</b>	<b>점검결과</b>	
	<b>예</b>	<b>아니오</b>
1)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2KG 미만) 총 4회 접종이 필요함을 알고 있으며,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다.		
2) B형간염 백신 접종은 대퇴부 전외측에 실시하고 있다.		
3) 접종/검사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거 내역 및 예방처치일정을 확인하여 다음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3차 접종 시 기초접종 완료 후 면역 획득여부 확인을 위해 생후 9~15개월에 항원·항체 검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b>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항원항체 검사관련 점검사항</b>	<b>점검결과</b>	
	<b>예</b>	<b>아니오</b>
1) 대상자의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는 권장되는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2) 면역획득 확인을 위한 1차 항원·항체 검사는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생후 9개월 이후에 실시하고 있다. ※ 1차 항원항체 검사 권장시기 : 생후 9~15개월		
3)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에 따른 다음 일정(사업 종료/재접종/재검사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4)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지를 업로드하고 있다.		
5) 감염으로 인한 사업종료 대상(보호자)에게 배포할 감염관리 안내문(보호자용)을 비치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 등에 활용하고 있다.		
<b>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점검사항</b>	<b>점검결과</b>	
	<b>예</b>	<b>아니오</b>
1)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종 실시기준 등)을 잘 알고 있다.		
2)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3)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PPSV23)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시행됨을 알고 있다.		
4)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PPSV23) 폐기 최소화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또는 지자체가 설정한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진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에 사전 재분배 등을 요청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b>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점검사항</b>	<b>점검결과</b>	
	<b>예</b>	<b>아니오</b>
1) 해당 절기 사업대상 및 지원기간 등 사업 내용을 알고 있다.		
2) 어르신은 연령별 사업기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3)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는 사업기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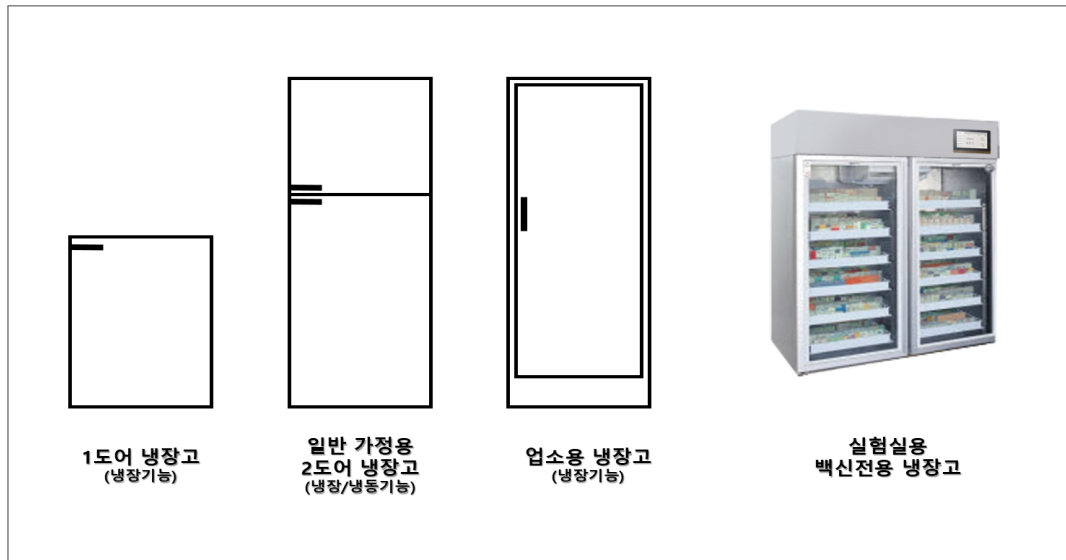
4)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인플루엔자 사업은 백신 공급 방식 및 사업시기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직급:	성명: (서명)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 참고)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종류

자세한 사항은 [부록] II. 위탁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5. 백신보관 장비(냉장고) 관리 참조





<별첨 I-15>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 )월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

의료기관 \_\_\_\_\_

접종명	총 등록건수	비용상환 신청건수	비용상환 심사결과				총 상환금액 (원)
			상환결정	예외인정	상환불가	미결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별첨 I-16>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의료기관)

( )년도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

의 료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표 시 과 목		연 락 처	
의 료 기 관 주 소			
<b>지급내역</b>			
구분	지급완료건수	지급금액	
<b>합계</b>			
※ 예방접종 비용 환수 등으로 인한 접종력 삭제 또는 접종력 수정 등으로 인해 지급 내역서의 출력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별첨자료]

##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방법	117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123
3.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35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38
5.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42
6.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150





#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가입 및 예방접종 권한 신청

###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기관(IR) 신규 가입자 권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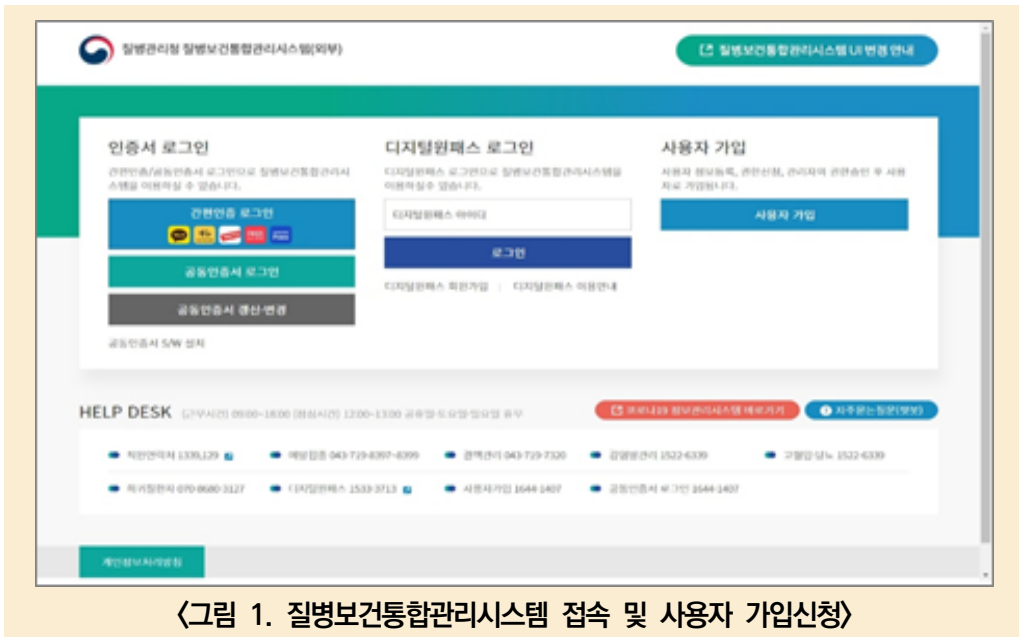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업무 사용자 권한’ 신청 절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가입신청 →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인증서, 사용자정보 등록 → 권한신청 단계에서 예방접종관리 User 항목 조회 → 승인기관(관할 보건소) 선택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가입신청 및 권한승인 후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완료 후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 진행 가능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 가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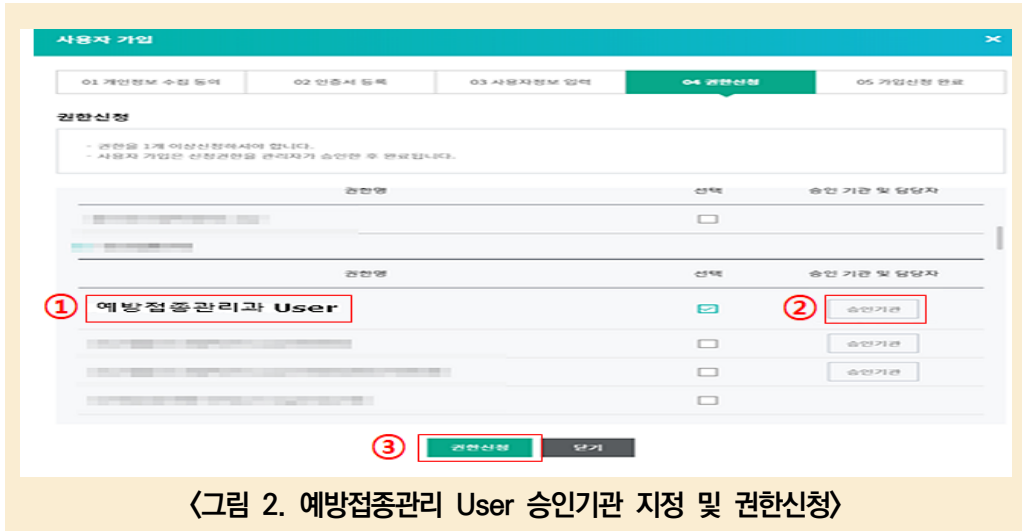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043-719-8272, 8282(HelpDesk)



〈그림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사용자 가입신청〉

② 인증서 및 사용자정보 등록 후 ‘권한신청’ 단계에서 ‘예방접종관리 User’ 항목의 ‘승인기관’을 클릭하여 관할 보건소를 선택하고 권한 신청하여 가입을 완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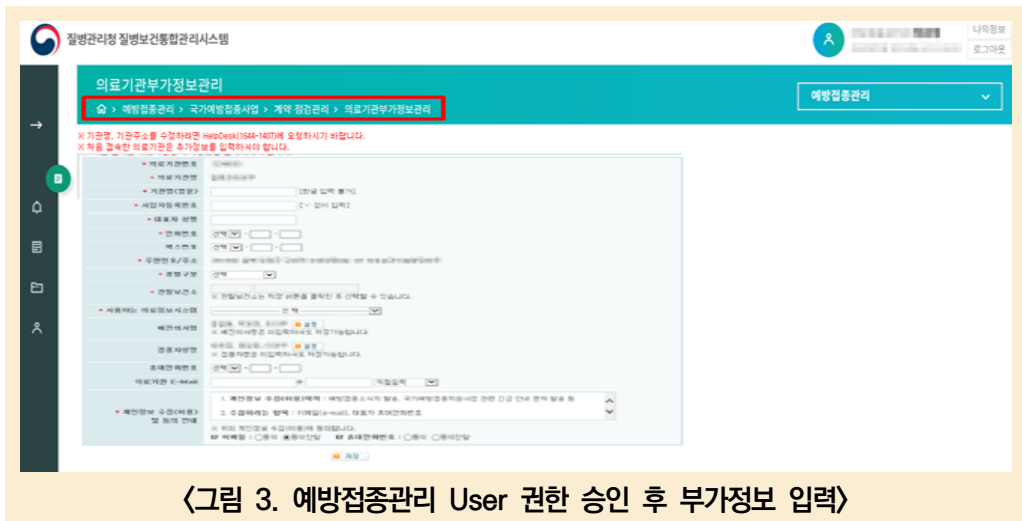
\* 보건소에서 권한신청을 승인하면 권한상태가 ‘신청중’에서 ‘승인’으로 변경되고 가입이 완료됨



〈그림 2. 예방접종관리 User 승인기관 지정 및 권한신청〉

③ 권한 승인 및 가입 완료 후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부가정보관리’에서 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가정보: 기관 종별구분, 관할 보건소,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핸드폰번호 등



〈그림 3.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부가정보 입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기존 사용자 권한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업무 사용자 권한' 신청 절차

화면 좌측의 '권한정보' → 예방접종업무 권한 상태 조회 → 승인기관(관할 보건소) 선택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권한승인 후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부가정보관리' 메뉴 클릭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완료 후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 진행 가능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화면 좌측의 '권한정보'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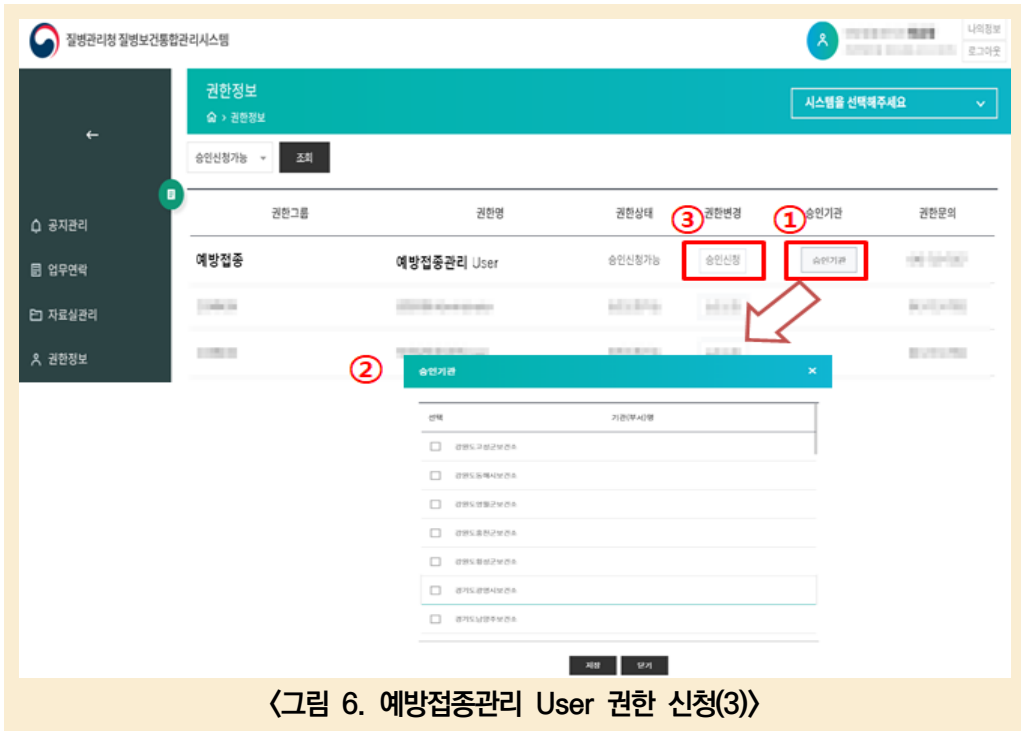
〈그림 4.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1)〉

- 2 권한정보 화면 좌측 상단에서 '승인신청가능'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권한그룹선택에서 '예방접종' 선택 또는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항목'에서 예방접종관리 User의 '승인기관'을 클릭하여 관할 보건소를 선택한 후 '권한 신청합니다.'

\* 보건소에서 권한신청을 승인하면 권한상태가 '신청중'에서 '승인'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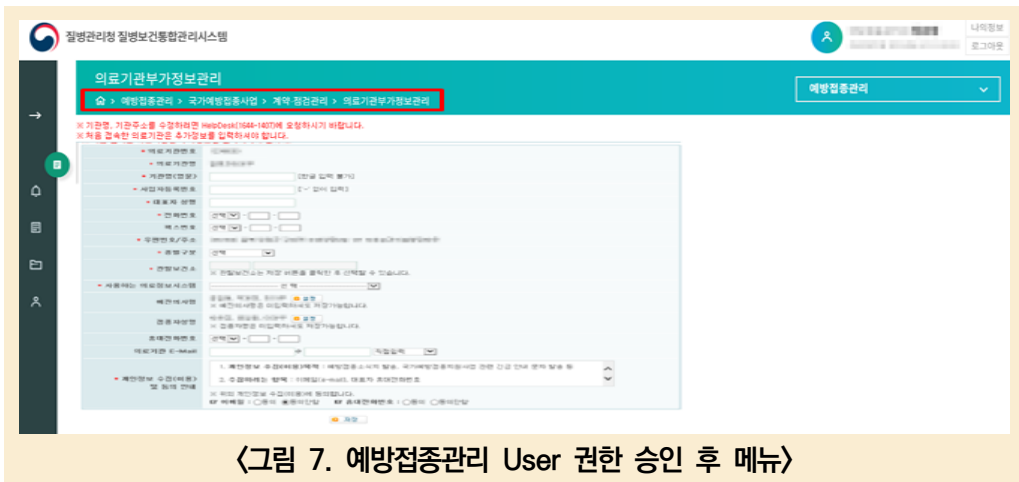
〈그림 5.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2)〉



〈그림 6.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3)〉

③ 권한 승인 후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 부가정보관리'에서 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가정보: 기관 종별구분, 관할 보건소,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핸드폰번호 등



〈그림 7.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메뉴〉



## 🔍 예방접종관리업무 계약 신청

###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전자계약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에 필요한 서류 제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

###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에서 ‘계약신청관리’ 메뉴의 ‘기관정보’에서 의료기관 인증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를 등록합니다.

**1. 기관인증서의 [등록] 버튼 클릭**

**2. 기관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3. 기관인증서 등록 완료**

**4. 기관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그림 8.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기관인증서 등록>**

### 2️⃣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등록합니다.

**1. 위탁계약서 작성**

**2. 통장사본 등록**

**3. 교육수료정보 등록**

**4. 시행확인증 등록**

**<그림 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계약신청>**

- 등록절차: ① 의료기관 기본정보 및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②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등록 → ③ 통장사본 이미지파일 업로드 → ④ 교육과정 이수증의 수료번호(10자리)와 수료자명을 입력하고 검증버튼 클릭 후 저장 → ⑤ 확인증 등록 버튼 클릭 후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백신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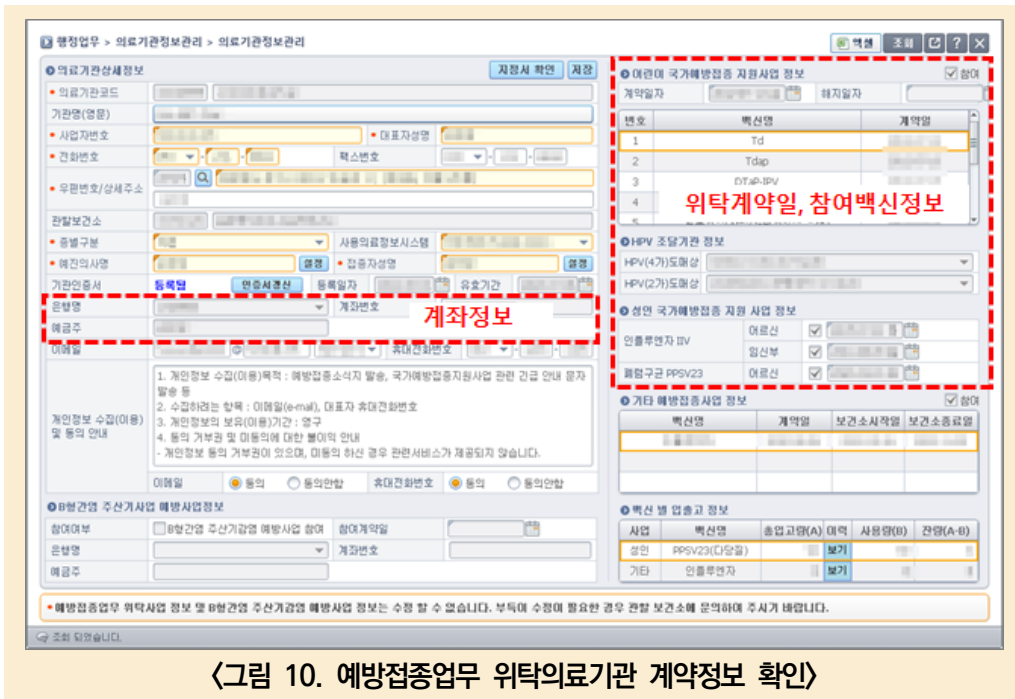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도매상 협약서 사본 이미지파일 추가등록 및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등록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정보 정보 확인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완료한 의료기관(서면계약기관 포함)은 다음 절차에 따라 위탁계약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단, 서면계약기관은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이후 확인 가능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에서 확인

※ 위탁사업 정보 수정은 계약신청관리 메뉴에 문서 등록 후 관할 보건소 승인을 받아야 가능



〈그림 10.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정보 확인〉



##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며, 처음 접속할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클릭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성

- ① 의료기관 기본정보 ② 당월 비용상환내역 ③ 신생아 입시번호 접종자의 인적정보 변경내역 및 행안부 오류내역  
④ 예방접종등록 메뉴 바로가기 ⑤ 최근 6개월간의 비용상환 내역 ⑥ 공지사항 ⑦ 즐겨찾기

The screenshot shows the main dashboard of the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It features a top navigation bar with a '메뉴 보기' dropdown and a clock showing 1:59:28.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panels:

- ① 의료기관정보:** Displays hospital information, including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정보' and '아르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정보'.
- ② 2020년 11월분 비용상환 신청 지급 현황:** A table showing reimbursement status for various vaccines.
 

접종명	신청	접수	심사	지급중	지급	지급액(원)	상환불가
BCG(피내용)	0	0	0	0	0	0	0
HepB(유전자재조합)	0	0	0	0	0	0	0
DTaP	0	0	0	0	0	0	0
Td	0	0	0	0	0	0	0
Tdap	0	0	0	0	0	0	0
IPV	0	0	0	0	0	0	0
DTaP-IPV	0	0	0	0	0	0	0
Hib	0	0	0	0	0	0	0
DTaP-IPV/Hib	0	0	0	0	0	0	0
PCV13(단백결합)	0	0	0	0	0	0	0
PCV10(단백결합)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 ③ 인적정보 변경내역:** A table for tracking changes in personal information.
- ④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Buttons for '사전예약관리' and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 ⑤ 최근 6개월간 비용상환 내역:** A bar chart showing reimbursement trends from 2019 to 2020.
 

연도	비용상환액 (원)
2019년 10월	916,916
2019년 11월	913,913
2019년 12월	786,786
2020년 1월	818,818
2020년 2월	1,028,102
2020년 3월	1,179,179
- ⑥ 공지사항 및 지침:** A list of notices and guidelines, including '2020년 제2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그림 1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홈 화면>

## 🔍 예방접종내역 등록

### ① ‘예방접종등록’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또는 좌측의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그림 12. 예방접종등록 화면〉

### ②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하며, 인적정보가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피접종자 인적정보를 조회합니다.

- ※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는 반드시 입력
-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경우 보호자(母를 원칙으로 함) 인적정보를 함께 등록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외 인적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 가능
- ※ 휴대전화번호 등록 시 ‘문자수신동의’ 항목을 체크할 경우 다음접종 사전 안내문자 자동 전송



③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의 등록할 백신 차수를 선택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합니다.

※ 접종 전 반드시 과거접종 내역 확인 필수

④ 팝업창에서 ‘등록된 백신’을 선택하고, 기타정보(접종일자, 접종방법, 접종부위, 용량 등)를 확인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등록 완료시 접종일자가 표기됨).

**예방접종등록 (접종정보)**

종진	종진	1차	2차	3차(기초)	4차(추가)	5차(추가)
일본뇌염 (사백신)				3차(기초)	4차(추가)	5차(추가)
일본뇌염 (상백신)		1차(기초)	2차(기초)	3차(추가)		
Hib	Hib	3차(기초)				
페렴구균 (단백결합)				3차(기초)	4차(추가)	

※ 접종내역 등록 시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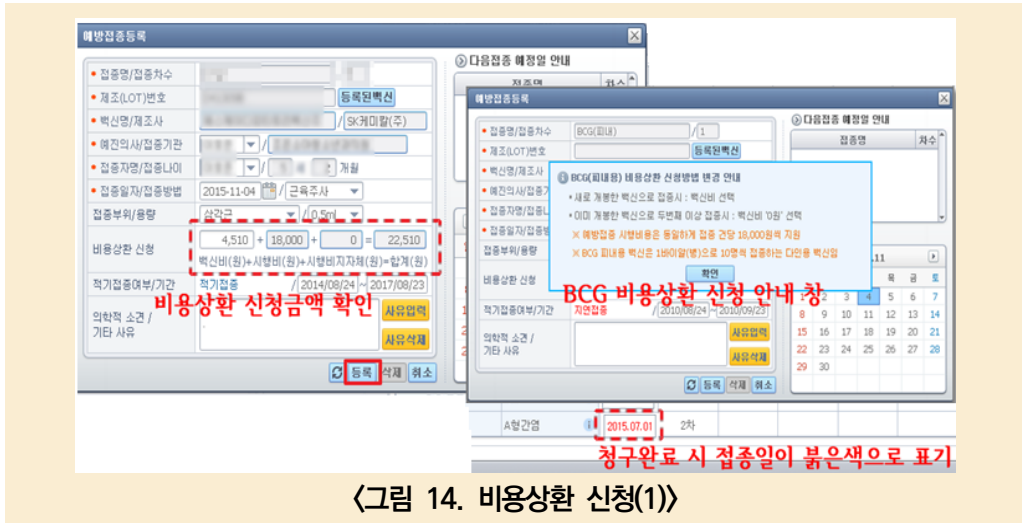
- 재접종(동일한 백신, 동일한 접종차수) 기록 등록은 해당 접종차수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DTaP 접종이 지연된 7세 이상 대상자가 Td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 'Td(그 외)'란에 등록

## 🔍 비용상환 신청

- 1 접종기록 등록시 생성된 팝업창에서 ‘비용상환 신청’ 항목의 비용을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됩니다.

※ 비용상환 신청금액은 접종별로 자동입력되나, 피내용 BCG 백신(다인용)의 경우 백신을 개봉하고 첫 번째 시행한 건에 대해 백신비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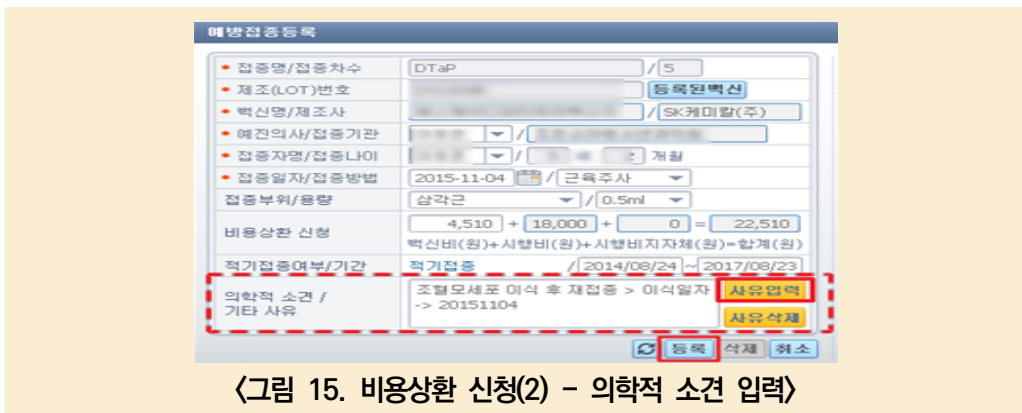
※ 비용상환 신청되면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의 해당 접종기록에 빨간색 날짜로 표시됨



〈그림 14. 비용상환 신청(1)〉

- 2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재접종에 대한 접종기록은 해당 접종차수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등록하며, 타당한 의학적 소견으로 재접종할 경우 ‘의학적 소견’의 사유를 선택·기입합니다.

※ 의학적 사유가 타당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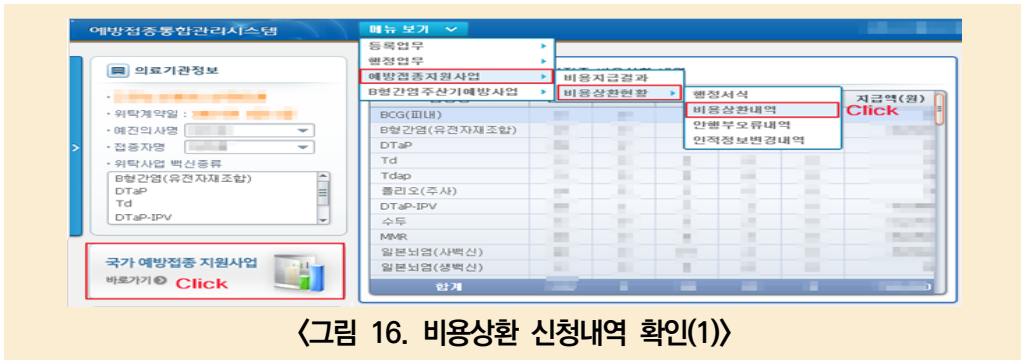


〈그림 15. 비용상환 신청(2) - 의학적 소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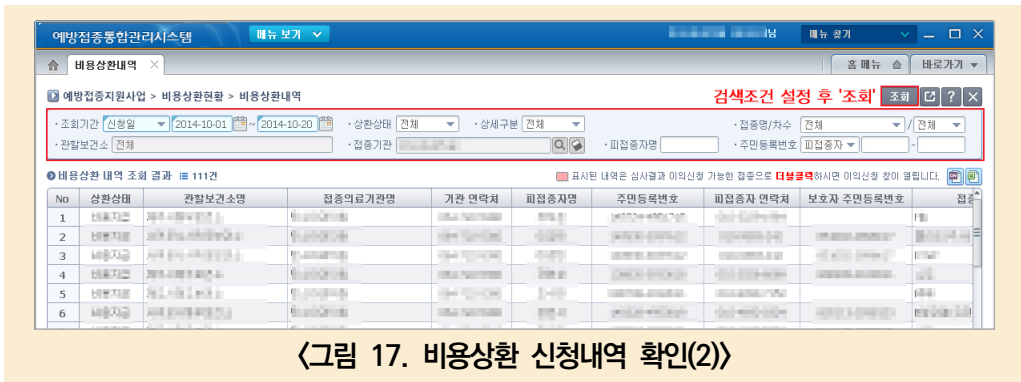
## 🔍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

- 1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 또는 메인화면 좌측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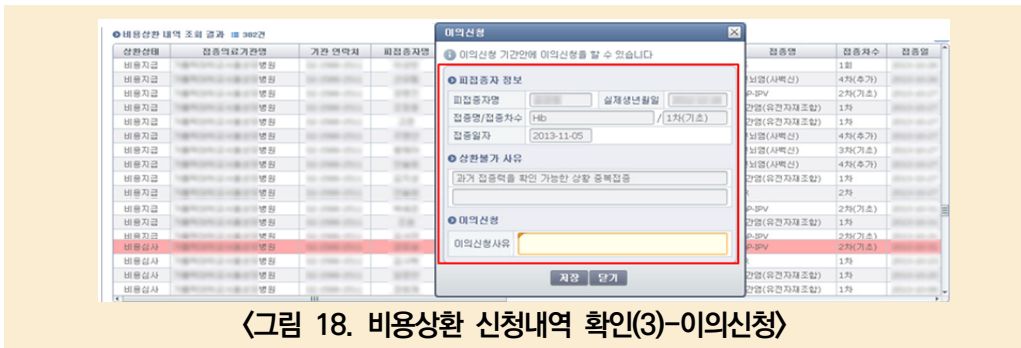
〈그림 16.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1)〉

- 2 ‘비용상환내역’에서 상환신청내역의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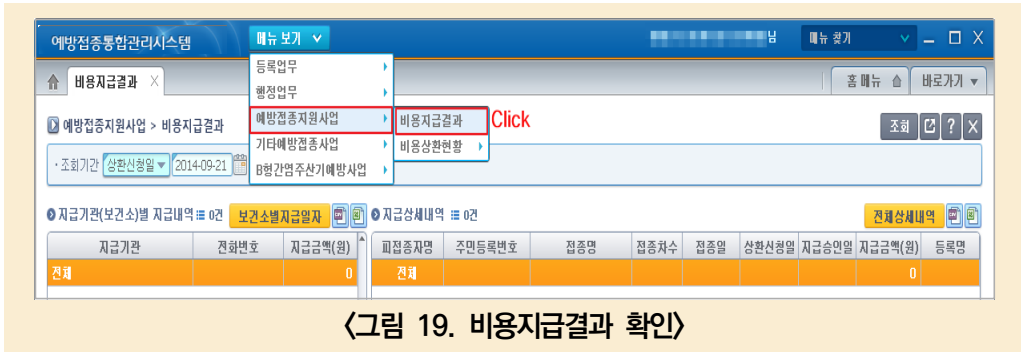
- 3 상환불가(분홍색으로 표시)내역의 이의신청은 해당 내역을 더블클릭합니다.  
※ 이의신청은 ‘상환불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지금취소’건은 재심사 불가)



〈그림 18.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3)-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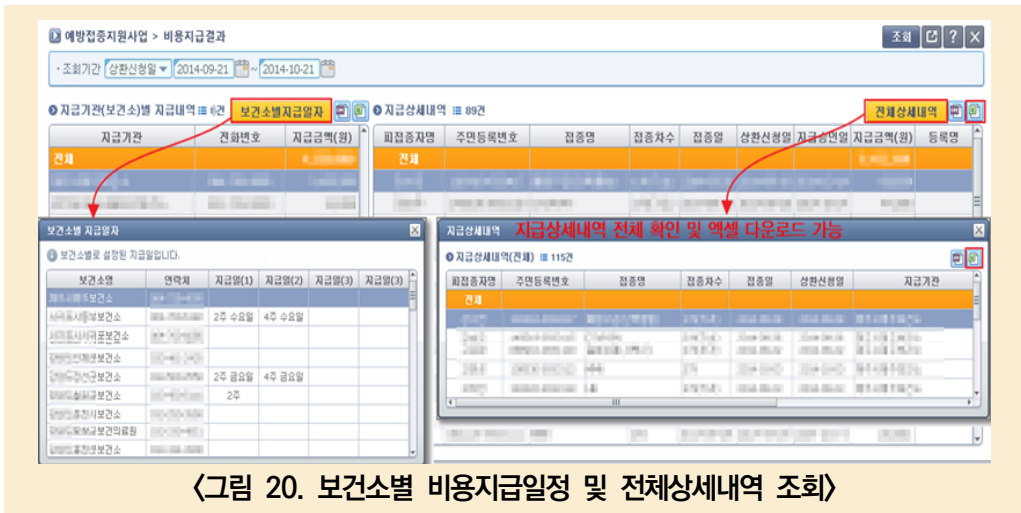
## 🔍 비용지급결과 확인

- ①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결과’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특정 보건소의 지급내역 조회는 조회 결과의 해당 보건소를 더블클릭합니다.  
※ 지급승인일 : 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에게 비용지급을 완료한 날짜



〈그림 19. 비용지급결과 확인〉

- ② 보건소별 비용지급일은 ‘보건소별 지급일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체상세내역’을 클릭하면 설정된 기간 내 지급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비용상환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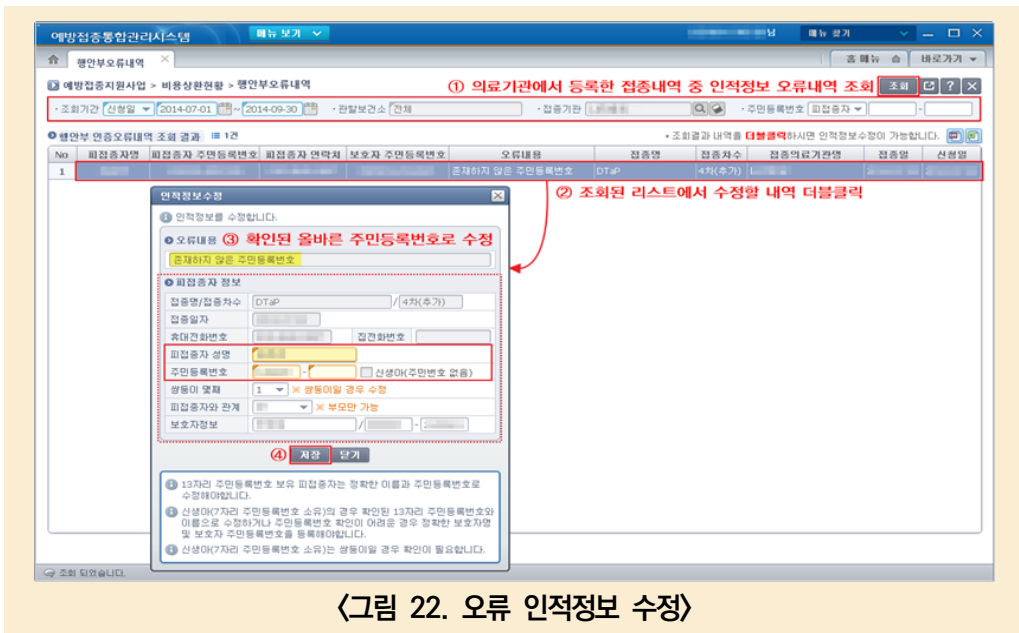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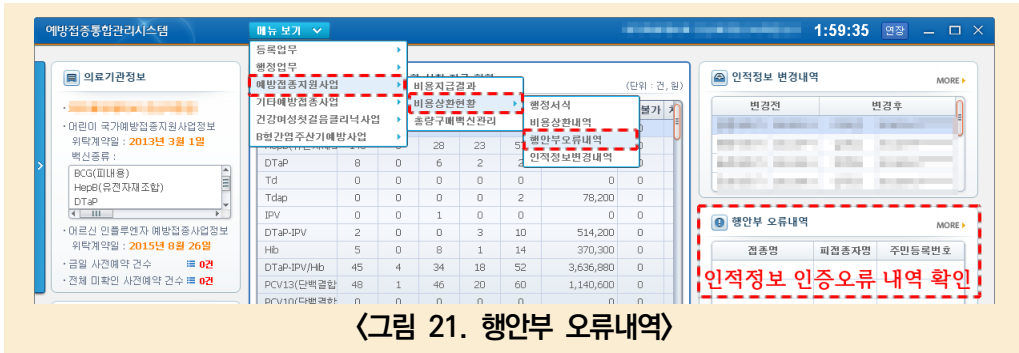


〈그림 20. 보건소별 비용지급일정 및 전체상세내역 조회〉



## 🔍 주민등록번호 인증 오류내역 수정

»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오류내역’ 또는 메인화면 우측 ‘행안부오류내역’에서 수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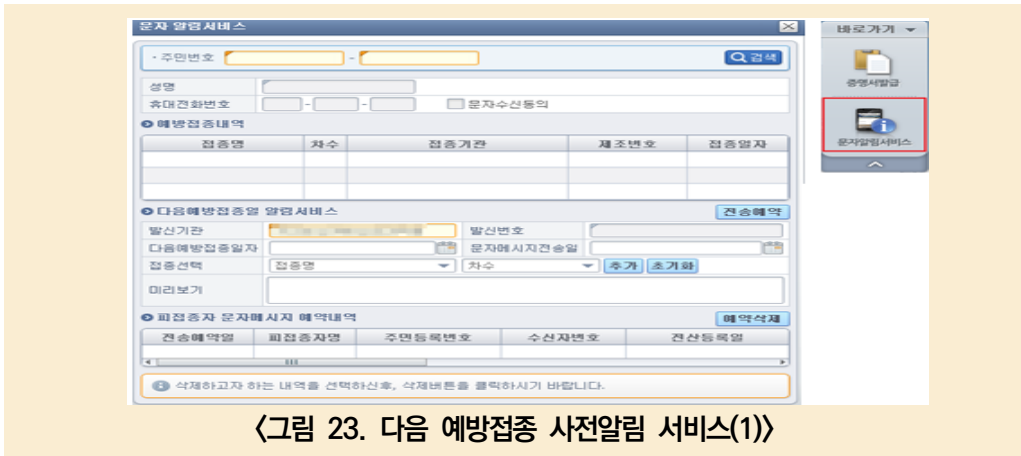


## 🔍 다음 예방접종 문자 안내 설정

①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바로가기 → 문자알림서비스’에서 다음 예방접종 문자알림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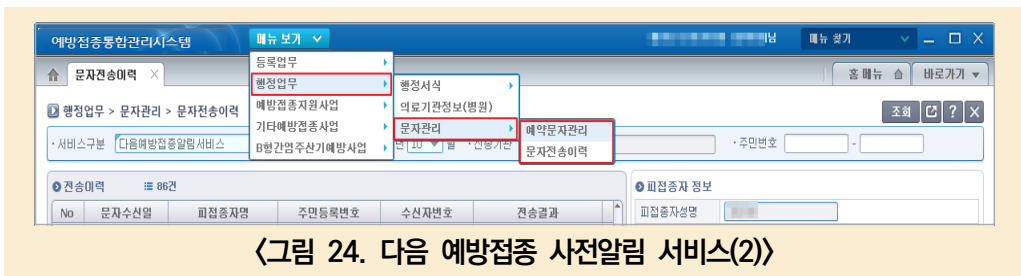
※ ‘예방접종등록’ 메뉴에서 인적조회 후 바로가기를 통한 문자서비스 메뉴이동 시 조회된 해당 인적에 대한 문자 알림 설정가능

※ 다음 예방접종일정 미입력 시, 앞차수 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차수 접종당일(10:00 이후)에 접종시기임을 환기하는 문자가 자동 발송



〈그림 23.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1)〉

② 문자 발송 예약 및 전송 이력 확인은 ‘메뉴보기’ → ‘행정업무’ → ‘문자관리’ → ‘예약문자관리’, ‘문자전송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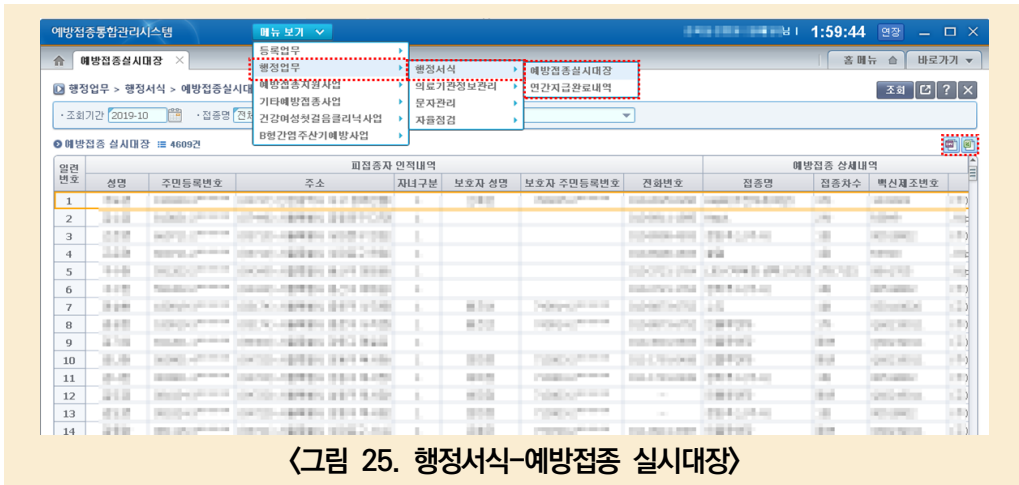


〈그림 24.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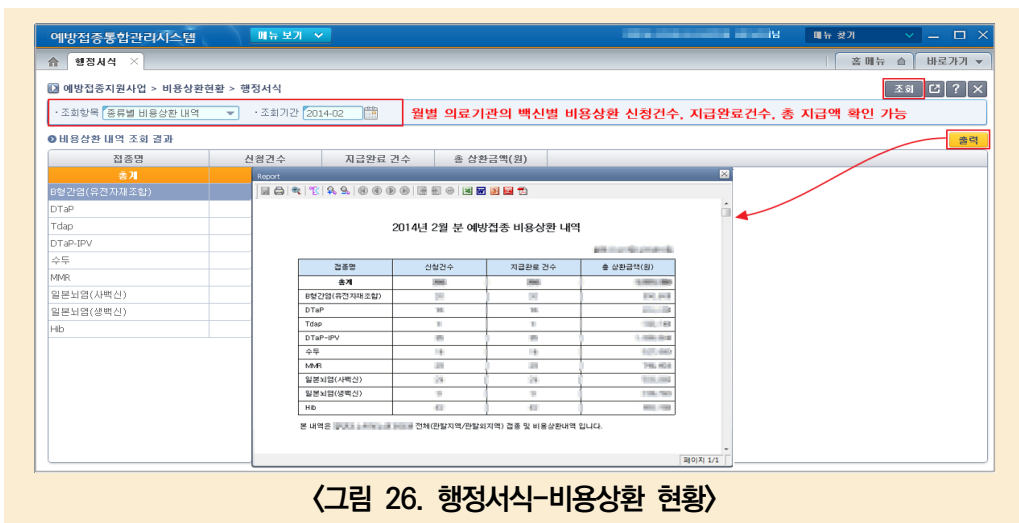
## ☞ 행정서식

- 1 '메뉴보기 → 행정업무 → 행정서식'에서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다운로드하거나, 연간지급완료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25. 행정서식-예방접종 실시대장〉

- 2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정서식'에서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 등 행정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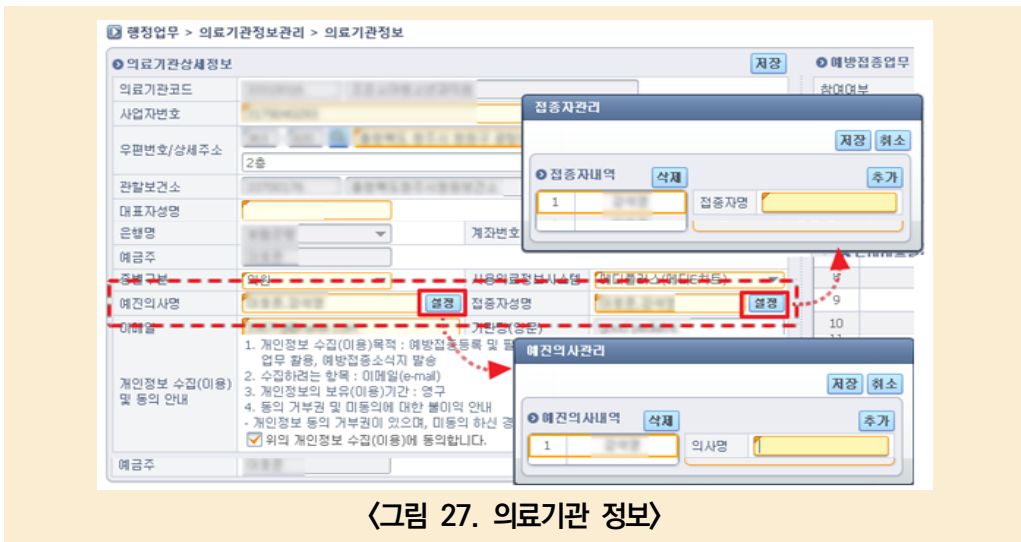
〈그림 26. 행정서식-비용상환 현황〉



### 🔍 의료기관 정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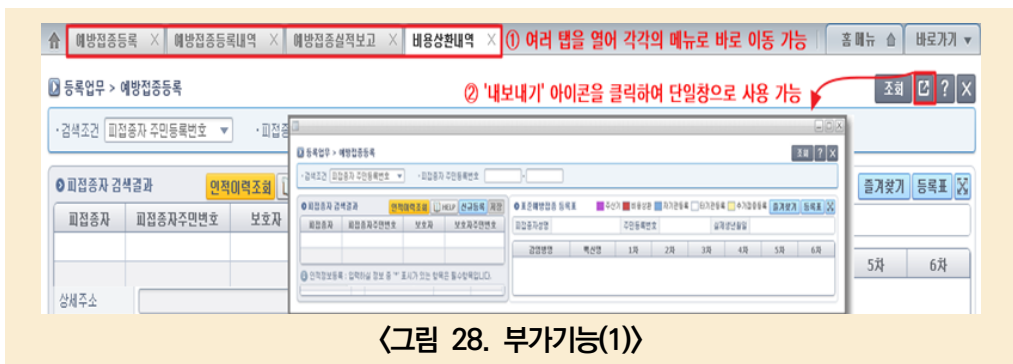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에서 등록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정보에서 예진의사명과 접종자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위탁계약 관련 사항(계좌번호, 위탁계약체결일, 위탁계약백신 등)은 계약신청관리 메뉴를 통해서만 수정 가능



### 🔍 부가기능

① ① 여러 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② 단일창('내보내기' 또는 'F3키')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② 실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만 설정하는 방법은 '예방접종등록 → 즐겨찾기'에서 백신을 선택하고, 위치를 조정하면 백신 배열 순서도 변경됩니다.  
 ※ 즐겨찾기 기능 설정과 관계없이 타 기관에서 등록된 접종내역은 모두 확인 가능

**즐거찾기 설정**

감염병명	백신명	선택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input type="checkbox"/>
	Td	<input type="checkbox"/>
	Tdap	<input type="checkbox"/>
결핵	BCG(피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BCG(경피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B형간염	HepB(혈장유래)	<input checked="" type="checkbox"/>
	HepB(유전자재조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폴리오	OPV	<input checked="" type="checkbox"/>
	IPV	<input checked="" type="checkbox"/>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input type="checkbox"/>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input type="checkbox"/>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PPSV(다당질)	<input type="checkbox"/>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input type="checkbox"/>
수두	수두	<input type="checkbox"/>
A형간염	HepA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	JE(불활성화-주사용)	<input type="checkbox"/>
	JE(불활성화-항로제용)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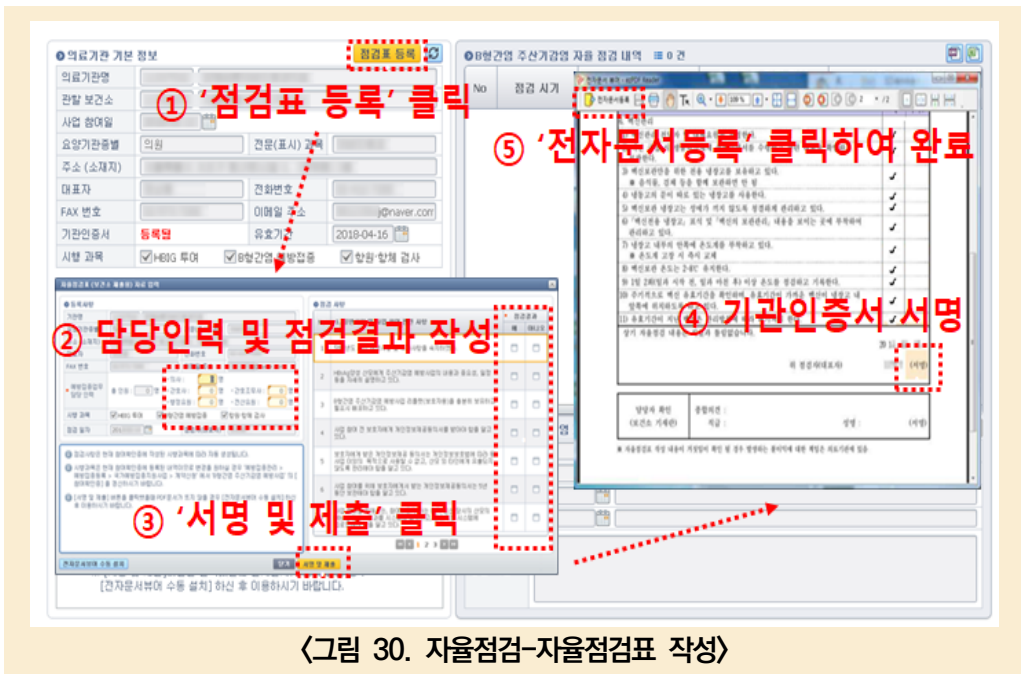
**즐거찾기 설정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전산등록내역은 모두 조회 가능**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2003.06.07	2003.08.07	2003.10.07	2004.10.25	2009.10.06	
	Tdap						2015.04.06
결핵	BCG(피내용)	1회					
	BCG(경피용)	1회					
B형간염	HepB(혈장유래)	1차	2차	3차			
	HepB(유전자재조합)	2003.04.07	2003.05.07	2003.10.07			
폴리오	IPV	2003.06.07	2003.08.07	2003.10.07	2008.10.06		

〈그림 29. 부가기능(2)〉

## 🔍 자율점검

- ①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점검관리’ → ‘자율점검 등록관리’에서 자율점검표를 작성(등록)합니다.
- ② 점검사항 작성 후 서명(인증서)합니다.
- ③ 전자문서 뷰어 좌측 상단의 ‘전자문서등록’을 클릭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 ※ ‘서명’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모니터 해상도를 권장설정으로 변경 후 작성
  - ※ 전자서명단계에서 진행불가 시 ‘계약신청관리’ 메뉴 또는 ‘의료기관정보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기관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 갱신한 후 재시도



- ④ 자율점검 등록 후 ‘조회’를 클릭하여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 후 종료됩니다.



### 3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방법(전자계약)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후 ‘HPV 국가예방접종’ 탭 클릭하여 신청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참조

**1. 통장사본 업로드(계좌정보 변경 시 재업로드)**  
**2. 도매상 협약서 사본 업로드(도매상 변경 시 재업로드)**  
**3. 교육수료번호(10자리), 수료자명 입력 후 '검증' 버튼 클릭**  
**4. 검증되면 '저장' 버튼 클릭**  
**5. '확인증 등록' 버튼 클릭**  
**6. 전자서명 후 '전자문서등록'**

사업명	통장사본	HPV4가 협약서	HPV2가 협약서	시행 확인증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미등록	X	X	미등록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미등록	미등록	미등록	미등록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승인 완료	X	X	[참여] 승인 완료
B형간염 주사기감염 예방사업	미등록	X	X	미등록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인증 정보**

구분	관정액	수료번호	수료자명	수료일자	수료확인
공통					검증
기본					검증
보수 & HPV					검증

〈그림 31. 사업 참여 신청 방법〉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도매상 협약서 사본 업로드
  -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캔한 협약서 이미지를 선택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 ※ 협약서 사본 파일은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가능
  - HPV 백신은 지정된 도매상으로 비용이 지급되므로, 사업 참여 중간에 도매상 변경이 있을 경우 HPV 협약서를 다시 제출받아 도매상 정보를 수정하여 승인해야 백신 비용이 해당 도매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내역 등록

- 교육수료정보항목에 수료번호와 수료자명 입력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여부를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규 계약 시 공통필수와 기본교육 이수, 재계약시 공통필수와 보수교육 이수완료 필수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등록

- HPV 국가예방접종의 확인증 정보에 [확인증 등록(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 클릭하여 서명 후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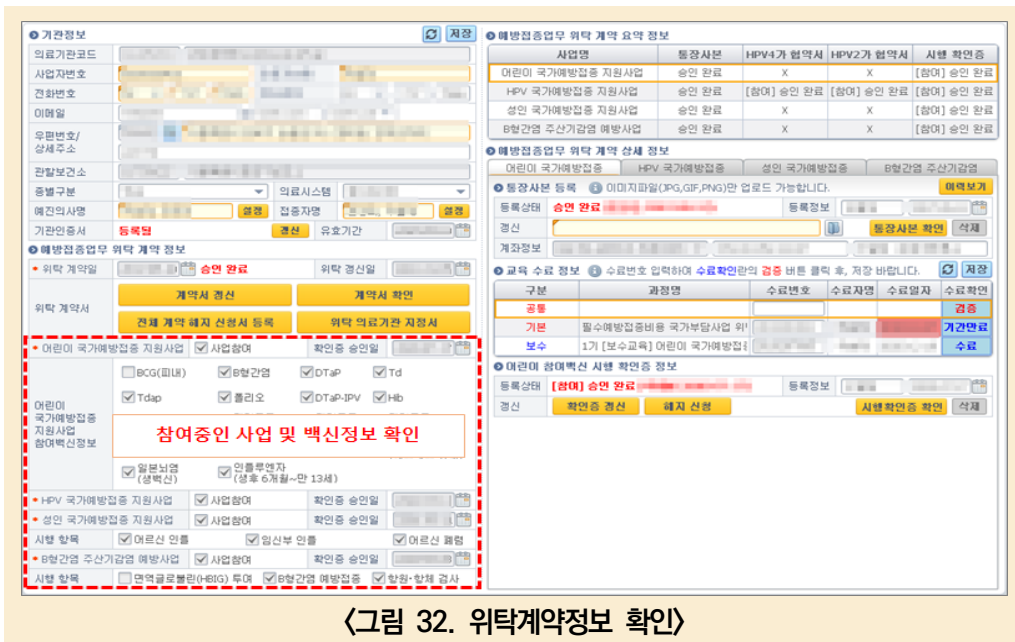
※ 등록 완료 시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승인하면 '승인완료'로 변경

※ 계약서 및 확인증 '승인완료' 후 사업 참여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정보 확인

- 각 사업별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현황은 계약신청관리 화면 좌측 하단 내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승인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와 비용상환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승인일과 참여백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림 32. 위탁계약정보 확인〉



## 📍 저소득층 대상자 확인

### » 접종 등록 시 확인 경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 접종할 HPV 차수 등록란 클릭 → 의학적 소견/기타사유 사유입력 클릭 → 18~ 26세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택 → 행복e음확인 클릭 →  표시여부 확인

예방접종등록

접종명/접종차수: HPV4(가다실) / 1

제조(LOT)번호: [ ]

접종일자/접종방법: 2022-05-12 / [근육주사]

접종부위/용량: 삼각근 / 0.5ml

의학적 소견 / 기타 사유:  만 18~26세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행복e음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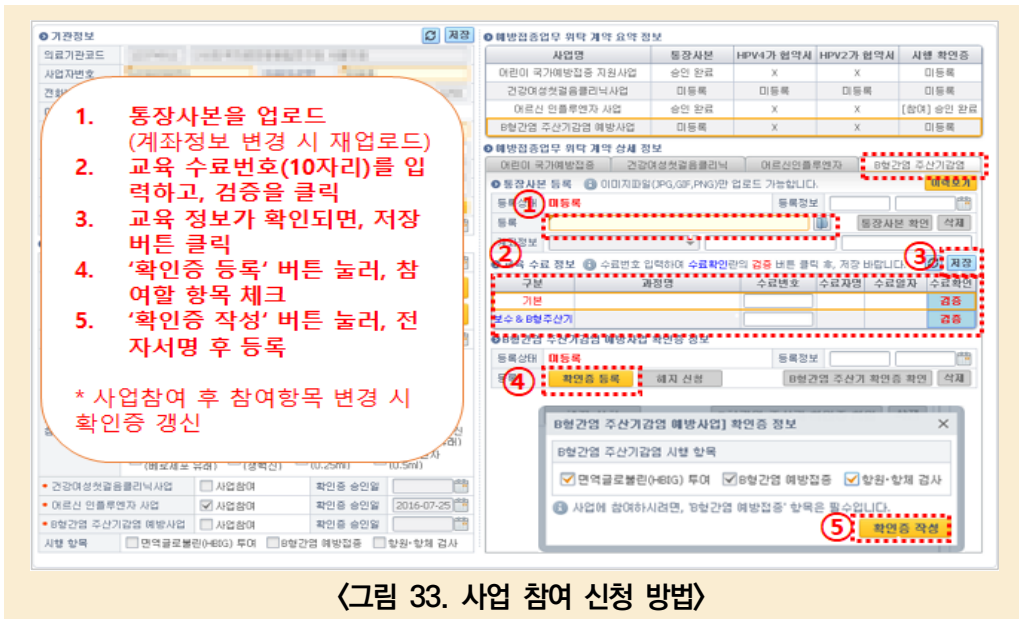
접종명	차수	4차	5차	6차
		4차(추가)	5차(추가)	
		4차(추가)	5차(추가)	

접종명	차수	접종기관	접종일자	등록일자		
로타바이러스	RV(로타텍)		1차	2차	3차	
수막구균	MCV(4가)		1차	2차	3차	4차
대상포진	대상포진		1회			
B형간염	B형간염(모듈류 소인물주사제)	HeepB-Hib	1차	2차	3차	

##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신청 방법(전자 제출)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탭을 클릭하여 신청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참조
- » 통장사본 업로드, 교육이수내역 등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등록
  - 파일모양의 아이콘 클릭하여 통장사본을 업로드합니다.
  - 교육수료정보 항목에 수료번호 입력한 후 [검증]버튼 클릭하여 수료여부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하여 교육이수내역 등록합니다.
    - ※ 2019년 이후 NIP 기본교육 이수내역 확인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확인증 정보에 [확인증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 클릭하여 서명 후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 등록 완료 시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 보건소에서 승인시 ‘승인완료’로 변경
    - ※ 계약서 및 확인증 ‘승인완료’ 후 사업 참여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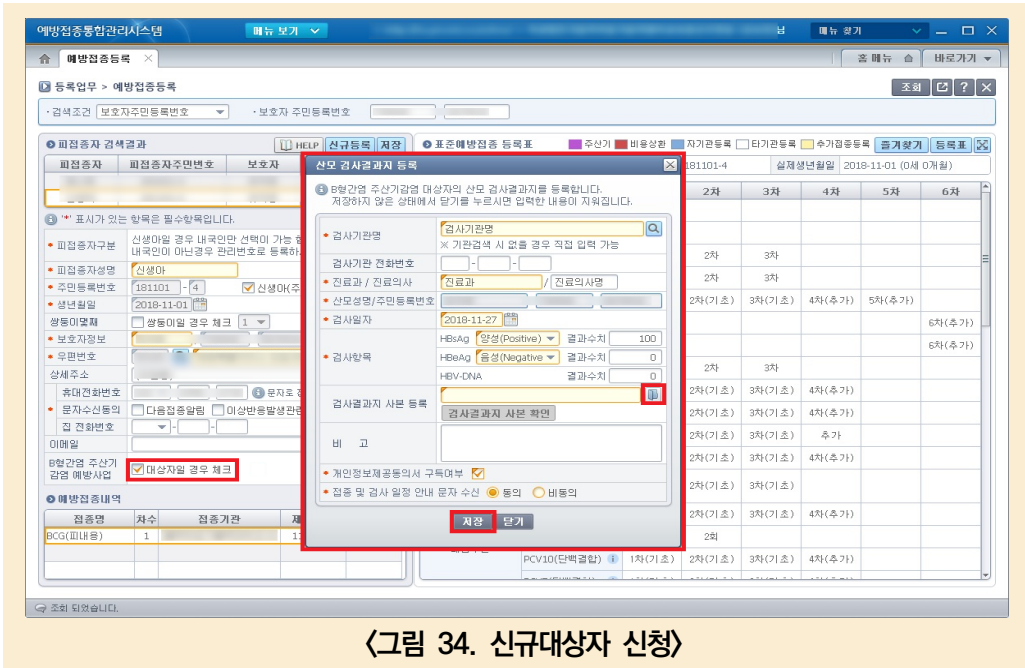
〈그림 33. 사업 참여 신청 방법〉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승인 신청

» (신규 대상자 승인신청)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 입력 및 결과지 업로드

※ 대상자 승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차수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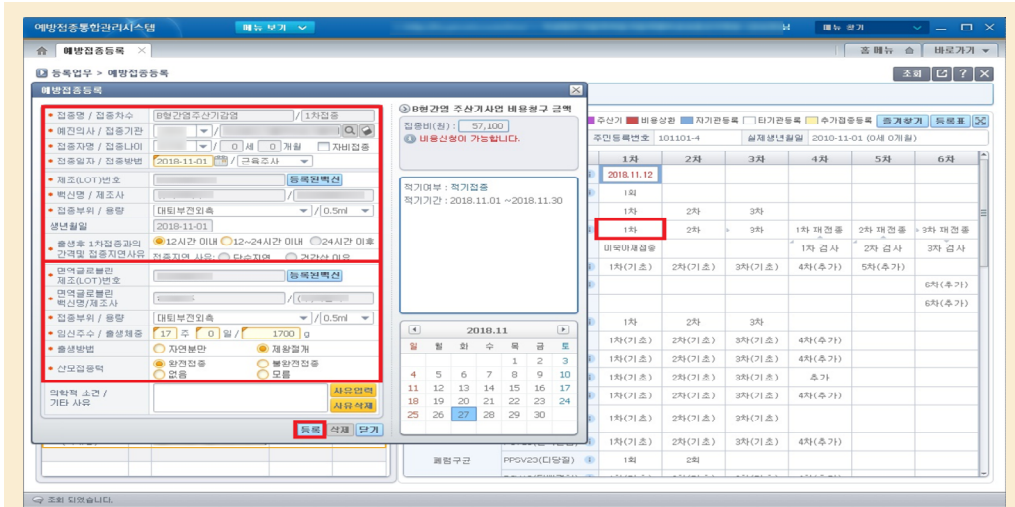


» (쿠폰대상자 전환 승인신청) 2013년 이전 사업에 참여한 쿠폰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업참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후 관할 보건소로 대상자 전환승인 요청 후 접종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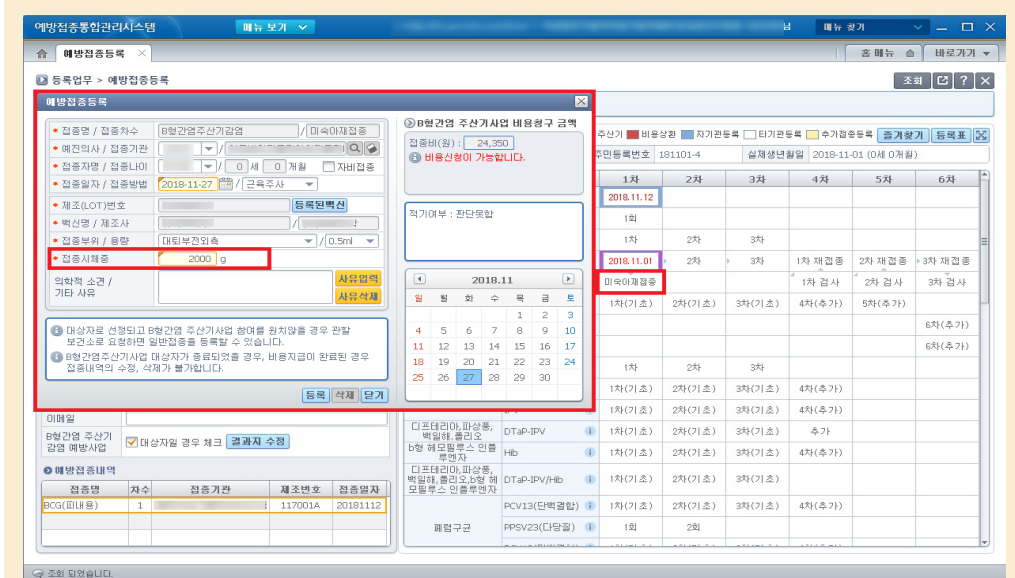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등록

» 출생 시 면역글로불린(HBIG) 및 B형간염 1차 접종



〈그림 35.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 등록 화면〉

» (미숙아 접종) 미숙아 재접종 등록 시에는 피접종자의 재접종 시 체중 추가 입력  
※ 37주 미만이면서 동시에 출생 몸무게가 2.0Kg 미만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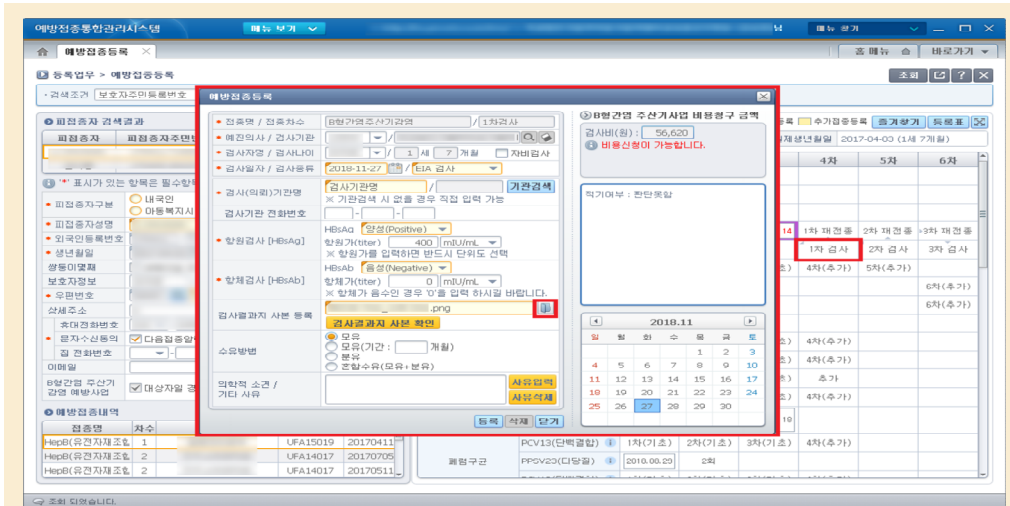


〈그림 36. 미숙아 재접종 등록 화면〉



»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등록 및 결과지 업로드

※ 2019년부터는 검사결과지 업로드 필수,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 표기



〈그림 37. 항원·항체 검사결과 등록 화면〉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종료 시

- 예방처치일정이 종료되면 예방접종등록화면 일정표가 한 줄로 변경됩니다.
- 검사결과를 잘못 등록한 경우는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로 연락하여 검사결과 삭제 요청 후 재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3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종료 화면〉

## 5 |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방법(전자계약)

-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승인 후 ‘성인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계약서류를 신청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참조
- » ① 교육수료정보, ② 통장사본, ③ 참여확인증<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등록  
 ※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계약서류는 보건소에서 승인 시 계약유효

**1. 기관정보**

의료기관코드: [입력] 대표자성명: [입력]  
 사업자번호: [입력] 대표자성명: [입력]  
 전화번호: [입력] 팩스번호: [입력]  
 이메일: [입력]  
 우편번호/상세주소: [입력]  
 전담보건소: [입력]  
 중병구분: [입력] 의료시스템: [입력]  
 예진의사명: [입력] 집중자명: [입력]  
 기관인증서: 등록일 [입력] 유효기간: [입력]

**2.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요약 정보**

위탁 계약일: [입력] 승인 완료 [입력] 위탁 경신일: [입력]

위탁 계약서: 계약서 경신 [입력] 계약서 확인 [입력]  
 전체 계약 해지 신청서 등록 [입력]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입력]

**3.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상세 정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참여  확인증 승인일: [입력]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대상정보:  
 BCG(국내)  B형간염  DTaP  Td  
 Tdap  폴리오  DTaP-IPV  Hib  
 DTaP-IPV/Hib  폐렴구균 (PCV10)  폐렴구균 (PCV13)  폐렴구균 (PPSV23)  
 MMR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백신 (매도세포 유래)  
 일본뇌염 (생백신)  인플루엔자 (상후 6개월~만 13세)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참여  확인증 승인일: [입력]  
 •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참여  확인증 승인일: [입력]  
 시행 항목:  어르신 인플  임신부 인플  어르신 폐렴  
 • B형간염 주사기감염 예방사업:  사업참여  확인증 승인일: [입력]  
 시행 항목:  연역글로불린(IgG)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

**4.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상세 정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HPV 국가예방접종: **성인 국가예방접종** B형간염 주사기감염  
 통장사본 등록: 이미지파일(JPG, GIF, PNG)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선택]  
 등록상태: **승인 완료** 등록정보: [입력]  
 경신: [입력] 통장사본 확인 [입력] 삭제 [입력]  
 계약정보: [입력]

**5. 교육 수료 정보**

구분 과장명 수료번호 수료자명 수료일자 수료확인

공통	[공통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				수료
인플 기본	[기본교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				수료
인플 보수	[보수교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				수료
인플 (임신부 2019)	[기본교육] 임신부 인플후연자 3				거간완료
어르신 폐렴구균	[기본교육] 어르신 폐렴구균(PP				수료

**6. 성인 국가예방접종 확인증 정보**

등록상태: **[승인] 승인 대기** 등록정보: [입력]  
 등록: 확인증 등록 [입력] 해지 신청 [입력] 시행확인증 확인 [입력] 삭제 [입력]



## 🔍 접종 대상자 인적 확인

-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 2 피접종자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며, 인적정보가 없는 경우 인적을 신규 등록합니다.
- 3 조회된 인적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폐렴구균(PPSV23, PCV13) 과거 접종력 확인 후, PPSV23 접종차수 클릭합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Integrated Vaccination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메뉴보기' (Menu View) and '1:59:54' (Time).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1** (Red dashed box): The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Registration Work > Vaccination Registration) menu path is highlighted.
- 2** (Red dashed box): The '조회' (Search) button in the search form is highlighted.
- 3** (Red dashed box): The '확인' (Check) button in the search form is highlighted.

The search form includes fields for '검색조건' (Search Criteria),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Vaccination Recipient'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Vaccination Recipient'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search results table shows vaccination records for '폐렴구균' (Pneumococcus) with columns for '관여병명' (Associated Disease), '백신명' (Vaccine Name), and '1차' through '6차' (1st through 6th doses). The table includes rows for 'DTaP-IPV/Hb', 'DTaP-IPV+HepB+Hb', 'PCV13(단백결합)', 'PCV10(단백결합)', 'PCV7(단백결합)', and 'PPSV23(다당질)'. The 'PPSV23(다당질)' row is highlighted with a red dashed box and a circled '4', indicating the step to click on the vaccination record.

## 📍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및 비용상환 신청 방법

- ❶ PPSV23 접종차수 클릭하면 팝업창 우측 상단에 PPSV23 접종 대상자 및 백신 잔량을 확인합니다.
  - ※ 접종대상자가 아니면, '접종대상자 아님' 표시(과거 접종력과 접종간격 고려)
  - ※ 백신잔량이 '0' 은 비용상환 신청 불가하며, 백신추가입고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❷ PPSV23 접종 후, 예방접종 정보(백신정보, 접종일자, 접종방법, 예진의사 등)를 입력합니다.
- ❸ '비용상환 신청'에서 비용을 확인 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을 완료합니다.
- ❹ 실시기준에 준한 접종은 비용상환 신청하면, 접종일자가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Integrated Vaccination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main window is titled '예방접종등록' (Vaccination Registration). It features a form for entering vaccination details and a table for vaccination records.

Key elements highlighted in the image:

- 1:** Vaccine name and dosage: PPSV23(다당질) / 1, with a note for '예방신 유행구균(PPSV23) 백신잔량 - 백신 잔량: 6 dose'.
- 2:** Vaccine lot number (제조(LOT)번호).
- 3:** Cost calculation fields showing '0 + 19,420 + 0 = 19,420'.
- 4:** The '등록' (Register) button.
- 5:** A date '2022.01.18' in the vaccination record table, highlighted in red, indicating a vaccination that meets the criteria for cost reimbur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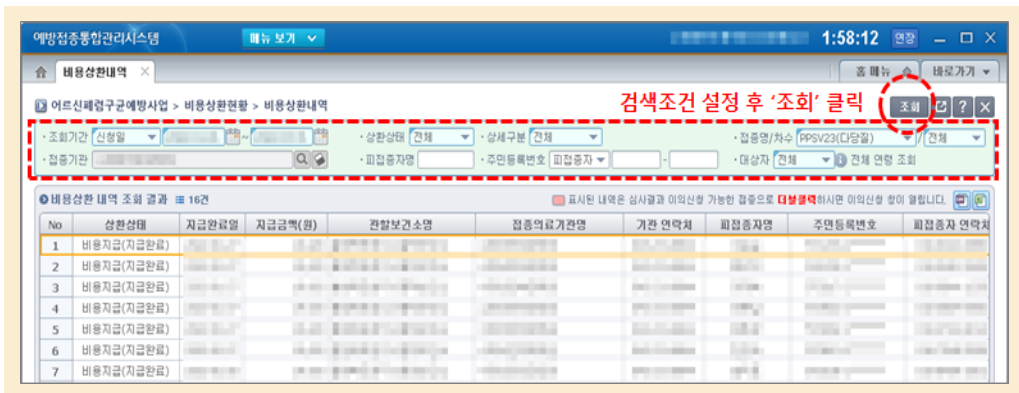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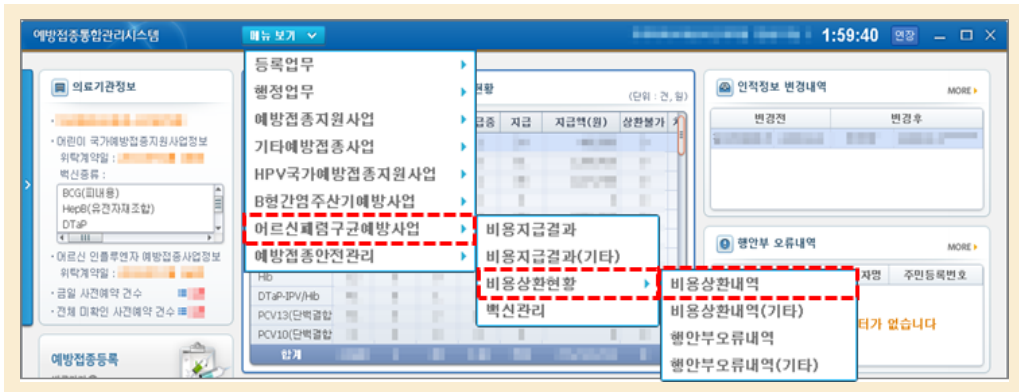
The table on the right shows vaccination records with columns for '1차' through '6차' (1st to 6th dose). The record for '2022.01.18' shows '2회' (2nd dose) and is highlighted in red.



## 🔍 비용상환 신청 내역 확인 방법

» '비용상환내역'에서 상환 신청내역의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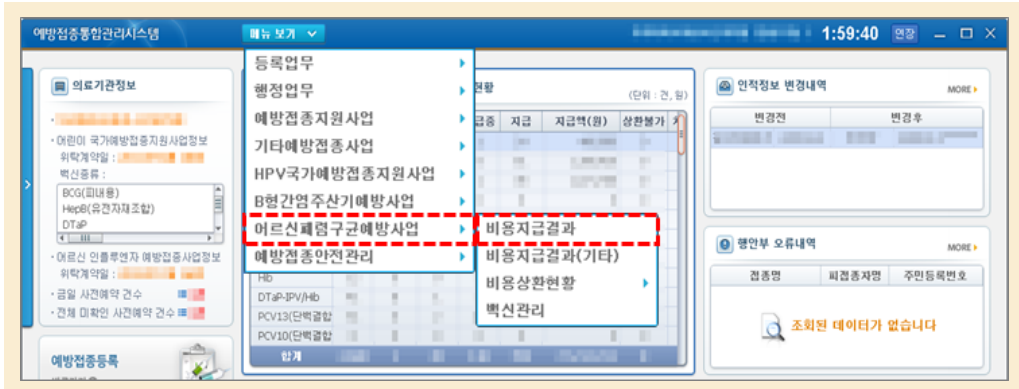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상단 메뉴보기 → 어르신페렴구균예방접종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



## 🔍 비용지급 결과 확인 방법

- 1 '메뉴보기 → 어르신페렴구균예방접종사업 → 비용지급결과'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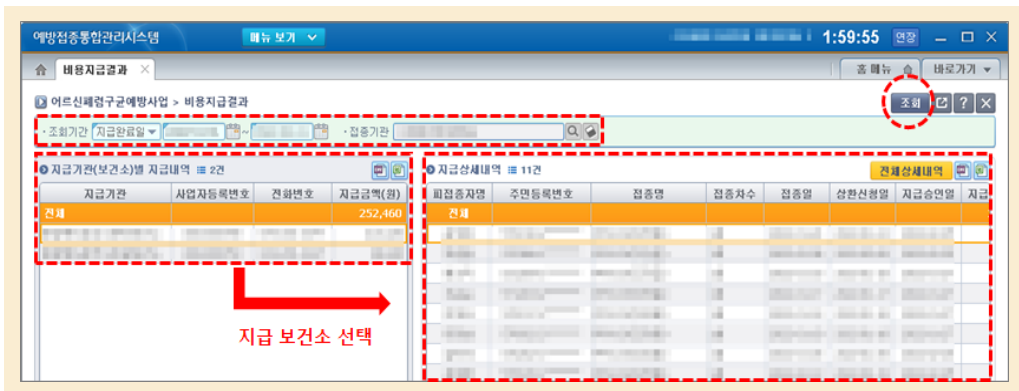
※ 지급승인일: 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에서 비용지급을 완료한 날짜



- 2 '비용지급결과내역'에서 화면좌측의 지급보건소를 선택하면 보건소별 지급상세 내역이 확인 가능하며,

- '전체상세내역'을 선택하면 설정된 기간내 지급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비용상환 청구





## 🔍 PPSV23 백신 입·출고 확인 방법

-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를 선택합니다.
- 2 의료기관 정보 우측 하단 '백신별 입출고 정보'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의 입고량, 사용량, 잔량 확인 가능하며, '보기'를 클릭하면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입·출고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Medical Institution Information' page in the PPSV23 management system. A red dashed box highlights the 'View' button in the 'Vaccine Entry/Exit Information' section. A red arrow points from this button to a detailed table of vaccine entry/exit records.

No	등록시간	입출고 수량	등록자	배고
2	2020.11.23 13:10:33	입 20		40
1	2020.06.29 10:08:01	입 20		20

사업 구분	백신명	총 입고량 (A)	이력	사용량 (B)	잔량 (A-B)
상인	PPSV23(다당)	40	보기	40	0



### (참고) 과거 접종력에 따른 PPSV23 접종대상 판단 예시

- ※ (65세 이상) 접종시행 연도 - 출생연도 = 65세    예) 2022년도 - 1957년생 = 65세
- ※ (65세 미만) 접종시행 연도 - 출생연도 = 63세    예) 2020년도 - 1957년생 = 63세

#### ■ 접종대상자임

1)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 되는 경우

**1.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 된 시점**  
**2. 접종대상자 임**

2)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이고,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한 경우

**1.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 이고,**  
**2.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가 경과한 경우**  
**3. 접종대상자임**

3)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하고 5년 경과와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 65세 이상 되는 경우

**1.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 되는 연령**  
**2.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이 경과된 경우**  
**3. 접종대상자임**



■ 접종대상자 아님(접종완료)

1)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56년)  
 ○ 과거 폐렴구균 접종  
 - PPSV23(2019. 7. 21.. 65세)  
 ○ 접종방문일(2020. 5. 27.)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PCV13(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10(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7(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PSV23(다당질)	1회	2회				

**1. 과거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력이 있는 경우**  
**2. 접종대상자 아님(접종완료자)**

■ 접종대상자 아님(추후접종)

1)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56년)  
 ○ 과거 폐렴구균 접종  
 - PPSV23(2019. 1. 1.. 64세)  
 ○ 접종방문일(2020. 5. 27.)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PCV13(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10(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7(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PSV23(다당질)	1회	2회				

**1.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일로부터 다음 접종간격 5년 미도래**  
**2. 접종대상자 아님(추후접종)**  
 -> 65세 미만 연령에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미도래로 2024. 1. 1. 이후 접종가능

2)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어르신이고,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56년)  
 ○ 과거 폐렴구균 접종  
 - PCV13(2020. 5. 1.)  
 ○ 접종방문일(2020. 5. 27.)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PCV13(단백결합)	1회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10(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7(단백결합)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PSV23(다당질)	1회	2회				

**1.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이고,**  
**2. 과거 PCV13 접종력이 1년(최소 8주)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접종대상자는 아님(추후접종)**

## 6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

### 🔍 회원가입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회원가입 및 학습자 권한 신청

1. 신규 가입시: 사용자 가입(개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2. 기존 로그인시: 좌측 '권한/부가정보' 버튼 클릭 →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043-719-8272, 8282(HelpDesk)

※ 회원 가입 시 입력한 학습자 정보로 수료증이 발급되니 소속기관명, 성명, 직군, 면허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필요

※ 수료증의 소속기관명은 교육 수강 당시의 소속기관명으로 기재되며, 교육 수강 이후 수정 불가함

※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통해 소속기관명 수정

### 🔍 수강 신청

① 학습자 권한 승인 이후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구글 크롬(Chrome) 및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네이버 웨일 웹 브라우저 사용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of the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ducation System) website. The top screenshot is the homepage, featuring a navigation bar with 'HOME | 로그인', '과정안내', '나의 강의실', '수료증출력', and '자료실'. Below the navigation are four main menu items: '과정안내', '나의 강의실', '수료증출력', and '자료실'. A '로그인 후 사용하세요.' (Log in to use) button is visible.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인증서 입력 (전자서명)' (Certificate Input (Electronic Signature)) page. It includes a table for user registration with columns for '구분', '사용자', '암호', and '발급자'. Below the table are buttons for '인증서 찾기', '인증서 발급', and '인증서 삭제'. A '공동인증서 로그인' (Common Certificate Login) section contains instruc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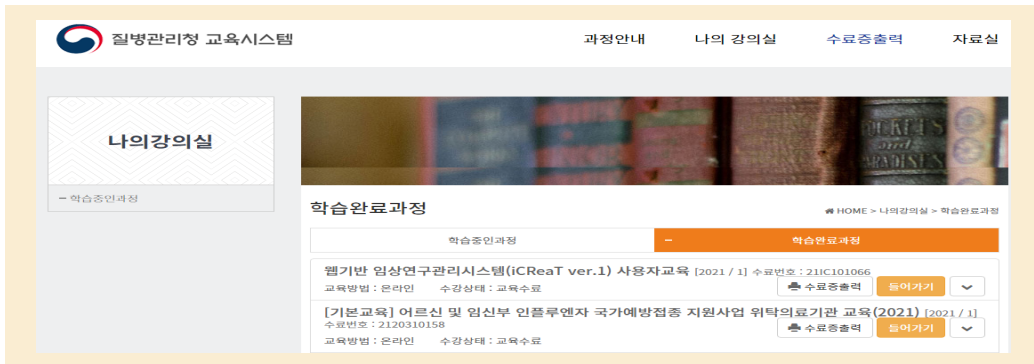
- ② 과정안내 클릭 후 가운데 보이는 소속명 클릭 → 예방접종관리과 선택 →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명을 검색하여 '수강신청'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정보(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따라 수강 가능한 교육과정 표시



- ③ '나의 강의실 입장' 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 수강 도중 강의실 창을 닫으면 정상적으로 수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  
 ※ 수강 중 30분 이상 차시나 챕터 이동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 🔍 수료 확인

- » 수강 종료 후 화면 상단의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수료 확인 가능합니다.



## 🔍 문의하기

- »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Q&A 게시판(묻고 답하기)에 문의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 교육시스템 권한 승인 및 이용관련 문의: 043-719-8398~8399, 8386, 8382



## [별첨자료]

### Ⅲ.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1. 아나필락시스 정의	155
2.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155





## 1 | 아나필락시스 정의

### 📌 개요

- »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물질(자극)에 노출 후 즉시 또는 수십 분내의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며, 피부반응(발진, 가려움증, 입술과 입안 부종), 호흡기계 증상(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심혈관계 증상(저혈압, 실신, 가슴통증, 빠른 맥박), 그리고 소화기계 증상(복통,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흡곤란, 저혈압,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 2 |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 📌 신속 대응

- 1) 상황평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인은 예방접종 후 20~30분간 대기하는 동안 백신 접종부위의 부종, 발적 등 발생여부 및 전신 과민반응으로 진행되는지 관찰한다.
- 2) 도움요청: 전신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내 신속히 전파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담당의사를 호출한다.
- 3) 응급처치: 담당의사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뒤 간호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도확보,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투여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에 필요한 1차 약제이고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주며, 적절한 심박출량을 유지시킴
  - ※ 에피네프린 투여 후에도 증상 및 혈압 조절이 안되는 경우 10~20분 간격으로 3회까지 투여가 가능하며, 항히스타민은 발진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어 2차 약제로 사용 가능
- 4) 응급의료기관 후송: 응급처치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 담당의사 주도하에 진행하고 구급차가 도착하면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센터에 후송한다.

## 📍 사전 준비 사항

### 1) 응급처치 장비 및 점검사항

- 가. 산소공급을 위한 산소탱크의 산소 충전 상태를 확인한다.
- 나. 산소마스크, 백마스크 전문기도기는 소아용/성인용을 구분하여 준비한다.
- 다.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연령별 용량을 확인한다.

**〈표 1. 아나필락시스 치료제(체중, 연령별 용량)〉**

연령대	체중	에피네프린 근주 용량
1-6개월	4-7kg	0.05mg(0.05mL)
7-18개월	7-11kg	0.1mg(0.1mL)
19-36개월	11-14kg	0.15mg(0.15mL)
37-48개월	14-17kg	
49-59개월	17-19kg	0.2mg(0.2mL)
5-7세	19-23kg	
8-10세	23-35kg	0.3mg(0.3mL)
11-12세	35-45kg	0.4mg(0.4mL)
13세 이상, 성인	45kg 이상	0.5mg(0.5mL)

※ 에피네프린은 대퇴부 허벅지의 중간 전외측에 근육주사로 투여함

※ 1:1,000(1mg/mL) 희석용액으로 주사제 기준으로 성인에서 0.3-0.5mL(0.3-0.5mg), 소아에서 1회 0.01mg/kg으로 1회 최대용량은 소아 0.3mg, 성인 0.5mg임

- 2)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2개 이상 지정(전화번호, 위치, 후송거리 등 파악)한다.
- 3) 응급처치 대응팀(의사, 간호사, 보조원)을 구성하며, 담당자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역 할
예진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상태 평가</li> <li>· 기도, 호흡 확보·유지, 순환기 및 의식상태 파악</li> <li>· 약제 투여 필요성 판단 및 지시</li> <li>·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li> <li>· 응급의료센터(응급실) 후송 시 동행</li> </ul>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 전파 및 도움 요청, 약제 준비 및 투여</li> <li>·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li> <li>· 응급간호관리, 응급의료센터(응급실) 후송 시 동행(필요시)</li> </ul>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내 상황 전파, 119 신고 및 구급차 호출</li> <li>·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상황 알림, 후송 보조</li> </ul>
보건소 구급차 운전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후송</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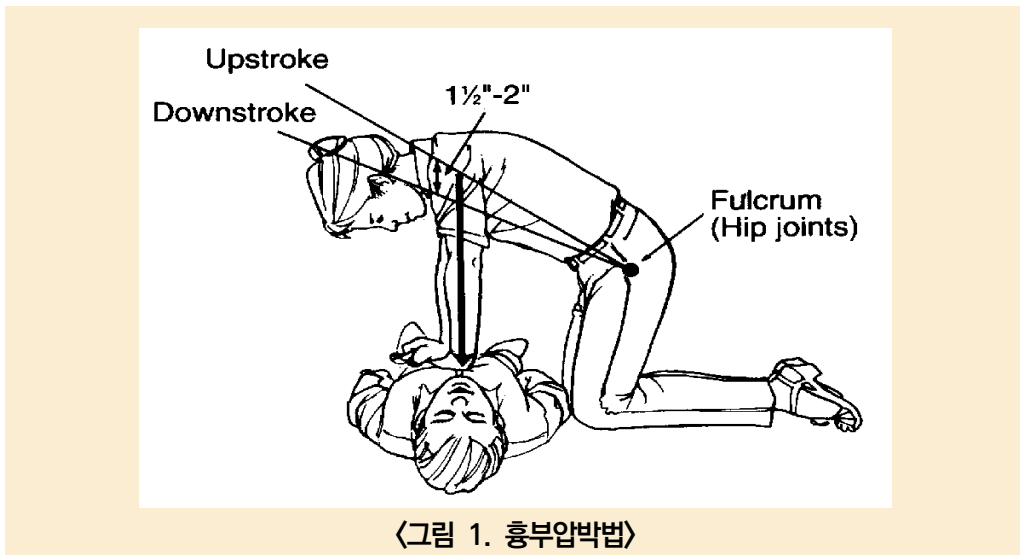
## 🔍 심폐소생술(필요시)

»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의료인의 경우 맥박 확인(10초 이내): 성인 및 소아는 경동맥 또는 대퇴동맥으로 확인하고 영아(12개월 미만)의 경우 목이 짧고 굵으므로 위팔 동맥에서 확인

» 성인 심폐소생술 순서(C-A-B)

- 1) 흉부압박(Compressions): 손을 흉부압박 위치(양쪽 젖꼭지 연결선과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 놓고, 30회 흉부압박을 시행(분당 100회 속도, 4-5cm 깊이)
- 2) 기도열기(Airway):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그림 1. 흉부압박법〉

»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순서(C-A-B)

- 1) 흉부압박(Compressions): 손을 흉부압박 위치의 아래를 압박 위치에 놓고, 30회 흉부압박 시행(분당 100회 속도, 4cm 깊이)

가. 소아: 한 손을 사용하여 손바닥 끝부분으로 압박

나. 영아: 한 손을 사용해 두 손가락으로 압박 또는 두 손을 사용해 엄지손가락으로 압박



2) 기도열기(Airway):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영아/신생아의 경우 기도를 수평으로 유지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 흉부 압박 방법

연령	압박/호흡 비율	
	1인 구조자	2인 구조자
신생아	3:1	3:1
영아(<1세)	30:2	15:2
소아	30:2	15:2
성인	30:2	30:2

※ 참고 문헌: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 발간)

## [부 록]

### I. 관련 법령

1.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등의 관련 근거(약칭「감염병예방법」)	161
2.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170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173
4.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질병관리청고시)	181



##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등의 관련 법적 근거(약칭「감염병예방법」)

### 🔍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①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 필수 및 임시에방접종 업무의 위탁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에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에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를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필수예방접종 다음접종 사전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예방접종기록 보고 및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성명
  -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2. 예방접종의 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예방접종 명칭
  - 나. 예방접종 차수
  - 다. 예방접종 연월일
  - 라.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 마. 예진 의사 및 접종 의사의 성명

**제21조의6(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열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고 및 실시기준과 방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 🔍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애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이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가. 사망진단서
  - 나. 부검소견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5

**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의료안전예방국장으로서 한다.

1. 의료안전예방국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 상황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황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2023-16호, 2023. 1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은 p. 93 참조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은 p. 95 참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시행 2023. 11. 1.]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2023. 11. 1., 일부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기획과), 043-913-236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7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2. 법 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필수·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이에 대해 교육·홍보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는 예방접종 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함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주의사항 등)** ①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
2. 제1호의 판단 결과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을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아니 됨. 단,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를 금기사항으로 잘못 적용하여 접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주의



②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③ 보건 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1.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접종명, 접종차수, 백신제조번호, 접종일자, 접종방법 등 접종내역

④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며, 접종 후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한다.

⑤ 보건 의료기관은 백신 구입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 제공자(공급회사 또는 국가기관), 백신제조번호, 유효기간, 구입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전까지 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준용)** 이 고시는 별표 1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3-5호, 2023. 3.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4호, 2023. 09.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 1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 ① 결핵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을 권장한다.
- 백신종류
  - BCG(피내용)

### ② B형간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과거 B형간염의 감염증거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 중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우선 접종권장 대상으로 한다.
    - 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 ②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는 환자
    - ③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 ④ 주사용 약물 중독자
    - ⑤ 의료기관 종사자
    - ⑥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 ⑦ 성매개질환의 노출 위험이 큰 집단
- 표준접종시기
  - 생후 0, 1, 6개월에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 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 6개월에 실시한다.

###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무접종 해야 하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호조무사)
  - 표준접종시기
    - 모든 영유아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접종일정

구 분		표준접종시기	접 종 간 격	백신
기초 접종	1차	생후 2개월	최소한 생후 6주 이후	DTaP
	2차	생후 4개월	1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3차	생후 6개월	2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추가 접종	4차	생후 15~18개월	3차접종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후	DTaP
	5차	4~6세	-	DTaP
	6차	11~12세	-	Tdap 혹은 Td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 해당시설 근무 2주전까지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1회 접종한다.

### ④ 폴리오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단, 3차 접종은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가능)
  - 4~6세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⑥ 일본뇌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생후 24~35개월(기초 1차 접종 1년 후), 6세, 12세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⑦ 장티푸스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②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 ③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 Vi polysaccharide 백신은 2세 이상에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경구용 생백신은 5세 이상에서 격일로 3회 투여할 것을 권장한다.
  -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 ⑧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병자, 면역저하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64세 성인
        -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표준접종시기
  -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 ⑨ 신증후군출혈열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⑩ 수두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⑫ 폐렴구균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시기
  - 영유아의 경우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⑬ A형간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 해당 연도에 12세 달하거나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12~14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15~26세 여성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2가 또는 4가)으로 3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첫 접종 시기	접종 횟수	백신	차수	다음 접종간격
12~14세	2회	HPV2 HPV4	1차	6-12개월
			2차	-
15~25세	3회	HPV2	1차	1개월
			2차	5개월
			3차	-
15~26세	3회	HPV4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

⑮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사람-소 재배열백신은 생후 2, 4, 6개월,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2, 4개월에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는 (p. 98 참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4호, 2020. 9. 14., 제정.]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6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4호, 2020.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록]

### Ⅱ. 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1. 백신 접종기관 준비사항	185
2. 백신 관리 담당자 지정	186
3. 백신 입고 및 재고 관리	187
4. 백신 보관 및 관리 계획 수립	189
5.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 관리	190
6. 백신 보관 온도 관리	193
7. 백신 배치 및 정리	196
8. 백신 보관 장비 유지관리	198
9. 백신 보관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200
10.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201
11. 백신 폐기	204
12. 백신 보관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204
13. 기타	206





\*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2021.12.) 중 일부 발췌

## 1 | 백신 접종기관 준비사항

» 백신 접종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은 백신 보관·관리 및 접종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백신 보관·관리·접종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백신 관리담당자)과 예비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및 역할 분담

나. 지역 보건당국의 연락처

다. 백신 제조(수입)사 및 공급업체 연락처

라. 백신 보관 장비의 유지, 보수 담당 회사 연락처

마. 백신 냉장고에 사용하는 온도계의 회사 연락처

바. 백신과 용해제의 보관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

사. 백신 보관 온도에 대한 내용

아. 백신 보관 냉장고에서 백신의 위치

자. 백신의 보관·관리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안

\* 사고발생 시 보고절차 등

차. 백신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

카. 백신 이송 및 인수 절차(제조·수입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내용

타. 백신별 접종 방법에 대한 내용

파. 백신 접종 후 조치 및 주사기 등의 접종과 관련된 물품의 관리에 대한 내용

하. 사용 백신에 대한 설명서

## 2 | 백신 관리 담당자 지정

- » 접종기관에서는 백신의 재고관리, 현황, 보관 등 백신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백신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 보통 1명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관리담당자의 부재 시를 대비한 대체(예비)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모든 백신이 올바르게 보관되고 취급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 백신 관리담당자와 예비담당자는 평상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백신 관리담당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신 주문, 백신 입고 시 검수 및 관리
  - 나. 백신 보관 장비 내부 정리
  - 다. 백신 보관 장비 온도설정
  - 라. 백신 보관 장비의 1일 최저/최고 온도 확인 및 기록·보관
  - 마.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변화 관리를 위하여 최소 주 1회 온도 기록지 검토 및 분석 시행
  - 바. 백신 보관 장비 문의 닫힘 상태 확인(냉장고 문의 패킹 확인)
    - 문에 대한 추가 고정장치 설치 권장(자물쇠, U자형 고리 등)
  - 사. 유효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하는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주 1회 재고 확인 및 재배치
  - 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및 침부용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폐기
  - 자.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유지에 이상이 있을 시 비상대응
  - 차. 백신 운반 시 적정온도 유지 및 백신 파손 방지 등 관리·감독
  - 카. 국가예방접종 업무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 관리(연 2회, [참고1])
    - \* 국가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상세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타. 백신 보관 장비의 성능 적정성 확인 등 유지 관리

### 3 | 백신 입고 및 재고 관리

- » 백신 및 첨부된 희석액(첨부용제, 용해제)의 입고는 백신 관리 담당자 또는 예비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 백신 입고 시 백신 관리담당자 및 예비담당자에게 알리도록 모든 직원을 미리 교육해야하며 백신 관리담당자 또는 예비담당자는 백신 수령 즉시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 보관장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 » 백신 입고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가. 백신이 물에 젖었거나 상표가 훼손된 경우, 백신 병이나 주사기가 균열이 발생한 경우 등 물리적 손상 흔적이 있는지 수송 용기와 내용물 조사
  - 나.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 및 거래명세서 등 내역과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확인
  - 다.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 예정인 백신이 있는지 확인
  - 라. 냉동 건조(동결 건조) 백신의 경우 백신과 첨부용제 수량이 동일하게 입고 되었는지 확인
  - 마. 백신 콜드체인 온도 감지 표시라벨이 있는 백신의 경우 라벨 확인
  - 바. 냉동 백신의 경우 배송날짜를 기준으로 운송 기한 내에 도착하였는지 확인
  - 사. 운송을 위해 사용된 콜드체인 모니터링 장치를 확인하여 운송 중 온도 이탈 등이 있었는지 확인
- » 백신의 적정재고량 유지를 통해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 1회 정기 재고 조사를 통하여 재고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 가. 백신 및 첨부용제의 입고량
  - 나. 백신 및 첨부용제의 사용량, 폐기량, 손상된 수량 등
  - 다. 백신 및 첨부용제의 재고량
  - 라.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백신 및 첨부용제의 수량
  - 마.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백신 및 첨부용제의 수량
  - 바. 주문한 백신 및 첨부용제의 수량 및 반품 가능한 백신 및 첨부용제의 수량
  - 사. 주문해야 할 백신 및 첨부용제의 수량

- » 백신 관리담당자 및 예비담당자는 정기적인 재고조사를 통하여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재배치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재고조사 시 백신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과 첨부용제는 접종대상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즉시 보관 장비에서 제거한 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폐기한다.
  -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백신과 첨부용제를 보관 장비 앞쪽으로 옮겨 배치하고, '우선 사용' 표시를 하여 먼저 사용한다.
  - 백신 입고 시 및 주 1회 이상 백신 및 첨부용제 재고 위치를 재배치한다.
  
- » 원활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되 백신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백신을 주문하고 보관해야 한다.
  - 최근 접종건 수, 예상 수요, 보관 용량, 현재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한다.
  - 소량의 백신을 빈번하게 주문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문 시 백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한다.
  - 백신은 적정 수량을 보유(약 2~3개월 사용량)할 수 있도록 주문 및 재고 관리한다.
  
- »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참고)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

- 백신 판매자(제조업자·수입자·의약품도매상 및 약국개설자)는 백신 수송에 있어서 유통경로와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수송자로 하여금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백신을 수송하도록 하고 있다.
  - 의료기관 또한 백신 구입 시 제조연월일,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를 확인하고 수령하여야 하며 생물학적제제등 출하증명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4 백신 보관 및 관리 계획 수립

- ▶ 일상 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백신 보관 및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백신과 용해제의 도착일시, 수량, 인수자 및 점검자의 이름, 도착 시의 백신과 용해제의 상태(도착 당시 백신을 보관한 용기의 온도, 백신의 손상 등), 인수한 백신의 이름, 각각의 백신의 회사 이름, 백신의 종류(1회용 백신, 다인용 백신, 프리필드 백신), 백신 제조번호(lot number), 각각 제조번호에 따른 유효기간, 인수한 백신의 수, 사용, 폐기, 손상된 백신의 수량과 남은 수량이 포함되도록 한다.
- ▶ 백신보관 냉장고의 오작동, 정전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백신을 회수하여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보관장비에 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백신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백신 관리담당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백신 보관 및 관리 요령을 간략하게 요약한 표준업무절차 지침을 작성하여 백신 보관 장비 근처에 항상 비치한다.
  - 표준업무절차 지침은「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참고3을 예시로 참고하여 작성한다.
    -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http://www.kdca.go.kr))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검색
- ▶ 백신 보관 장비의 고장,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여분의 보조 보관 장비 등을 구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 여분의 보관 장비 등이 구비되어있지 않을 경우 백신 이송을 위한 아이스박스, 냉매, 비닐 완충제(예: 버블랩, 스티로폼 알갱이), 여분의 온도계를 준비한다.
  - 또한, 정전 시를 대비하여 발전기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를 구비할 것을 권장한다.
- ▶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건물을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있어야 하며, 백신 관리담당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 비상 상황 시 백신 보관 및 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백신 보관장비 근처에 항상 비치한다.

## 5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 관리

-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냉동고)는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비이므로 올바르게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 비상시를 대비하여 백신 보관 장비 구입 시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보관하고, 모델명, 구입일자, 정기 유지관리 일자(예, 세척 등), 수리 또는 정비일자, 업체명과 연락처를 보관하여야 한다.

###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의 선택

- » 백신 및 생물학적제제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전용 냉장/냉동고 (그림1)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백신 전용 냉장/냉동고는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그림 1] 백신 전용 냉장고 (예시)

- 디지털 온도제어, 자동 온도 기록, 온도 이탈 시 알람 기능, 냉장고/냉동고 문 잠금 경고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강력한 팬(Fan) 또는 여러 개의 통풍구가 있는 팬으로 공기 순환을 하여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온도 걱정 범위 이탈 시 적정온도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 백신 보관 온도(일반적으로 2~8℃, 평균 5℃ 유지)를 항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연중 백신 재고가 가장 많은 경우에도 백신을 정리하여 보관할 수 있고, 온도 안정을 위한 물병, 아이스팩 등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냉장과 냉동 기능이 분리된 일반 냉장/냉동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냉장/냉동이 일체형으로 문이 하나인 기숙사형 냉장고[그림2]는 백신을 냉동시킬 우려가 있어 백신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림 2] 기숙사형 냉장고 (예시)

- » 국내에서 유통되는 백신 냉장고 혹은 의료 전용 냉장고 중에는 냉장고 문이 유리로 된 것이 있는데 수두백신(Varicella),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easles, mumps, and rubella, MMR), 로타바이러스 백신(Rotavirus) 등 약독화 생백신은 일광에 노출되면 백신역가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의 설치

- » 보관 장비 외부 주변 공기순환이 잘 되어야 하므로 백신 보관 장비는 아래의 설치 조건을 권장한다.
  - 가. 환기가 잘 되는 방
  - 나. 직사광선, 외부의 온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문 부근은 피해야 함
  - 다. 백신 보관 장비의 주변과 윗부분의 여유 공간 확보
  - 라. 백신 보관 장비와 벽 사이는 최소 10 cm 이상의 여유 공간
  - 마. 모터 부분을 막는 덮개 등이 없을 것
  - 바. 바닥과 백신 보관 장비 밑 부분은 최소 2.5 ~ 5cm 간격을 두고 수평을 유지하며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 사. 냉장/냉동고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면서 장비 본체와 똑바로 맞도록 설치
  - 아. 대부분의 백신 보관 장비는 20℃~25℃ 사이의 실내온도에서 가장 잘 작동 하므로 실내온도를 확인하여 설치
  
- »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한 보관 장비의 경우 냉장고는 2일에서 7일, 냉동고는 2일에서 3일 관찰하며 온도 안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 백신 보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2일에서 7일 동안 매일 최저/최고 온도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온도를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 매일 최소 두 번 온도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 6 백신 보관 온도 관리

- » 백신 보관 장치의 온도는 백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온도를 준수하며, 일반적으로 냉장고는 2℃~8℃(평균 5℃), 냉동고는 -50℃~-15℃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백신별 보관 온도에 관한 사항은 백신설명서를 참조한다.

### 🔍 온도관리

- » 백신의 올바른 취급과 보관을 위하여 온도계는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품목으로, 냉동고/냉장고 각각 온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올바른 온도에서 백신을 보관하기 위하여, 백신 보관 장비에 자동온도기록 장치(Digital Data Logger; DDL)를 사용한다.
  - 자동온도기록장치는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이탈 정보를 포함한 장비의 온도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 제공하는 장치이다.
  - 자동온도기록장치는 일정 간격마다 온도 변화를 자동 기록하고, 최고/최저온도, 설정온도 범위 이탈시간 정보 및 경보 알람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설정온도에서 이탈하는 즉시 설정된 담당자에게 알람이 갈 수 있어야 하며 백신 관리 담당자는 알람이 정확히 울리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그림 3] 자동온도기록장치 (예시)

- »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없을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온도를 기록하는 디지털 온도 기록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디지털 온도 기록기는 최고/최저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한다.
  - 그 외 일반 온도계를 이용할 경우,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는 최소 매일 2회 점검(오전 1회, 업무 종료 전/후 1회)하고, 보관 장치의 문에 온도 기록서를 비치하여, 일 2회의 온도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 » 연속 자동 온도 기록 모니터링 장치 또는 디지털 온도 기록기가 있는 냉장고/냉동고를 구비하여 온도 모니터링을 시행하더라도, 해당 장치의 고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매일 2회는 수동 온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 시스템에만 의존하여 장비의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경우에 온도 이탈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 자동온도기록장치 등 온도 모니터링 장치는 백신 보관 장비 및 운송 장비마다 각각 갖춰야 하며,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비하여 여분의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 » 백신 보관 장치 노후화로 온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보관 장치의 필요성을 평가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되었던 백신을 투여한 환자를 파악하고 재접종 시행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온도 기록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 백신 보관 장치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로는 “교정 증명서(Certificate of Traceability and Calibration)”를 갖춘 교정된 온도계를 사용하고 사용 중인 온도계는 제조업체의 제안에 따라 주기적 재교정이 필요하다.
  
- » 백신 보관 장비에서 내부의 온도 측정 위치도 중요하다.
  - 백신을 보관하기 전 온도를 안정화시킨 후 장치 내부의 여러 지점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지점을 파악한 후 백신을 보관한다.
  - 냉장고의 냉점이나 열점이 파악되는 경우 해당 지점에는 백신을 보관하지 않는다.



## 🔍 온도조절

- »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조절은 백신관리담당자 또는 예비담당자만이 수행한다.
  - 타인이 온도설정을 바꾸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고 표시를 붙인다.

“냉장고(혹은 냉동고) 온도 조절 장치를 조정하면 안 됩니다.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리자(담당자 성명, 연락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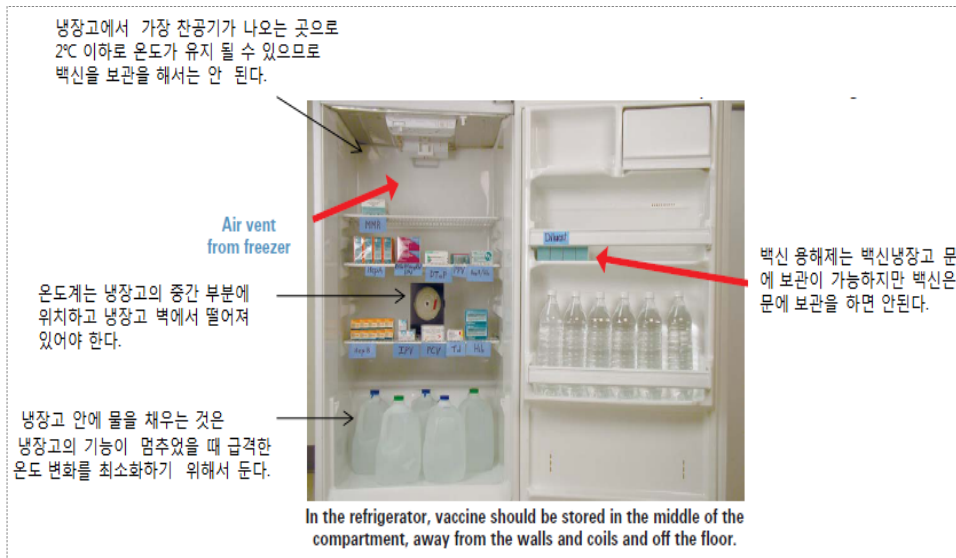
- » 실온 변화에 따라 여름 또는 겨울에 온도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온도계를 조절할 때는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게 되는 날을 피한다.
- » 온도 조절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백신 보관 장비의 플러그가 전원에 꽂혀 있는지 확인
  - 나. 백신 보관 장비 내 온도 점검
  - 다. 온도를 재설정하고 최소 30분간 안정되게 한 후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30분마다 온도 재측정
  - 라. 연속 데이터 기록기(해당하는 경우)에서 얻은 온도 데이터를 점검하여 온도 조절 장치의 재설정이 적절한지 확인
  - 마. 냉장고 문에 도어 개스킷(접합부에 끼워 물이나 가스가 누석하는 것을 방지하는 패킹)에 새는 것이 없는지 확인

## 7 백신 배치 및 정리

- ▶ 백신은 투여 시점까지 최초 포장 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고 동일한 종류의 백신은 가능한 같은 위치에 보관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 보관 장비에 백신을 잘 정리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 용기, 상자, 기타 덮개가 없는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다.
  - 백신을 담은 컨테이너 사이에 공간을 충분히 두어 백신 제품의 혼동을 피하고, 공기 순환을 원활히 하며, 불필요한 빛에 의한 노출로부터 백신을 보호한다.
- ▶ 약독화 생백신 뿐 아니라 일부 불활성화 백신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 백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차광 보관한다.
- ▶ 희석하여 사용하는 백신의 경우 첨부된 희석액(첨부용제) 보관 시 다음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첨부용제는 해당 백신과 함께 운송
  - 나.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보관
  - 다. 해당 백신과 첨부용제를 함께 보관
  - 라. 첨부용제는 동결시키지 않음
  - 마. 첨부용제의 보관 시 라벨을 부착하여 적절하지 않은 첨부용제로 백신을 희석하지 않도록 함
- ▶ 백신 및 첨부용제를 보관할 때 보관 용기 등에 명확히 라벨을 부착한다.
  - 색상 코드(예, 소아용 색상과 성인용 색상 구분)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고, 백신 유형별로 연령대를 구분해 표시할 수 있다.
  - 백신/첨부용제 보관 용기에 라벨을 부착하면, 잘못된 백신을 투여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첨부용제로 백신을 용해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 ▶ 비슷해 보이는 백신을 인접하게 보관하는 경우 백신 오접종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백신은 가능한 인접하게 보관하지 않는다. (예, DTaP, Tdap).



- »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거나, 소아 또는 성인용 조제분을 구분해야 백신도 각기 다른 선반에 보관하는 등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 백신을 올바르게 보관하였는지 확인하고 오접종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그림4])



[그림 4] 백신보관 냉장고에서의 적절한 백신보관 예시

- 백신과 첨부용제는 원래 포장대로 별도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 백신과 첨부용제는 보관 장비의 벽, 천장, 바닥 및 문에서 5~8cm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냉각 환기구 바로 밑, 과일 서랍, 문 선반 등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백신, 첨부용제 및 물병 이외 다른 물품은 백신 보관 장비에 보관하지 않는다.
- 백신을 첨부용제과 일렬로 배치하고 공기가 통할 수 있게 그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여 보관한다.
- 유효기간이 짧은 백신 및 첨부용제를 앞줄에 배치하여 먼저 사용한다.
- 백신 전용 보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관 장비 상단 선반 바닥이나 문 선반에 물병을 넣어 두면 장비 문을 자주 여닫거나 일시적인 정전 발생 시 안정적인 온도유지에 도움이 된다.

- » 백신의 온도 민감도에 따른 백신의 보관 위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냉장고의 냉기 출구에 동결을 피해야하는 백신을 보관하지 않는다.
  - 냉장고 문 부근은 쉽게 상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백신과 첨부용제를 보관하지 않는다.

## 8 백신 보관 장비 유지관리

### 🔍 유지관리의 중요성

- » 백신 보관 장비 및 온도 모니터링 장치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보관 장비에 백신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관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비상 대응 조치해야 한다.

### 🔍 코일 및 모터 청소

- » 보관 장비의 코일 및 모터에 먼지와 때가 끼면 코일의 열전달에 영향을 미쳐 장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관 장비(냉장고/냉동고)의 코일 및 모터에 먼지와 때가 끼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코일과 모터의 먼지, 때의 제거를 위한 청소는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제조업체 설명서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 🔍 냉장고 내부 청소

- » 백신 보관 장비의 내부 청소는 세균과 곰팡이 증식을 막아 백신 접종 전 오염 등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적정온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청소해야 한다.
  - 장시간의 청소로 인해 보관 장비의 내부 온도가 적정 온도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 보관 장비에 백신을 보관하도록 한다.
- » 백신 보관 장비(특히 냉동고) 안에는 얼음과 성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두꺼운 성애 층은 온도유지 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미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동 성애제거 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 자동 성에제거기능이 없을 경우, 성에가 1cm 또는 제조업체의 기준을 초과하면 수동으로 성에를 제거한다. 성에를 제거하는 동안에는 냉동고 온도가 유지되는 보조 보관 장비 등에 백신을 임시보관한다.

» 백신 보관 장비 안에는 얼음과 성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두꺼운 성에 층은 온도유지 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미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동 성에제거 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 자동 성에 제거기능이 없을 경우, 수동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성에를 제거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유지되는 다른 보관장비에 백신을 임시로 보관하도록 한다.

### 물받이 청소

» 냉장/냉동고 하단에 물받이가 있는 경우, 물받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거나 세균,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청소하도록 한다.

## 9 백신 보관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 🔍 전원 공급

- » 적절한 장비를 갖추더라도 전원이 차단되면 백신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백신 보관 장비의 플러그는 벽 콘센트에 직접 연결한다.
  - 백신 보관 장비가 연결된 콘센트에 플러그를 뽑지 말라는 경고 표시를 하여 직원 및 외부작업자 등이 뽑지 않도록 한다.
  - 실수로 플러그가 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잠금 플러그 또는 콘센트 커버를 사용한다.
  - 백신 보관 장비에 연결된 누전차단기에 라벨을 부착하여 건물 등의 전기 관리자가 백신 보관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안전 스위치가 작동하거나 전원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센트에 한 대의 보관 장비 플러그만 연결한다.
  - 차단되거나 꺼질 수 있는 전원 콘센트를 사용할 때에는 특히 유의해야 하며, 리셋(Reset) 버튼이 있을 수 있는 내장 회로 스위치, 벽면 스위치로 활성화할 수 있는 콘센트, 멀티탭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내장회로 스위치나 전원 보호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냉장고 또는 냉동고 제조업체가 정한 최대 전류가 공급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전원 차단에 대비하여 발전기 또는 무정전전원장치를 갖추는 것을 권장한다.

### 🔍 백신 이외의 제품의 보관

- » 식품 및 음료는 백신 보관 냉장고가 아닌 별도의 장치에 보관한다.
  - 식품 및 음료를 함께 보관하면 냉장고 문을 자주 열게 되어 온도 변화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빛에 과다 노출이 될 수 있다.
  - 또한 백신이 분실되거나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백신은 식품 및 음료와 같이 보관하지 않는다.

## 10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 🔍 백신의 유효기한

- » 모든 백신과 첨부용제에는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다.
  - 유효기한은 백신이나 첨부용제의 종류 및 로트마다 다르므로 백신 접종 시 주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 백신 라벨에 연/월/일로 유효기한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의 마지막 시점까지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 🔍 백신 준비

- »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고 오접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백신을 준비하고 접종하기 전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 오염될 가능성 있는 물건과 가능한 멀리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 백신을 준비한다.
  - 백신 접종 준비를 완료한 이후, 백신을 준비하여 오접종을 최소화한다.
  - 백신 접종 전 유효기간 및 접종할 백신이 맞는지 항상 확인한다.
  - 다회 용량 백신은 사용 시 처음 개봉한 일자와 시간을 바이알에 표시한다.

### 🔍 용량별 백신 준비

- » 일회 용량 백신 바이알(Single-dose Vial)의 경우 1회 접종 가능한 양으로 한 명의 접종대상자에 한 번 투여해야 한다.
  - 일회 용량 백신은 미생물 성장을 막는 방부제가 없으므로 남은 백신을 다른 백신과 합치지 않아야 한다.
  - 백신을 투여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 백신을 개봉한다.
  - 보호캡을 제거하면 고무씰에 구멍이 났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호캡을 열기 전에 항상 투여할 백신이 맞는지 확인한다.
  - 보호캡이 없는 일회 용량 백신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폐기해야 한다.

- » 다회 용량 백신 바이알(multi-dose vial)에는 1회 접종량 이상의 백신이 들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성장을 방지하는 방부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호캡에 두 번 이상 바늘을 삽입할 수 있다.
  - 제조업체의 패키지에 표시된 투여량만 바이알에서 빼내야 하며, 최대 용량을 사용한 후 남아 있는 백신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폐기해야 한다.
  - 다회 용량 백신은 패키지에 별도의 사용초과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이알에 적혀있는 유효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사용 시 처음 개봉한 일자와 시간을 바이알에 표시한다.
  - 두 개 이상의 바이알에서 남은 양을 합쳐 접종하지 않는다.
  - 제조업체 충전식 주사기(Manufacturer-Filled Syringes)는 멸균 상태로 제조되므로 밀봉된 상태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제조업체 충전식 주사기는 접종 준비를 완료한 경우에만 주사기 캡을 제거하거나 바늘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제조업체 충전식 주사기는 미생물의 증식을 막는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무균 밀봉설이 해제된 백신은 당일 사용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 🗨️ 백신 혼합 준비

- » 효소화(동결 건조) 백신은 분말 또는 알갱이(pellet) 형태이므로 투여되기 전에 첨부용제와 혼합해야 한다.
  - 첨부용제는 부피와 구성 성분이 다양하므로 백신별로 부피, pH 균형, 화학적 요구사항 등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첨부용제를 사용해야 하며, 첨부용제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지침은 제조업체가 제공한 패키지 문안을 참고한다.
  - 첨부용제는 제조업체가 명시하지 않는 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일부 첨부용제에는 백신 효과를 위한 항원이나 보조제가 들어 있으며, 첨부용제가 멸균수나 식염수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더라도 백신과 함께 공급된 첨부용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백신을 혼합하기 위하여 멸균수나 일반 식염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잘못된 첨부용제로 혼합된 백신은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 잘못 혼합된 백신이 이미 투여된 경우 백신 사고로 간주되므로 백신 사고 점검표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고 재접종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백신과 첨부용제를 혼합하기 전에 항상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백신을 개봉하거나 희석하면 유효기간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제조업체 설명서를 참조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과 첨부용제는 보관 장비에서 즉시 제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예) 피내용 BCG백신: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용제로 용해한 후 냉암소에서 보관하며 4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 🔍 백신의 주사기 추출

- » 주사기 안으로 백신을 추출하면 구분이 어려워 투여하려는 백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이후 투여 직전에 추출한다.
- » 짧은 시간 내에 다수를 접종하는 등 부득이 백신을 미리 추출해야할 경우 추출한 백신이 담긴 주사기는 제조업체의 권장 온도 조건에서 보관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준비한다.
  - 오접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신 종류별로 투여 공간을 분리·지정한다.
  - 진료 현장 또는 예방접종장소에 도착한 이후 추출해야 한다.
  - 일반용 주사기는 보관용으로 부적절하므로 가능한 단 시간내에 추출 및 투여한다.
  - 불필요하게 미리 추출하지 않도록 접종 상황 등을 주시한다.
  - 첨부용제와 혼합된 백신의 경우 접종 준비를 완료한 이후 추출한다. 혼합 후 30분 이내에 추출한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보관 조건 및 유효시간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지침을 참고한다.
  - 주사기에 남아 있는 미리 추출한 백신은 당일 폐기해야 한다.
  - 사전 추출한 혼합백신을 보관용 바이알에 다시 옮겨 담지 않는다.
  - 대량 접종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제조사 충전 주사기를 사용한다.

## 11 백신 폐기

- » 개봉된 백신, 파손된 바이알과 주사기는 반품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절히 폐기해야 하며,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로 반환해서는 안 된다.
- » 사용하지 않은 백신과 첨부용제를 폐기할 시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

## 12 백신 보관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 » 백신 보관 장비의 고장, 정전,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비상시 대응을 위한 보조 보관 장비 준비

- » 주 보관 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보조 보관 장비를 구비하고, 다른 병원 및 보건소 등 대체 보관시설을 마련한다.
- » 여분의 보조 보관 장비 및 대체 보관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백신 보관에 적합한 포장 용기와 휴대용 백신 냉장고/냉동고(전력 공급이 가능한 경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 발전기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 사용이 가능하면 정전 중 백신을 대체 보관 시설로 이송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구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 🔍 보관 장비 작동 멈춤 시 대응

- 가. 즉시 냉장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고장 원인 조사
- 나.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냉장고 온도 확인, 냉장고 멈춘 시간 등을 기록
- 다. 백신 상태를 공급회사와 상의하여 재사용 여부 결정



- 라. 냉장고 온도가 유지되지만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여분의 냉장고 또는 백신 공급업체로 백신을 이송
- 마. 일시적인 정전으로 인한 냉장고의 기능이 정지된 경우에는, 백신 냉장고 문을 열지 말고 온도 측정을 하면서 경과 관찰
- 바. 만약 백신 냉장고 온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면 실내 온도, 멈춘 시간, 다시 전원이 들어왔을 때 냉장고 온도를 기록하며, 권장 온도를 벗어난 경우는 즉시 백신을 보조 보관 장비에 보관하거나 대체 보관시설로 이송
- 사. 백신 임시 보관 시 냉장고 안의 온도, 실내온도, 다시 작동 시까지의 시간, 비상 보관 시 온도 및 시간 등을 기록한 후 백신 제조사와 백신 재사용 가능 여부 결정

### 🔍 보관 장비 작동 멈춤 상황에서의 온도 모니터링

- » 보관 장비 외부에서 온도 모니터링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 보관 장비 문을 열 필요 없이 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가. 정전 또는 고장 즉시 실내 온도(가능한 경우) 및 보관 장비 내부 온도 기록
  - 나. 정전 또는 고장 중 보관 장비 내부의 최저/최고 온도 기록
  - 다. 비상시 계획에 따라 백신 이송 및 대체 보관하여 온도이탈 방지
  - 라. 온도이탈 발생 시 온도이탈 대응 절차를 따름
- » 보관 장비 문을 열지 않고는 장비 내부의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없는 상황, 대체 보관시설 또는 보조 보관 장비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정상 작동될 때까지 기다린 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가. 정전 즉시 실내 온도(가능한 경우) 및 보관 장비 내부 온도 기록
  - 나.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전원이 꺼진 시간과 해당 시간 동안의 최저/최고 온도 기록
  - 다. 장비 내부 온도가 권장 범위를 넘으면 온도이탈 대응 절차를 따름
  - 라. 적정온도 보관이 가능한 다른 보관 장비나 대체 보관시설로 이송할 경우 백신에 “사용 금지”라고 표시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백신 재사용 가능 여부 결정 시까지 다른 백신과 구분

- » 정전 또는 고장 중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보관 장비의 문을 열 수 있다.
  - 가. 전원 공급 또는 정상 작동이 재개되었을 시
  - 나. 다른 보조 보관 장비 보관이나 대체 보관시설로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시

### 🕒 주말/휴일 등 정전, 보관 장비 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온도 이탈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 가. 발견 당시 냉장고의 온도와 시간, 방 안의 온도 등을 기록
- 나. 재사용 될 수 있으므로 “사용 금지” 표시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보조 보관 장비 또는 대체 보관시설로 이송
- 다. 백신 보관 기록을 토대로 백신 공급업체와 상의하여 재사용여부 결정
- 라. 대부분 백신은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약독화 생백신은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소한 문제라도 보관상의 문제는 백신을 공급한 회사와 상의 필요

### 🕒 주말/휴일동안 정전이나 냉장고 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부적절한 백신 보관의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 가. 발견 당시 냉장고의 온도와 시간, 방안의 온도 등을 기록
- 나. 재사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관이 될 수 있는 다른 냉장고 또는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 등에 보관
- 다. 백신 보관 기록을 토대로 백신공급업체와 상의하여 재사용여부를 결정
- 라. 대부분 백신은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약독화 생백신은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소한 문제라도 보관상의 문제는 백신을 공급한 회사와 상의 필요

## 13 | 기타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또는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백신 보관관리 상태가 주요 점검사항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백신 취급 및 보관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 [부 록]

### Ⅲ.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1. 어린이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4)	209
2. 백신 접종법	210
3.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212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213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214
6. Tdap/Td 따라잡기	215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3)	217
8.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219
9.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의료인용)	220
10.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감염자관리 안내문(보호자배포용)	221
11.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안내문(대상자용)	222
1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223
13. 국가예방접종 백신 유통 현황(2023. 10. 기준)	224
14. 2022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227







## 2. 백신 접종법

# 백신 접종법

### 2 예방접종 방법

**피하주사** \* 주사부위 :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상두근 바깥쪽 상부) \* 12개월 미만 : 대퇴부 외측 상완외측면(상두근 바깥쪽 상부) \* 12개월 이상 : 상완외측면(상두근 바깥쪽 상부)

**피내주사** 주사부위 : 상완의 삼각근



### 3 백신의 투여 용량 및 투여 방법 (2023.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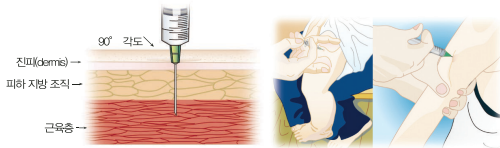
백신종류	분류	제조사/수입사	제품명	Dose	경로	접종부위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	불활성화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주) (주)LG화학	해파린주	11세 미만: 0.5mL 11세 이상: 1.0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해피콜프리필드시린지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BCG(피내)	약독화생백신	(주)에스피마	피내용강조비씨백신(A,V)주	1세 미만: 0.05mL 1세 이상: 0.1mL	피내주사	삼각근부위
BCG(경피)	약독화생백신	(주)한국백신	경피용강조비씨백신	제품설명서	경피주사	제품설명서 참조
DTap	불활성화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디태피피백신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플리오	불활성화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아이피백신주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DTaP-IPV	불활성화백신	사노피파스티르(주) 글락소스미스클라(주)	테트릭십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인판릭스아이피브이주			
DTaP-IPV/Hb	불활성화백신	사노피파스티르(주) 글락소스미스클라(주)	팬틱십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인판릭스아이피브이합주			
DTaP-IPV-HepB+Hib	불활성화백신	사노피파스티르(주)	헤사신프리필드시린지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Td	불활성화백신	(주)에스피마 (주)녹십자	디테부스타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녹십자디태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Tdap	불활성화백신	사노피파스티르(주) 글락소스미스클라(주)	이다셀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이다셀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MMR	약독화생백신	한국염에스디(주) 글락소스미스클라(주)	엠엠알주	0.5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프리오릭스주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	(주)녹십자 (주)보령바이오파마 (주)글로릭스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3세 미만: 0.25mL 3세 이상: 0.5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씨디제백스			
수두	약독화생백신	(주)녹십자 보관피마	이모렐(모렐주백신)	0.5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베리셀라주			
			바리-엘백신			
대상포진	약독화생백신	한국염에스디(주) SK바이오사이언스(주)	스카이바리셀라주	0.65mL 0.5mL	피하주사	상완외측면
			조스타릭스			
			스카이조스타주			
		글락소스미스클라(주)	싱그릭스주	0.5mL	근육주사	삼각근

\* 국가예방접종 사업 미지원 백신

질병관리청

**근육주사** 주사부위 : 대퇴부 전외측과 삼각근

• 영아(3세 미만) : 대퇴부전외측의 대퇴사두부근  
• 소아와 성인(3세 이상) : 상완의 삼각근



**경구투여** 뺨 안쪽 면과 잇몸 사이를 통해 입안 뒤쪽으로 천천히 주임



백신종류	분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Dose	경로	접종부위							
장티푸스	불활성화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지로티프주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약독화생백신	(주)대웅제약	비보티프캡슐	1 capsule	경구투여	경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불활성화백신	(주)녹십자	한티백스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Hib	불활성화백신	(주)LG화학	유히브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백신종류	분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Dose	경로	접종부위							
							A형간염	불활성화백신	글락소스미스클론(주)	히브릭스주	1세~18세 미만: 0.5ml 18세 이상: 1.0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사노피파스퇴르(주)	아백십160U성인용주*	(성인용) 16세 이상: 0.5mL(160U)		
									한국엠에스(주)	빅티프라이드시린지	18세 미만: 0.5ml 18세 이상: 1.0ml		
							메렘구균 (2차백질)	불활성화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A형간염백신(프라필드)시린지	1세~2세 미만: 0.5ml 16세 이상: 1.0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한국아이(주)아이(주)	프리베나13주	0.5ml		
							메렘구균 (23가치당질)	불활성화백신	글락소스미스클론(주)	신물로릭스프라필드시린지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한국엠에스(주)	프리다익스-23 프라필드시린지			
							HPV	불활성화백신	한국엠에스(주)	가다실프라필드시린지*	0.5ml	근육주사	삼각근
									글락소스미스클론(주)	서바릭스스프라필드시린지			
									한국엠에스(주)	로티텍액			
							로타바이러스	약독화생백신	글락소스미스클론(주)	로타릭스스프라필드	2.0ml	경구투여	경구
글락소스미스클론(주)	로타릭스스프라필드	1.5ml											
수막구균	불활성화백신	글락소스미스클론(주)	엔비오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사노피파스퇴르(주)	메너드라										
인플루엔자	불활성화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스(메타트라이백신)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보령플루백스(비트라이백신)주	0.5ml									
			(주)녹십자	지비플루워드(라벨런트)프라필드시린지주			0.5ml						
			보령(주)	비알플루백스(테트라백신)주*			0.5ml						
			(주)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PF주			0.5ml						
				코박스플루4가PPF주			0.5ml						
			사노피파스퇴르(주)	빅시그리프테트라주			0.5ml						
			글락소스미스클론(주)	플루아릭스(테트라)프라필드시린지			0.5ml						
			일양약품(주)	테라텍트(프라필드)시린지주			0.5ml						
			(주)메디팜	플루아드(워드)프라필드시린지			0.5ml						
			SKH10(오사이안스(주))	스카이셀4가(프라필드)시린지			0.5ml						

발행일자: 2023.11.20.(월)



### 3.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sup>1)</sup>

대상 감염병	백신	접종차수	접종 권장시기	최소 접종연령	다음 접종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간격
B형간염	HepB	1차	출생 시	출생 시	1개월	4주
		2차	생후 1개월	생후 4주	5개월	8주
		3차 <sup>2)</sup>	생후 6개월	생후 24주	-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12개월	6개월 <sup>3)</sup>
		4차	생후 15~18개월	생후 12개월	3년	6개월
		5차	4~6세	4세	-	-
디프테리아-파상풍	Tdap	-	11세 이상	11세	-	-
	Td	-	11~12세	7세	10년	5년
폴리오	IPV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14개월	4주
		3차	생후 6~18개월	생후 14주	3~5년	6개월
		4차	4~6세	4세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sup>4)</sup>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9개월	8주
		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폐렴구균 감염증	PCV <sup>4)</sup> (단백결합)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8주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8주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개월	8주
		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PPSV23 <sup>5)</sup> (23가 다당)	1차	-	2세	5년	5년
		2차	-	7세	-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1차	생후 12~15개월 <sup>6)</sup>	생후 12개월	3~5년	4주
		2차	4~6세	생후 13개월	-	-
수두 <sup>7)</sup>	VAR	-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4주	4주
일본뇌염	IJEV (불활성화 백신)	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개월	4주 <sup>8)</sup>
		2차	생후 13~23개월	생후 12개월	11개월	6개월
		3차	생후 24~35개월	생후 18개월	3~4년	2년
		4차	6세	5세	6년	5년
		5차	12세	11세	-	-
	LJEV (약독화 생백신)	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2개월	4주
		2차	생후 24~35개월	생후 13개월	-	-
A형간염	HepA	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6~18개월	6개월
		2차	생후 18개월	생후 18개월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sup>9)</sup>	HPV(2회 접종)	1차	11~12세	9세	6~12개월	5개월
		2차	11~12세	9세	-	-
	HPV(3회 접종)	1차	11~12세	9세	(HPV2) 1개월 (HPV4) 2개월	4주
		2차	11~12세	9세	(HPV2) 5개월 (HPV4) 4개월	12주 <sup>10)</sup>
		3차	11~12세	9세	-	-
인플루엔자	IIV <sup>11)</sup> (불활성화 백신)	-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6개월	1개월	4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sup>12)</sup>	RV (경구용 생백신)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	-

- 1) 혼합백신(combination vaccines)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혼합백신 사용이 동일한 성분의 개별 백신 접종보다 선호된다. 혼합백신을 접종할 때 최소 접종연령은 개별 백신의 최소 접종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이며, 최소 접종간격은 개별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중 가장 큰 간격이다.
- 2) B형간염의 3차 접종과 2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은 8주이고, 3차 접종은 1차 접종 16주 이후이면서 생후 24주 이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 3) DTaP 3차 접종과 4차 접종 사이에 권장되는 최소 접종간격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러나 4차 접종이 생후 12개월 이상에서 DTaP 3차 접종과 4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으면, 4차 접종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 4) Hib 백신과 폐렴구균 단백질결합 백신은 첫 접종을 생후 7개월 이후에 시작한 경우 전체 접종 횟수가 적다.
- 5) 23가 다당 백신은 침습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는 2세 이상의 소아에게 추천되며, 마지막 단백질결합 백신 접종 시점으로부터 최소 8주 간격을 두고 접종한다. 2차 접종은 중증 폐렴구균 감염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와 폐렴구균 항체 역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권장된다.
- 6) 홍역 유행 시 또는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생후 6~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MMR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이전에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
- 7) 생후 12개월~ 13세 미만의 소아는 수두 백신 1회 접종한다. 13세 이상인 경우 4~8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 8)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하다.
- 9) HPV 2가 백신은 9~25세의 남녀, HPV 4가 백신은 9~26세의 남녀에게 허가되어 있다. HPV 예방접종은 9~14세에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6~12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단, 면역저하자이거나 15세 이후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3회 접종이 필요하다.
- 10) HPV 3차 접종은 1차 접종 5개월 이후에 접종해야 한다.
- 11)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소아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하는 해에는 최소한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며, 다음 해부터는 1회 접종한다. 유행주에 따라 접종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 12)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초회 접종은 생후 6주~14주 6일까지 투여되어야 하며, 생후 15주 이상의 영아에게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8개월 0일까지 영아에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가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는 2회 접종하며 3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발행일자: 2023.11.20.(월)



##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 지연시 예방접종(생후 4개월~6세)\*

접종백신	최소접종연령	1~2차 최소접종간격	2~3차 최소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4~5차 최소접종간격
B형간염 <sup>1)</sup>	출생시	4주	8주(1차 접종 16주 후)	-	-
DTaP <sup>2)</sup>	생후 6주	4주	4주	6개월	6개월
IPV <sup>3)</sup>	생후 6주	4주	4주	6개월(마지막 접종의 최소 연령은 4세)	
Hib <sup>4)</sup>	생후 6주	4주 : 생후 12개월 미만에 1차 접종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생후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생후 15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4주 : 함께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생후 7개월 미만에만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1차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59개월이며 1차 접종을 생후 12개월 미만으로 하고 2차 접종을 생후 15개월 미만에만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이전 접종을 생후 15개월 이상에서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만 필요	
PCV <sup>5)</sup>	생후 6주	4주 : 생후 12개월 미만에 1차 접종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건강할 소아로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할 소아로 1차 접종을 PCV13으로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단, PCV10으로 접종한 경우 8주 간격으로 접종(마지막 접종)	4주 : 함께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고 이전 접종을 생후 7개월 미만에만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건강할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상이며 1회 이상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할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 또는 접종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받은 고위험군	
MMR <sup>6)</sup>	생후 12개월	4주	-	-	-
수두	생후 12개월	-	-	-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sup>7)</sup>	생후 12개월	4주	6개월	2년	5년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sup>8)</sup>	생후 12개월	4주	-	-	-
A형간염 <sup>9)</sup>	생후 12개월	6개월	-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sup>10)</sup>	생후 6주	4주	4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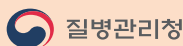
- \* 지연시 예방접종이란, 권장접종시기보다 1개월을 초과하여 접종을 한 경우임. 접종이 지연되었다면 다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부터 접종함
- B형간염: 3차접종의 최소 연령은 생후 24주임
- DTaP: 4차 접종을 4세 이후에 접종하였다면 5차 접종은 생략
- IPV: 3차 접종을 4세 이후에 실시할 경우에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6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함
- Hib: 5세 이상의 건강할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PCV: 5세 이상의 건강할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MMR: 2차 접종의 표준 접종 시기는 4~6세지만 해당 감염원이 유행할 경우 최소접종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음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2차 최소접종간격은 4주이나,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축접종이 필요한 경우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함. 3차 접종을 4~9세에 한 경우는 4차 접종을 12세 이후에 실시하고 접종을 종료하며,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접종을 하지 않음. 11세 이후에 기초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총 3회 접종으로 완료함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국내에서는 생후 12개월부터 접종하나 국외에서는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8개월부터, 재조합 키메라 바이러스 생백신은 생후 9개월부터 접종을 추천함
- A형간염: 접종 간격은 제품에 따라 6~36개월이며, 접종받지 않은 2세 이상 소아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첫 접종은 첫 연령은 14주 6일이며, 15주 0일 이후에는 접종을 시작하지 않음. 접종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8개월 0일까지임. 로타릭스(Rotarix)는 2회, 로타텍(Rotateq)은 3회 접종

#### ○ 지연시 예방접종(7~18세)\*

접종백신	최소접종연령	1~2차 최소접종간격	2~3차 최소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Tdap/Td <sup>1)</sup>	7세	4주	4주 : DTaP 첫 접종을 생후 12개월 미만에만 한 경우 6개월(마지막 접종) : DTaP 첫 접종을 생후 12개월 이후에 한 경우	6개월 : DTaP 첫 접종을 생후 12개월 미만에만 한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sup>2)</sup>	9세	권장 간격을 지킨다			
A형간염	-	6개월	-	-	
B형간염	-	4주	8주(1차 접종 16주 후)	-	
IPV <sup>3)</sup>	-	4주	6개월	-	
MMR	-	4주	-	-	
수두 <sup>4)</sup>	-	4주	-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sup>5)</sup>	-	4주	6개월	2년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	4주	-	-	

- \* 지연시 예방접종이란, 권장접종시기보다 1개월을 초과하여 접종을 한 경우임. 접종이 지연되었다면 다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부터 접종함
- Tdap/Td: 기초접종 3회 접종 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접종하는데, 가능하면 첫 접종을 Tdap 백신으로 접종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예방접종은 9~14세에 첫 접종을 시와한 경우 6~12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음. 단, 면역저하자이거나 15세 이후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3회 접종이 필요함
- IPV: 3차 접종을 4세 이후에 실시할 경우에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6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함
- 수두: 13세 이상이면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2차 최소접종간격은 4주이나,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축접종이 필요한 경우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함. 3차 접종을 4~9세에 한 경우는 4차 접종을 12세 이후에 실시하고 접종을 종료하며,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접종을 하지 않음. 11세 이후에 기초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총 3회 접종으로 완료함

발행일자: 2023.11.20.(월)





##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첫 번째 접종 시 연령	기초접종 횟수 및 간격	추가접종 시기 및 횟수
Hib	생후 2~6개월	3회, 2개월 간격	생후 12~15개월 <sup>1)</sup> 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2개월 간격	생후 12~15개월 <sup>1)</sup> 에 1회
	생후 12~14개월	1회 <sup>2)</sup>	2개월 후에 1회
	생후 15~59 <sup>3)</sup> 개월	1회 <sup>2)</sup>	-

- ① 이전 접종과 최소 8주 간격을 두고 접종
- ②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소아. 즉,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경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초기 요소 보체결핍증, 특히 IgG2 아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자에서는 연령에 따라 1~2회 접종(2회 접종 시 2개월 간격)
- ③ 고위험 환자 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5세 이상에도 접종

####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종류와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의 종류	첫 번째 접종 시 연령	기초접종 <sup>1)</sup>	추가접종 <sup>2)</sup> 시기 및 횟수
PCV10	생후 2~6개월	3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12~59개월	2회	-
PCV13	생후 2~6개월	3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12~23개월	2회	-
	생후 24 ~ 59개월(간강한 소아)	1회	-
	생후 24~71개월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sup>3)</sup>	2회	-

- ① 생후 12개월 미만에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은 4주, 그 이후의 최소 접종간격은 8주일. 최소 접종연령은 생후 6주임
- ② 이전 접종으로부터 최소 8주의 간격을 두고 접종
- ③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19세 미만 소아청소년<sup>1)</sup>) 참고

#### ○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들)

위험군	질환
경상면역 소아청소년	만성 심장 질환 <sup>1)</sup> , 만성 폐 질환 <sup>2)</sup> ,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만성 간 질환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청소년	경상구 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장애
면역저하 소아청소년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증, 호지킨병) 또는 고형 장기 이식 선천 면역결핍질환 <sup>3)</sup>

- ① 특히 선천성 청색 심질환과 심부전
- ②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복용하는 천식환자도 포함함
- ③ B세포(체액면역) 또는 T세포 결핍증, 보체결핍증(특히, C1, C2, C3 및 C4 결핍증), 탐식구 질환(만성 육아종 질환은 제외)



## 6. Tdap/Td 따라잡기

표 1. 7-9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이전 접종 횟수	1차 접종 시기	직전 접종 시기	Tdap 접종력	방문일 접종 일정	다음 접종 일정
0				Tdap (1차) 접종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2차)
1	생후 12개월 이전			Tdap (2차) 접종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3차)
	생후 12개월 이후	최소 4주 경과	있음	Td 또는 Tdap (2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3차)
			없음	Tdap (2차) 접종	
		4주 이내	있음	접종 없음	1차 접종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2차)
없음			1차 접종 최소 4주 후 Tdap (2차)		
2	생후 12개월 이전	최소 4주 경과	있음	Td 또는 Tdap (3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4차)
			없음	Tdap (3차) 접종	
		4주 이내	있음	접종 없음	2차 접종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3차)
			없음		2차 접종 최소 4주 후 Tdap (3차)
	생후 12개월 이후	최소 6개월 경과	있음	Td 또는 Tdap (3차) 접종	11-12세에 Tdap 또는 Td 접종
			없음	Tdap (3차) 접종	
		6개월 이내	있음	접종 없음	2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3차)
			없음		2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ap (3차)
3	생후 12개월 이전	최소 6개월 경과	있음	Td 또는 Tdap (4차) 접종	11-12세에 Tdap 또는 Td 접종 <sup>1)</sup>
			없음	Tdap (4차) 접종	
		6개월 이내	있음	접종 없음	3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4차)
			없음		3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ap (4차)
	생후 12개월 이후		있음	접종 없음	11-12세에 Tdap 또는 Td 접종 <sup>1)</sup>
			없음	Tdap (4차) 접종 <sup>1)</sup>	
4		4세 이후 DTaP 또는 Tdap 접종력 있음		접종 없음	11-12세에 Tdap 또는 Td 접종 <sup>1)</sup>
		4세 이후 DTaP 또는 Tdap 접종력 없음		Tdap (5차) 접종	11-12세에 Tdap 또는 Td 접종 <sup>1)</sup>

<sup>1)</sup>이전 접종 시기와 상관없이 접종한다.

표 2. 10-18세 Tdap/Td 따라잡기 일정

이전 접종 횟수	1차 접종 시기	직전 접종 시기	Tdap 접종력	방문일 접종 일정	다음 접종 일정
0				Tdap (1차) 접종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2차)
1	생후 12개월 이전			Tdap (2차) 접종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3차)
	생후 12개월 이후	최소 4주 경과	있음	Td 또는 Tdap (2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3차)
			없음	Tdap (2차) 접종	
	생후 12개월 이후	4주 이내	있음	접종 없음	1차 접종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2차)
없음			1차 접종 최소 4주 후 Tdap (2차)		
2	생후 12개월 이전	최소 4주 경과	있음	Td 또는 Tdap (3차) 접종 <sup>1)</sup>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4차)
			없음	Tdap (3차) 접종	
	생후 12개월 이후	4주 이내	있음	접종 없음	2차 접종 최소 4주 후 Td 또는 Tdap (3차) <sup>1)</sup>
			없음		2차 접종 최소 4주 후 Tdap (3차)
	생후 12개월 이후	최소 6개월 경과	있음	Td 또는 Tdap (3차) 접종 <sup>1)</sup>	10년 후 Td 또는 Tdap
			없음	Tdap (3차) 접종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이내	있음	접종 없음	2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3차) <sup>1)</sup>
			없음		2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ap (3차)
3	생후 12개월 이전	최소 6개월 경과	있음	Td 또는 Tdap (4차) 접종 <sup>1)</sup>	10년 후 Td 또는 Tdap
			없음	Tdap (4차) 접종	
	생후 12개월 이후	6개월 이내	있음	접종 없음	3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 또는 Tdap (4차) <sup>1)</sup>
			없음		3차 접종 최소 6개월 후 Tdap (4차)
	생후 12개월 이후		있음	접종 없음	3차 접종 10년 후 Td 또는 Tdap
			없음	Tdap (4차) 접종	4차 접종 10년 후 Td 또는 Tdap
4		10세 이후 Tdap 접종력 있음	접종 없음	4차 접종 10년 후 Td 또는 Tdap	
		10세 이후 Tdap 접종력 없음	Tdap 접종 <sup>2)</sup>	10년 후 Td 또는 Tdap	

<sup>1)</sup>10세 이후 Tdap 접종력이 없다면 Tdap이 추천된다.

<sup>2)</sup>가급적 11-12세에 접종한다. 만일 10세에 접종되었다면 11-12세 Tdap 또는 Td 접종은 생략될 수 있다.



##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2항(별표3)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ap)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3.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 (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결핵 (BCG)	1. 림프절 부기(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 (Hep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 (VA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일본뇌염 (IJEV, LJE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페렴구균 (PCV, PPS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Flu)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A형간염 (HepA)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장중첩증	21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장티푸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신증후군출혈열*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임시예방접종**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42일 이내
	4. 심근염	42일 이내
	5. 심낭염	42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 후 발생한 이상사례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지정 등 고시(별표)

\*\*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 8.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의료인용)

#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권장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 ● 기저질환 병력이 있을 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서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안내하세요.

### ● 다문화 가정의 아이

정확한 연락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엄마, 아빠 모두의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엄마의 출신 국가를 물어보시고 해당 언어로 작성된 다문화 가정용 안내서를 출력해 주세요.

### ● 해외 거주자 및 잦은 출입국자

정확한 연락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부모의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반드시 '거주한 나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자녀의 해외에서 접종기록을 전산등록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전산등록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 내역 입력은 중복 접종,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미접종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접종 전 전산등록자료 및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반드시 과거 접종력을 확인하세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하고, 접종기록은 앞차수부터 순차적으로 등록하세요.

동일차수에 재접종한 경우(접종력 불인정에 따른 재접종 등) 재접종기록은 해당 접종차수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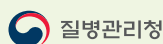
★ 출생신고전 신생아의 경우 피접종자의 엄마(母)의 인적정보를 반드시 함께 등록하세요.

★ 인적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병원 방문시마다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수정해주세요.

★ '문자수신동의' 항목을 체크하여 다음접종일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사용자 가입 및 인증서 등록' 및 인증서 로그인 이후 예방접종업무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행일자 : 2023.11.20.(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질병관리청 [www.kdca.go.kr](http://www.kdca.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 9.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의료인용)

(의료인용)

##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

당신이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권장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당신이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환자 및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진료 중 아이의 건강 및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중에 예방접종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Tip!

## ● 미접종 내역 안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접종이 완료되었는지, 혹시 미접종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미접종한 내역이 있거나 접종 시기가 된 예방접종이 있으면 접종 가능한 모든 접종을 시행하세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미등록된 경우 접종을 등록해주시거나,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 아이가 감기, 설사, 중이염 등 경미한 급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 다음 예방접종 날짜를 미리 안내하고 다음 방문을 예약해 주세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보호자와 약속한 다음 예방접종 날짜를 예약하세요.

## ● 보호자가 예방접종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을 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예방접종을 선택하도록 돕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 후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관한 안내서를 건네주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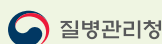
## ●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당신도 그들의 자녀의 건강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여 대화를 주도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야 합니다.

발행일자 : 2023.11.20.(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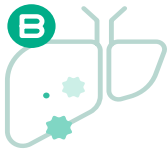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질병관리청 [www.kdca.go.kr](http://www.kdca.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 10.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감염자관리 안내문(보호자배포용)

보호자용

청렴 질병관리청

# B형간염 감염자 관리 안내문



- Ⓛ B형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며,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 Ⓛ B형간염은 어린 시기에 감염될수록 만성화의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기에 감염된 경우 9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B형간염에 감염되면 다양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꾸준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 출산할 때 만성 B형간염 어머니에게서 아기로의 전염이 흔합니다. 대부분 출산 시 예방 처치로 면역력이 생기지만 적절한 처치를 받은 경우에도 100명 중 2~3명 정도는 출생 시 B형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만성 B형간염으로 진행될 경우 수십 년 후에 4명 중 1명은 간경화나 간세포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B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 주요 감염 경로는 출산시에 엄마로부터 아기에 전파되는 주산기 감염,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피부 및 점막을 통한 감염,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B형간염 감염 보유자와의 성 접촉 등에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 기숙사 등에서의 일상생활로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 아이가 B형간염 양성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 Ⓛ B형간염 바이러스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더 진행되면 간경화, 간세포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B형간염으로 확인되면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적절한 관리를 받아 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B형간염 아이와 매일 긴밀한 접촉을 하는 가족이 B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나요?

- Ⓛ B형간염은 함께 밥을 먹거나 손을 잡는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조절되지 않는 물어뜯는 버릇이 있거나 전신 가려움증으로 피가 자주 나가거나, 출혈성 질병이 있다면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도록 합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에게 B형간염이 있음을 미리 알려서 상처가 생긴 경우에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 Ⓛ 진료 시 의사선생님에게 아이의 B형간염을 미리 알려서, 주사를 맞거나 혈액을 채취할 때 아이의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처방을 받을 때도 약물의 오남용을 막도록 합니다.

### 📄 다른 아이들과 공동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있나요?

- Ⓛ 일상적인 접촉을 하는 집단생활은 전염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축구, 복싱 등 상처가 생겨 피가 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상처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양치도구, 귀걸이, 면도기와 같은 도구도 다른 아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11.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안내문(대상자용)

### 여성의 비밀스러운 성장과정으로 알려진 초경,

누구와 상의하고 궁금한 점을 풀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나요?  
초경은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출발입니다.



**Q 초경은 자연스러운 성장과정 중의 일부입니다.**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발현되며 생식능력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춘기 발달과정은 유방 발달 • 음모와 액와모 발달 • 급격한 키 성장 • 초경 • 배란 순서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유방 발육이 시작된 후 약 2~3년이 지난 후에 초경이 시작됩니다.



젖털음



겨드랑이털 출현



키 급증



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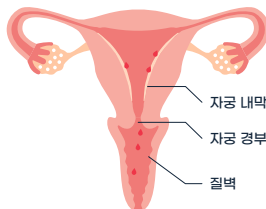
**Q 초경은 언제 시작하나요?**

초경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2~13세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 성징(유방, 음모 발달)이 있으나, 15세까지 초경이 없거나, 2차 성징이 13세까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차성 무월경이 의심되므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비정상 출혈은 어떤 경우인가요?**

초경 후 2년이 경과했는데 월경 주기가 21일 미만 혹은 45일 이상 간격이거나, 7일 이상 지속된다면 비정상 출혈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출혈이 많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궁 내막

자궁 경부

질벽

**Q 초경이후 월경은 어떤가요?**

초경 후 2년까지는 약 50~80%에서 월경주기가 무배란 성으로 불규칙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규칙적인 배란주기를 갖게 됩니다. 초경 후 2년 이내라면 기다려 주세요.

**Q 월경통이 있어요!**

월경통은 월경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주기적인 골반통증을 말하며, 월경을 하는 여성의 5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자궁, 난소, 혹은 골반 내에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월경기간 분비되는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월경통을 일차성 월경통으로, 골반장기의 이상에 의한 월경통을 이차성 월경통으로 분류합니다.

일차성 월경통인 경우 소염진통제를 통증이 있는 기간에 복용하면 70~90%에서 호전됩니다.

월경통 관련 진통제는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하며, 복용 후에도 월경통이 호전되지 않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문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사업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르신  
※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
- 사업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PPSV23, 1회 지원
- 접종기준** 65세 이후에 접종하셨어요? →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요!**  
 65세 이전에 접종하셨어요? → **의사와 추가접종을 상의해주세요.**
- 접종기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보건소는 여건에 따라 예방접종을 미 실시 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접종기관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내원 전 알립니다.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에게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백신선택(다당 백신 또는 단백결합 백신) 및 접종 시기 등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합니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접종 당일은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합니다.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국소반응** 접종 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      **전신반응** 발열, 근육통 등

※ 국소반응은 예방접종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수일 이내에 호전됩니다.  
 만약,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정부는 예방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3. 국가예방접종 백신 유통 현황(2023. 10. 기준)

백신종류 (대상 감염병)	분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규격	제조방법	유효 기간	허기일
BCG(피내)	생백신	(주)엑세스파마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AJV주	1.0ml/vial	완제품수입	24개월	2003-09-29
		(주)한국백신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	1.0ml/ampule	완제품수입	30개월	2016-03-23
BCG(경피)	생백신	(주)한국백신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12mg/ampule	완제품수입	24개월	1993-01-12
		SK바이오사이언스(주)	해파문주	0.5, 1.0ml/vial	국내제조	36개월	1998-11-10
B형간염	사백신	(주)LG화학	해파문프리필드시린지	1.0ml/PFS	국내제조	36개월	2012-04-24
		(주)한국백신	유박스비주	0.5, 1.0ml/vial	국내제조	36개월	1995-04-24
DTaP	사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유박스비프리필드주	1.0ml/PFS	국내제조	36개월	2012-04-24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0.5ml/PFS	원액수입제조	24개월	2014-12-17
IPV	사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아이피박스주	0.5ml/PFS	원액수입제조	36개월	2007-12-26
		사노피파스퇴르(주)	테트락심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2009-08-31
DTaP-IPV	사백신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인판릭스아이피브이주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2010-06-10
		사노피파스퇴르(주)	펜탁심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2016-05-09
DTaP-IPV/Hib	사백신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인판릭스아이피브이합주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2018-10-26
		사노피파스퇴르(주)	핵사임프리필드시린지주	0.5ml/PFS	완제품수입	48개월	2020-04-14
Tdap	사백신	사노피파스퇴르(주)	아다셀주	0.5ml/vial	완제품수입	36개월	2009-06-22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2022-11-11	2010-06-09
Td	사백신	(주)엑세스파마	디티부스터주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2010-01-07
		(주)녹십자	녹십자디티백신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36개월	2016-11-01
MMR	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엠엠알 II 주	0.5ml/vial	완제품수입	24개월	1995-07-01



백신종류 (대상 감염병)	분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규격	제조방법	유효 기간	허기일
일본뇌염	사백신	(주)녹십자 (주)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0.4,0.7ml/vial 0.4,0.7ml/vial	원액수입제조 원액수입제조	36개월 36개월	2013-10-25 2013-08-09
	생백신	(주)글로박스 사노피파스퇴르(주)	씨디.제박스 이모접주	0.5ml/vial 0.5ml/vial	완제품수입 완제품수입	24개월 48개월	2002-03-07 2015-04-03
수두	생백신	(주)녹십자	베리셀라주	0.5ml/vial	국내제조	24개월	2020-03-02
		SK바이오사이언스(주) 보림파마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0.5ml/vial 0.5ml/vial	국내제조 완제품수입	24개월 18개월	2018-06-04 1995-09-07
대상포진	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조스타박스	0.65ml/vial	완제품수입	18개월	2009-04-17
		SK바이오사이언스(주) (주)클락스스미스클라인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주	0.5ml/vial 0.5ml/vial	국내제조 완제품수입	24개월 36개월	2017-09-29 2021-09-06
장티푸스	사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지로티프주	0.5ml/vial	원액수입제조	20개월	1992-12-09
	생백신	(주)대웅제약	비보티프캡슐	3 capsule	완제품수입	18개월	2018-04-09
신증후군출혈열 Hib	사백신	(주)녹십자	한타박스	0.5ml/vial	국내제조	24개월	1990-07-02
	사백신	(주)LG화학	유히브주	0.5ml/vial	국내제조	36개월	2010-08-10
A형간염	사백신	(주)클락스스미스클라인	하브릭스주	0.5,1.0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1997-04-09
		사노피파스퇴르(주) 한국엠에스디(주)	아박스160U성인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0.5,1.0ml/PFS	완제품수입 완제품수입	36개월 36개월	2011-11-04 2013-04-22
폐렴구균(단백결합)	사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한국화이자제약(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프리베나13주	0.5,1.0ml/PFS 0.5ml/PFS	원액수입제조 완제품수입	36개월 36개월	2020-12-29 2010-03-19
	사백신	클락스스미스클라인(주)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48개월	2010-03-26
폐렴구균(23가다당질)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28개월	2016-04-11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가디실프리필드시린지 가디실9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0.5ml/PFS	완제품수입 완제품수입	36개월 36개월	2007-08-17 2016-01-25

백신종류 (대상 감염병)	분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규격	제조방법	유효 기간	허기일
로타바이러스	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로타텍액	2.0ml/tube	완제품수입	24개월	2007-06-22
		(주)클락스스미스클라인	로타릭스프리필드	1.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2008-03-07
수막구균	사백신	(주)클락스스미스클라인	멘비오	0.5ml/vial	완제품수입	36개월	2012-05-22
		사노피파스퇴르(주)	베세로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2022-05-19
		(주)녹십자	메낙트라	0.5ml/vial	완제품수입	24개월	2014-11-21
		(주)보령바이오파마	지씨플루퀴드리벨런트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2015-11-26
		(주)보령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2016-07-19
		(주)한국백신	보령플루에테트라백신주	0.5ml/PFS	원역수입제조	12개월	2017-06-20
		임양약품(주)	비일플루텍 I 테트라백신주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2018-05-11
		SK바이오사이언스(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2017-06-20
		(주)메디탑	코박스플루4가PF주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2017-07-19
		인플루엔자 4가	사백신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인플루엔자 4가	사백신	(주)클락스스미스클라인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12개월	2014-12-26
		사노피파스퇴르(주)	박씨그리프테트라	0.5ml/PFS	완제품수입	12개월	2017-06-20
		SK바이오사이언스(주)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2015-12-24
인플루엔자 4가	사백신	(주)메디탑	플루아드쿼드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12개월	2222-09-19



## 14. 2022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 백신별/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

- 예방접종 대상자는 2016년, 2019년 ~ 2021년 출생아로, 1~3세, 6세(생후 12, 24, 36, 72개월)까지 권장하는 예방접종률은 다음과 같음

〈 1세, 2세, 3세, 6세 백신별/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 2022〉

(단위: 명, %)

구 분	BCG	HepB	DTaP	IPV	Hib	PCV	MMR	VAR	HepA	JE	연령 시기별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홍역, 유행성이하 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안전 접종률	
6세 (2016년생)	접종자	402,582	401,790	387,051	392,206	396,645	400,211	393,356	402,418	399,200	380,739	364,441
	접종률	97.8	97.6	94.1	95.3	96.4	97.3	95.6	97.8	97.0	92.5	88.6
3세 (2019년생)	접종자	300,437	299,006	294,644	299,659	295,392	297,693	299,861	299,678	293,627	282,727	275,910
	접종률	97.7	97.2	95.8	97.4	96.0	96.8	97.5	97.4	95.4	91.9	89.7
2세 (2020년생)	접종자	271,074	269,939	264,065	270,573	265,995	267,399	270,186	270,143	-	-	259,632
	접종률	97.6	97.2	95.1	97.4	95.8	96.3	97.3	97.3	-	-	93.5
1세 (2021년생)	접종자	259,041	257,203	258,215	258,119	258,252	257,666	-	-	-	-	254,997
	접종률	97.6	97.0	97.3	97.3	97.3	97.1	-	-	-	-	96.1

\* 1세 예방접종률: BCG 1회, HepB 3회, DTaP 3회, IPV 3회, Hib 3회, PCV 3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 2세 예방접종률: BCG 1회, HepB 3회, DTaP 4회, IPV 3회, Hib 4회, PCV 4회, MMR 1회, VAR 1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 3세 예방접종률: BCG 1회, HepB 3회, DTaP 4회, IPV 3회, Hib 4회, PCV 4회, MMR 1회, VAR 1회, HepA 2회 및 JE 불활성화 백신 3회 또는 약독화 생백신 2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 6세 예방접종률: BCG 1회, HepB 3회, DTaP 5회, IPV 4회, Hib 4회, PCV 4회, MMR 2회, VAR 1회, HepA 2회 및 JE 불활성화백신 4회 또는 약독화 생백신 2회를 모두 완료한 경우  
 \* 기타 상세한 현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 지식창고 → 전국 예방접종률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보건·사회·복지 → 보건 →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부 록]

### IV. 민원상담 사례집

1. 국가예방접종사업	231
◦ 일반원칙	
◦ 사업운영 총괄	
◦ 백신별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황 심사기준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및 교육이수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70
3.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277
4. 이상반응 관리	280



## 1 국가예방접종사업

### 일반원칙



**Q 1. (지연접종) 표준예방접종 일정보다 접종이 지연되면 경우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A 1.**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차수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합니다. 표준예방접종 간격보다 길어지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연된 예방접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받도록 합니다.

**Q 2. (이른접종) 권장되는 표준예방접종 일정보다 일찍 접종하면 경우 재접종해야 하나요?**

**A 2.** 최소접종 연령과 최소접종 간격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접종해야 합니다. 약독화 생백신은 경우 동시접종을 못했거나, 약독화 생백신간 유지해야 할 최소접종 간격(4주)보다 이르게 접종했다면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동시접종 시에는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고, 국소 반응을 구별하기 위해 주사 부위는 적어도 2.5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 최소접종 간격 또는 최소접종 연령에서 4일 이하의 오차는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으로 접종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단, 약독화 생백신간 최소접종 간격(4주), MMR, 수두 1차접종 연령인 생후 12개월은 제외)

**Q 3. (조혈모세포이식) 6세 아동으로 접종을 완료했지만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을 하려고 할 때 얼마의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나요?**

**A 3.** 불활성화 백신은 백신에 따라 이식 후 6~12개월에 시작하고, 약독화 생백신은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 시 접종합니다. 면역학적 판단 기준은 (1) 최근 3개월 이내에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2)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이 없고, (3) 앞서 접종받은 불활성화 백신에 대하여 적절한 면역반응을 보인 경우입니다.

**Q ▶ 4. (항암치료)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이전에 접종한 백신을 재접종해야 하나요?**

**A ▶** 4. 항암치료 또는 방사능 치료 이전에 접종했던 백신은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중 면역저하상태에서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은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 재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이후 접종 시 MMR, 수두와 같은 약독화 생백신은 체내에서 백신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증식하므로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감염우려가 있을 수 있어 치료 후 일정 기간 간격(최소 3개월)을 두어야 합니다.

**Q ▶ 5. (스테로이드 투여) 질병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으면 접종을 할 수 없나요?**

**A ▶** 5.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다면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모두 접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량 스테로이드(프레드니손 2mg/kg/일에 해당하는 역가 이상, 또는 체중이 10kg 이상 소아에서 20mg/일에 해당하는 역가 이상)를 투여 받는 사람은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하고 최소 1개월 이후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합니다.

\* 피부에 도포하거나 기관지에 분무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Q ▶ 6. (용량오류) 접종 시 아이가 움직여서 백신의 정량이 투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6. 적정량의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경우 투여된 용량을 측정하기 어려워 면역효과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접종을 권장하며, 이 때 정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을 비강 투여 후에 재채기를 한 경우와 로타바이러스 백신 경구 투여 후 구토한 경우는 재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Q ▶ 7. (접종방법) 1세 아동에게 근육주사 할 때 삼각근에 접종 가능한가요?**

**A ▶** 7. 연령별 주사부위는 근육량, 피하지방층 두께, 백신량, 주사기술에 근거해 개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세 연령은 대퇴부 전외측이 선호되나 근육량이 적당한 경우 삼각근 접종도 가능합니다. 12개월 미만 영아는 가장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대퇴부 전외측이 추천되며, 3세 이상은 상완 삼각근이 선호됩니다. 다만, 삼각근에 접종할 수 없는 경우 대퇴부 전외측에 접종합니다.

## 사업운영 총괄



**Q 1. (지원대상) 출생신고 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 등은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1.** 네. 출생 신고 전 신생아는 임시신생아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와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면 비용상환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출생 후 1개월 이상)은 보건소에서 보호자 인적 확인 후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합니다.

※ 시설아동은 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를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시설아동번호 미발급 아동은 시설아동번호 발급 시까지 관리번호로 접종

※ 생후 1개월 이내 임시신생아번호로 비용신청 가능한 접종: B형간염 1차, 피내용 BCG

**Q 2. (지원대상) 외국인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2.**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합니다.

**Q 3. (지원방법)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3.** 아니요, 지자체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4. (지원백신) 백신별 예방접종 지원비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4.**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공지사항'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 → 공고/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5. (비용상환)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절차와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5.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시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되며,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약 1일 소요) 후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접수, 심사 후 지급합니다.

\* 실시기준 미준수, 백신제조번호 미등록 등 불완전 접종내역은 비용상환 신청 불가

**Q 6. (비용상환)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상환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6. 비용상환 신청기한은 2015년 폐지되었으나, 중복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 당일 전산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 한 의료기관에 비용지급

**Q 7. (이의신청, 의료기관) 비용상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A** 7. 보건소 비용상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상환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이의신청 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상환불가 내역을 더블 클릭 후 '이의신청 팝업창'에 이의 신청 사유를 작성하고, 이의신청 내역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재심의함.

**Q 8. (이의신청, 보건소) 비용상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8. 보건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 결정기한 만료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Q 9. (비용상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거 접종력이 없고, 보호자도 기억을 못해 우선 접종을 시행하였으나, 나중에 보호자의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접종력을 확인했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이전 과거 접종력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수첩 등에서 중복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접종 당시 과거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비용상환이 인정되나, 원칙적으로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시한 중복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합니다.



**Q** 10. (비용상환)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의학적소견 (재접종)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0. 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이식 후 재접종이 필요하며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했다면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12세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면 이식일로부터 3년간(36개월 하루 전까지) 비용지원 가능

**Q** 11. (항암치료 등) 백혈병 등의 혈액종양 또는 고형종양으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받았다면,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1.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 이전에 접종받았던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은 불필요하나, 면역저하 상태 동안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은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에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이 필요했다면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재접종 등록방법) 중복등록할 차수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추가 등록하고, 의학적소견을 선택(면역저하 상태 동안 받은 접종의 재접종(항암치료 후 등))하거나 필요에 따라 상세사유를 작성하여 신청

**Q** 12. (비용공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이 제품명으로 구분되어 비용공고 되는데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A** 12. 아니요. 제품명에 관계없이 동일 백신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목(제품명) 공개는 수급관리 정확도 제고 및 신규백신 도입 절차 명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구분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 (예시) HepB(0.5ml): 헤파박스-진티에프주, 헤파문주, 유박스비 → 백신비 동일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 전자관보’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공고/공시’에서 확인 가능

- Q** 13.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예방접종 예진표, HPV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 참여 산모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보관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관 관련하여 종이(원본) 보관 양이 많고, 공간(자리) 부족 및 사후 처치 곤란 등의 사유로 해당 문서를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안되나요?
- A** 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효력있는 전자문서’와 ‘전자 서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스캔’만으로는 효력있는 문서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의2, 제5조에서는 ①‘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별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심사기준



### 1. B형간염(HepB)

- Q** 1. (재접종) B형간염 기초접종 후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인데 재접종 해야되나요?
- A** 1. 아니요.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기초접종 완료 후 일률적인 항체 검사를 권장하지 않으며, 해당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 다만, B형간염 고위험군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하는 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등)은 검사가 필요하며, 해당결과에 따라 재접종이 필요하다면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Q** 2. (특수상황의 접종) HBsAg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생 시 2.0kg 미만으로 태어난 경우의 B형간염 비용상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2. 산모의 HBsAg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양성인 산모에게서 출생 시 2.0kg 미만인 신생아는 총 4회의 접종이 필요하며, 4회 모두 비용지원 됩니다.

[접종일정] ①분만 직후(12시간 이내) 접종(기초접종 횟수에 미포함), ②생후 1개월에 1차 재접종\*, ③생후 2개월에 2차 접종, ④생후 6~7개월에 3차 접종  
 \* 1차 재접종 등록 시 의학적 소견: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B형간염 미숙아 접종 > 출생 주 수 및 출생 시 체중 입력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은 예방접종비용 별도 관리
- ※ 산모의 HBsAg이 음성이라면 총 3회 접종비용 지원

**Q** 3. (접종일정) 과거 접종력이 없는 11세 아동에게 B형간염 접종 시 지원 되나요?

- A** 3.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11세 이상 연령은 1.0ml 백신으로 접종하고, 1.0ml 백신비용을 상환합니다.(2018. 8. 24.부터 지원 적용)

※ 전산등록 되지 않은 접종력을 우선 확인하고, 접종력이 없다면 기초접종 3회 가능

**Q** 4. (접종일정) B형간염 1차, 2차는 정확한 날짜에 접종했는데, 3차를 9주에(2달) 앞당겨 접종했습니다. 이 경우 재접종 필요한가요?

- A** 4. 최소접종 연령과 간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재접종이 필요하며, 3차 재접종은 오접종일로 부터 최소 5개월 뒤에 실시합니다.

※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은 8주이고, 3차 접종은 1차 접종 16주 이후이면서 생후 24주 이후 접종

## 2. 결핵(BCG)

**Q** 1. (지연접종) 피내용 BCG 접종이 지연된 경우 TST 비용도 지원되나요?

- A** 1. 아니요. BCG 예방접종을 지연한 생후 3개월 이상의 연령은 결핵균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가 필요하나, 검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생아기에 BCG 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파종 결핵의 고위험 연령대로 알려져 있는 5세 미만 어린이의 TST 결과가 음성이라면 피내용 BCG 지연접종 시 비용을 지원합니다.

**Q ▶ 2. (재접종) 피내용 BCG 예방접종 후 반흔이 없는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A ▶** 2. 아니요. BCG의 반흔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반흔 유무로 재접종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재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Q ▶ 3. (용량오류) 피내용 BCG 접종 시 바늘이 빠져 백신 용량이 적게 주입되면 어떻게 하나요?**

**A ▶** 3. 권장 용량으로 다시 접종합니다. 특별한 간격을 띄우지 않고 접종 당일 재접종하며, 접종 부위를 달리하면 반흔이 이중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은 부위에 접종합니다.

**Q ▶ 4. (접종일정) B형간염 주산기감염 대상자는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BCG 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A ▶** 4. 신생아에게 HBIG 투여 후 BCG 백신을 접종했을 때 BCG 백신의 효과가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간격을 두지 않고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합니다. 참고로 BCG 백신은 항체 함유 혈액제제와 투여 간격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Q ▶ 5. (접종일정) 해외에서 귀국한 13개월 영아로, MMR 백신과 수두 백신 접종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BCG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요?**

**A ▶** 5. MMR 백신과 수두 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TST 후 결과에 따라 BCG 접종을 실시합니다.

MMR 생백신은 이론적으로 TST의 반응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MMR 백신과 TST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MMR 백신 접종 후 최소 4주가 지난 후에 TST를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TST 시행 후 MMR 백신 등의 약독화 생백신 접종시 특별히 지켜야 할 간격은 없습니다.

**Q ▶ 6. (지연접종) 해외에서 귀국한 BCG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6세 아동인데 BCG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요?**

**A ▶ 6.** 아니요. BCG 백신 접종은 결핵 중 소아 파종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파종결핵의 고위험군 연령대인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접종을 권장하며, 그 이상의 연령은 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므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Q ▶ 7. (접종일정) TST 후 며칠 이후에, 혹은 며칠 이내에 BCG 접종을 해야 하나요?**

**A ▶ 7.**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TST는 검사 당시의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하므로 가능한 빨리 접종하기를 권장합니다.

**Q ▶ 8. (지연접종) 미숙아로 출생하여 출생 직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한 달 전에 퇴원한 생후 4개월 영아에게 TST 없이 BCG 백신 접종 해도 되나요?**

**A ▶ 8.**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BCG 백신 접종을 지연했다면 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TST 없이 BCG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숙아나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다면 퇴원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 사유로 TST를 미실시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외부와의 차단 및 격리보호 되었을 것을 고려하여 비용상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BCG 백신을 접종했다면 적합한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여 전산등록(비용상환 신청) 합니다.

\* 의학적 소견: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 입원일 및 퇴원일 등록

###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Tdap)

**Q** 1. (지연접종) DTaP 4차 접종을 하지 않은 4세 아동의 접종일정은 어떻게 하나요?

**A** 1.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4차 접종을 실시하고, 5차 접종은 생략합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순차적으로 전산등록(DTaP 4차)하면 비용신청 되며, 이후 접종은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 접종합니다.

**Q** 2. (지연접종) DTaP 백신 접종을 한번도 받은 적 없는 7세 아동의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2.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Td 백신으로 3회 접종(0, 1, 6개월 간격)을 완료\*하되, 이 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반드시 접종하고 가능하면 첫 접종을 Tdap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이후 11~12세에 Tdap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나, 10세 이후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11~12세 Tdap 백신 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 모두 사용 가능

\* (전산등록) Tdap 백신 접종은 <Tdap-6차>에, Td 백신 접종은 <Td(그외)>에 순차적 등록

**Q** 3. (접종일정) 생후 18개월에 DTaP 4차 접종을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고 4차 (추가)에 등록 했습니다. 비용상환 받을 수 있나요?

**A** 3. 아니요.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DTaP 4차 접종 권장시기의 DTaP-IPV 혼합 백신 접종 시 DTaP 접종력은 유효하나, IPV 접종력은 최소접종 연령 (4세)을 준수하지 않은 무효 접종으로 4-6세에 재접종을 실시합니다.

**Q** 4. (접종일정) DTaP 백신 3차 접종일로부터 5개월 후 4차를 접종한 생후 18개월 아동은 재접종해야 하나요?

**A** 4. 아니요. DTaP 3차와 4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은 6개월이나,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했다면 재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접종간격이 4개월 보다 이르게 시행된 접종은 무효가 되므로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재접종 시, 디프테리아, 파상풍 함유 백신은 너무 많이 접종하면 접종부위에 국소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7세 이전에 총 6회를 초과하여 접종하지 않도록 이후 접종 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 ▶ 5. (교차접종) DTaP 단독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DTaP-IPV 혼합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A ▶** 5. 동일 제조사 백신이라면 가능합니다. DTaP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접종(1~3차)은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TaP 1차 접종을 단독백신으로 시작했다면 이전에 접종한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추가접종(4차, 5차)은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 백신 수입, 유통 등의 어려움으로 동일 제조사의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교차접종을 할 수 있으나 이전과 동일한 제품을 접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현재 유통되는 백신 중 보령바이오파마의 단독백신(DTaP) 과 혼합백신(DTaP-IPV) 교차접종 가능

**Q ▶ 6. (접종일정) DTaP 접종을 완료한 10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6. 네. DTaP 접종을 완료한 아동은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하여야 하나, 우발적으로 10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유효접종으로 간주하므로 비용상환 가능하며, 11~12세 Tdap 백신은 생략 가능합니다.

**Q ▶ 7. (접종일정) DTaP 기초접종(3차)을 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7. 네. Tdap 백신은 7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나, 우발적으로 DTaP 기초접종을 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유효접종으로 간주하여 비용상환 가능하며, 향후 11~12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합니다.

**Q ▶ 8. (접종일정) DTaP 기초접종(3차)을 미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8. 아니요. DTaP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 접종은 무효접종으로 비용상환 불가하며, 오접종일로부터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DTaP 백신으로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이후 11~12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합니다.

**Q** 9. (접종일정) 영유아 시기에 DTaP 접종을 완료한 10세 아동에게 DTaP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9. DTaP 접종을 완료한 10세 아동에게 DTaP 백신 접종은 유효접종으로 간주되므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11~12세 Tdap 백신 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11~12세 Tdap 백신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Q** 10. (접종일정) 8세에 Td 백신으로 기초 3회를 0, 1,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 아동이 11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A** 10. 네. 11~12세 접종은 Tdap 백신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권장접종간격(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6차 추가접종 시기인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 할 수 있으며 비용상환도 가능합니다.

**Q** 11. (접종일정) 아이가 외국에서 DTaP 5차 시기에 Td 백신으로 접종하였다면 해당 접종은 유효한가요?

**A** 11. 아니요. 7세 이전에 접종한 Td 백신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문연령 시기에 맞춰서 5차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Q** 12. (지연접종) DTaP 5차 접종을 지연한 7세 이상 아동에게 Tdap 백신으로 접종하려고 하는데, 약전에 Tdap 백신 중 부스트릭스는 10세 이상~성인까지, 아다셀은 11세~64세 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신으로 접종 하나요?

**A** 12. Tdap 백신 부스트릭스와 아다셀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연령 내 사용가능한 허가 약물이 없어, 백일해의 발생 및 유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범위 초과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 (2018년 10월) 백일해 발생 현황과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어린이 대상 허가 범위 초과 사용 기준 권고안 안내

**Q** 13. (백신종류) 1차, 2차를 펜탁심으로 접종한 아이가 지연되어 생후 13개월에 3차 접종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펜탁심 접종이 가능한가요?

**A** 13. 펜탁심(DTaP-IPV/Hib)은 기초접종 3회(생후 2, 4, 6개월)로 허가 되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후 연령에서의 펜탁심 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므로 테트라심(DTaP-IPV)과 Hib백신으로 각각 접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14. (접종일정) DTaP-IPV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 백신은 기초접종 3회(생후 2, 4, 6개월)로 허가되어 있는데 생후 12개월 이후 아동에게도 접종 가능한가요?

**A** 14. 생후 12개월 이후에도 기초 3회 접종시 보령 DTaP-IPV 백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Q** 15. (지연접종) DTaP 백신 접종이 지연되어 Tdap 백신 접종이 필요한 7세 이상 소아에게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5. DTaP 백신 접종이 지연된 7세 이상 소아는 ‘Tdap/Td 따라잡기’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Tdap 백신 접종이 필요한 대상에게 Td 백신으로 접종되었더라도 유효한 접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나 이전에 Tdap 접종력이 없어 반드시 Tdap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이 불가 합니다.

**Q** 16. (접종일정) 7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DTaP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2차 접종일로부터 4주 후 3차 접종하였는데 비용상환 되나요?

**A** 16.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에 따라 7세 이상 소아는 DTaP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지만 2~3차 최소접종 간격(6개월)을 미준수 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DTaP/Tdap/Td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7세 이상은 2~3차 최소 6개월 간격

**Q** 17. (접종일정) 8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Tdap-Td-Td(0-1-6개월 간격) 일정으로 접종 후 12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하면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17.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7~9세 대상자가 Tdap/Td 따라잡기 일정을 준수하여 11~12세에 Tdap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Q** 18. (접종일정) 9세 11개월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Tdap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10세 8개월에 Td 백신으로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12세에 Tdap 백신 접종하면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18.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서 10세 이후 Tdap 접종력이 없다면 Tdap/Td 따라잡기 일정을 준수하여 11~12세 Tdap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 4. 폴리오(IPV)

**Q** 1. (접종일정) 국외에서 OPV 백신(경구용 폴리오 생백신)으로 기초(1~3차)접종을 완료한 6세 아동입니다. 4세 이후에 3차 접종하면 4차 접종은 생략하나요?

**A** 1. 아니요. 다른나라에서 OPV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총 4회 접종 합니다. 나머지 접종은 IPV로 실시하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OPV(Oral Polio Vaccine)와 IPV(Inactivated Polio Vaccine)간 교차접종 가능

**Q** 2. (지연접종) 생후 2개월에 폴리오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접종이 지연된 4세 아동이 2차와 3차를 4주 간격으로 접종했는데,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상환은 가능하나요?

**A** 2. 4세 이상에서 폴리오 백신 3차 접종 시 2차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6개월)을 미준수했다면 오접종일로부터 6개월 이후 4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심사기준을 미준수한 3차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능하며, 4차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4세 이상에서 폴리오 백신 3차 접종 시 2차 접종과는 최소 6개월 간격

**Q** 3. (접종일정) 6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 폴리오 접종을 시작하였고 2차 접종 4주 후 IPV 백신으로 3차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하나요?

**A** 3. 조혈모세포이식 후 폴리오 재접종 시 4세 이상의 2~3차 최소접종 간격은 6개월이므로 미준수 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Q** 1. (지연접종) Hib 백신 접종력이 없는 6세 아동은 접종이 가능한가요?

**A** 1. 아니요. 일반적으로 5세(생후 60개월) 이상의 소아는 무증상 감염에 의해 Hib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어 접종이 필요없습니다. 단, 침습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5세 이상 소아가 Hib 접종력이 없다면 1~2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침습 Hib 감염의 고위험군: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초기 요소 보체결손증, 특히 IgG2 이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아에서는 연령에 따라 1~2회 접종 가능(2회 접종 시 8주 간격)



**Q** 2. (백신종류) DTaP 백신과 폴리오 백신은 2차까지, Hib 백신은 3차까지 접종한 생후 15개월 아동이 Hib 4차 접종을 5가 혼합백신(DTaP-IPV/Hib)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A** 2. 권장하지 않습니다.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기초접종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어, Hib 4차 접종 시 해당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6. 폐렴구균(PCV, PPSV)

**Q** 1. (지연접종) 폐렴구균 백신 접종력이 없는 6세 아동은 비용지원 가능하나요?

**A** 1. 아니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5세(생후 60개월) 이상 소아는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 등의 5세 이상 소아는 과거 접종력이 없으면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2. (지연접종) 생후 24~59개월 연령에서 폐렴구균 백신 1차 접종을 10가 백신으로 시작한 경우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권장되는데 생후 58~59개월에 10가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2차 접종을 할 시기에는 60개월이 넘는데, 2차 접종비용지원 가능하나요?

**A** 2. 아니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5세(생후 60개월) 이상 소아는 폐렴구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10가 백신으로 폐렴구균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연령이 5세 이상(생후 60개월)이면 2차 접종은 불필요하며,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Q** 3. (특수상황의 접종) 면역저하 질환이 있는 3세 소아입니다. 이전에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4회 모두 접종하였고 폐렴구균 다당 백신으로 추가접종 하면 비용지원 가능하나요?

**A** 3. 예.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등)은 10가 또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2세 이상에서 다당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4. (교차접종) 이전에 폐렴구균 10가 백신으로 접종하였는데 3차 접종을 13가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만약 교차접종이 시행되면 다음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실시하나요?

**A** 4. 아니요. 폐렴구균 10가 백신과 13가 백신 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으므로 기초 및 추가접종 시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교차접종 발생 이후 접종은 두 가지 백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종하되, 접종횟수가 많은 백신을 선택하여 접종을 완료합니다. 우발적인 교차접종은 접종력을 인정하여 비용상환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과거 접종력 확인 절차 등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7. 로타바이러스(RV1, RV5)

**Q** 1. (교차접종)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력이 없는 생후 15개월 영아인데, 접종 가능한가요

**A** 1. 생후 15주 0일부터는 1차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백신 모두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생후 14주 6일입니다.

**Q** 2. (접종일정) 생후 15주 이상인 아이에게 우발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를 접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생후 15주 0일부터는 1차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14주 6일이 지나서 1차 접종을 시행했다면 이전 접종과 최소 4주 간격으로 모든 차수를 생후 8개월 0일까지 접종을 완료 합니다(로타릭스는 2회, 로타텍은 3회).

※ 두 가지 백신 1차 접종 가능 최대 연령: 생후 14주 6일

**Q** 3. (교차접종)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로타릭스(RV1)로 접종한 영아에게 2차 접종 시 로타텍 (RV5)으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A** 3. 아니요. 두 가지 로타바이러스 백신간 교차접종은 안전성, 면역원성, 효과 등에 관한 연구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교차접종은 접종력을 인정하여 재접종은 필요하지 않으며, 3차는 가급적 직전 차수 접종에 사용한 로타텍(RV5)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합니다.

(총 접종 횟수가 3회가 되도록 함).



**Q ▶ 4. (동시접종)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A ▶ 4.** 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DTaP, Hib, IPV, B형간염, 폐렴구균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접종은 연구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 간격이 없습니다.

**Q ▶ 5. (동시접종) 미숙아가 퇴원하여 BCG 접종하려고 하는데,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A ▶ 5.** 네,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경구용 생백신으로 비경구용 생백신(MMR, MMRV, 수두, 대상포진, 황열, 일본뇌염 생백신, BCG) 및 인플루엔자 생백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상호 간의 접종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Q ▶ 6. (지연접종) 생후 2개월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영아입니다.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6.** 접종 간 8주 간격을 지키는 것을 추천하나, 지연된 경우 최대 생후 8개월 되는 첫째날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 로타릭스(RV1) 2회, 로타텍(RV5) 3회(최소 4주 접종간격 고려)

**Q ▶ 7. (지연접종) 생후 2개월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 이후 접종을 못한 채 생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접종해도 되나요?**

**A ▶ 7.**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생후 8개월 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 연령에서의 접종 후 장중첩증(장겹침증)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접종하지 않습니다.

**Q ▶ 8. (교차접종) 로타바이러스 1차 접종은 로타릭스(RV1)로 접종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다른 백신으로 해도 되나요?**

**A ▶ 8. 아니요.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가와 5가 두 종류입니다. 이 두 백신 간의 교차접종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전에 사용한 백신 종류를 전혀 알 수 없거나 백신 공급의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제품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차접종을 해야 한다면 5가 백신이 한번이라도 사용되었거나 이전에 접종한 백신을 알 수 없을 경우는 총 접종 횟수가 3회가 되도록 접종합니다.

**Q ▶ 9. (접종일정)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최대 접종가능 연령을 지나서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 9.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가능한 최대 연령은 생후 8개월 0일까지이며, 최대 연령 이후 접종은 비용상환 계약서 갱신일이 합니다.**

**Q ▶ 10. (교차접종) 로타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 시 1차 접종에 사용한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교차하여 접종하였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 10.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교차하여 접종하면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다만, 1차와 2차 접종 백신이 교차하여 접종된 대상은 3차 접종 시 RV 교차접종 예외인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접종 시 RV5 백신이 한 번이라도 사용되었다면 총접종 횟수 3회가 되도록 접종하여야 하므로 3차 접종 시 직전 차수 사용 백신으로 접종하고 적합한 '의학적 소견'을 입력한 후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학적 소견: 이전 교차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행된 교차접종

※ (교차접종 등록) 2차 접종에 사용한 백신으로 3차 접종 후 순차적 등록  
 예시) RV1 → RV5 → RV5 3차로 등록, RV5 → RV1 → RV1 2차로 중복등록



## 8.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Q 1. (특수상황의 접종) MMR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소아가 가와사키병으로 1주 만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 받았습니다. MMR 백신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 네. MMR 백신접종 후 2주 안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면 백신의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면역글로불린 주사 후 최소 11개월 뒤에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재접종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2. (접종일정) 유행 상황이 아닌데, 생후 11개월에 MMR 백신 1차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2.** 아니요. 1차 최소 접종연령(생후 12개월)을 미준수한 이른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최소 접종연령보다 이른접종은 무효로 간주하고 재접종해야 하며, 재접종은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MMR 1차 최소 접종연령은 4일 이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2023. 8. 7.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제6판))

**Q 3. (접종일정) 홍역 유행 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면 생후 12개월 이전에 MMR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나요?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A 3.** 네. 홍역 유행상황 시 해당 유행지역에 거주하는 생후 6~11개월 영아는 MMR 가속접종이 필요하므로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가속접종은 접종 횟수에 포함 시키지 않고 권장 접종연령(생후 12개월 이후)에 2회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총 3회 접종).

**Q 4. (접종일정) 1세 생일이 되기 1일 전에 MMR 백신 1차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4.** MMR 백신 1차 접종은 최소접종 연령의 단축인정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 생일이 되기 전에 접종한 경우 비용지원이 불가합니다.

※ MMR 1차 최소 접종연령은 4일 이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2023. 8. 7.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지침 개정(제6판))



## 9. 수두(VAR)

### Q 1. (자연접종) 자연한 수두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A 1.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고 접종력이 없는 12세 이하 아동은 1회 접종이 필요하고,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과거 수두병력 및 접종력이 없는 13세 이상 아동은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필요

### Q 2. (접종일정) 1세 생일이 되기 2일 전에 수두 백신 접종 가능한가요?

- A 2. 아니요. 수두 백신은 최소 접종연령의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 생일 되기 전에 한 접종은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Q 3. (접종일정) 9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수두 백신 1차 접종 후 4주 뒤에 2차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A 3.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을 준수한 재접종은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9세 소아는 수두 백신 1차 접종 후 최소 3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시행하며, 실시기준 미준수 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후 수두 접종: 13세 미만은 최소 3개월 간격, 13세 이상은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필요

## 10. A형간염(HepA)

### Q 1. (특수상황의 접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의 A형간염 접종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 A 1. 조혈모세포이식 후 6~12개월 이후에 6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다만, 예방접종 비용은 2012.1.1. 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합니다.

### Q 2. (교차접종) 중국에서 A형간염 약독화 생백신으로 1차 접종했는데, 2차 접종은 국내 유통 중인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 A 2. 아니요. WHO 자료에 따르면 A형간염 약독화 생백신은 1회 접종이 권고되므로 중국에서 약독화 생백신으로 1회 접종했다면 A형간염 접종 완료자로 판단합니다.  
 ※ 위 사례 보호자에게 더 이상의 A형간염 접종이 불필요함을 설명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모 기능 또는 의학적 소견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접종관리를 합니다.



**Q** 3. (허가연령) 보령 A형간염 약전에는 허가연령이 12개월~2세미만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2세 이상의 소아에게 이 백신으로 1차 접종해도 되나요?

**A** 3. 아니요. 2세 이상 소아에게 보령 A형간염 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로 1차 접종하면 비용상환 불가능합니다. 2차 접종은 사업대상 범위 내에서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접종은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Q** 4. (교차접종) 보령바이오파마로 1차 접종 후, 24개월 이상 아이의 2차 접종은 타제품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한가요?

**A** 4. 네, 가능합니다. A형간염 백신은 다른 제조사의 백신과 교차접종 가능합니다.

## 11. 일본뇌염(JEV)

**Q** 1. (교차접종) 일본뇌염 1차를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하고 2차 시기에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A** 1. 아니요.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 효과 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으로 1차 접종했다면, 2차 접종도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간 교차접종은 접종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불활성화 백신 1차란에 전산등록 필요) 비용상환도 제외됩니다. 다만, 첫 교차접종 이후 접종은 두 가지 백신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접종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 (접종용량) 3세 이상에서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 0.7ml 백신이 없어 0.4ml 백신 2vial을 사용하여 접종해도 되나요?

**A** 2. 아니요. 식약처 사용허가 권장기준에 따라 3세 이상은 반드시 0.7ml 백신을 사용하여 권장용량(0.5ml)을 접종합니다. 이에, 0.4ml 백신으로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 0.4ml로 접종했다면 0.7ml로 빠른 시일내에 재접종 필요(비용지원 가능)

**Q ▶ 3. (지연접종)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을 지연하여 9세에 접종한 아동은 5차 접종을 해야 하나요?**

**A ▶ 3. 네.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5차 접종은 필요합니다.**

다만, 4차와 5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5년)을 고려하여 접종해야 하므로 5차 시기 연령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용지원은 제외됩니다.

**Q ▶ 4. (지연접종)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지연하여 4세에 접종한 아동이 6세에 4차 접종하면 해당 접종력이 인정되나요?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4. 아니요. 3차 접종을 4~9세에 실시했다면 다음은 12세에 접종해야 합니다. 이른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하며, 재접종은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12세에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 5. (교차접종)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은 이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데, 기존에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한 아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5.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으로 나머지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차접종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 2차 접종 후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교차접종 시 강한 기왕반응이 관찰되었고, 문제가 되는 이상반응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Q ▶ 6. (접종일정) 중국에서 약독화 생백신 1차를 생후 11개월에 접종했는데, 생후 12개월에 재접종 해야 하나요?**

**A ▶ 6. 아니요. WHO에서는 약독화 생백신은 8개월부터, 재조합 키메라 바이러스 백신은 9개월부터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후 12개월에 접종을 추천하지만 중국에서 접종한 생후 11개월 접종은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하며, 다음 접종은 2차 접종 권장시기에 접종하도록 합니다.**



**Q 7. (교차접종)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간 교차접종 가능한가요?**

**A** 7. 네. 가능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두 약독화 생백신의 교차접종 연구 결과에 따라 교차접종이 가능하므로, 2차 접종을 국가 지원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면 비용지원 가능합니다.(23.8.7.~)

\* 2차 접종을 국가 미지원 백신으로 접종하면 비용지원 불가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간 교차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지원 가능(2023. 8. 7. ~)

**12. 인플루엔자(Flu)**

**Q 1. (접종일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1회 접종력만 있는 9세 미만의 소아는 2회 접종이 필요하며, 과거 2회 접종력이 있는 소아와 9세 이상의 소아는 매 절기 1회 접종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백신주에 따라 접종기준이 바뀔 수 있고, 사업기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매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 (기타)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으로 인플루엔자 출장접종이 가능한가요?**

**A** 2. 아니요. 백신의 안전한 수송 및 보관의 문제와 불충분한 예진, 예방접종 기록 관리 미흡,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의 대처문제 등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접종 주체와 관계없이 기관방문이나 간이 접종실에서 수행하는 형태의 단체 예방접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Q 3. (접종일정)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처음 하는 8세 11개월 아동입니다. 2차 접종시기에 9세가 되는데 2차 접종을 해야 하나요?**

**A** 3. 예. 2회 접종이 필요한 8세 아동에서 1차 접종 후 2차 접종할 시기에 9세가 되더라도 2차 접종을 해야 하므로,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2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Q 1. (참여방법)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동의서 구득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등록 화면에서 사업 참여여부 체크 시 참여할 수 있으며, ①산모의 B형간염 검사결과와 ②면역글로불린, ③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에서 피접종자 정보 입력 및 저장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산모 검사결과지 입력 후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 등록, 산모검사결과지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완료

**Q 2. (참여거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 산전 진찰기관 또는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 양성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안내 하였음에도 참여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지원가능합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비용을 지원하지 않음(피접종자 자비부담)

**Q 3. (참여방법)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사업 참여 가능한가요?**

**A** 3. 네. 반드시 산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득해야 사업 참여 및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 2014년 이전 사업참여자 중 관리 진행중인 기존 대상자(쿠폰발급자)는 전산등록이 불가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전산등록 전환 승인 이후 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구득한 기관에서 5년간 보관(단, 관리중 대상자는 관리종료 시까지 보관필요)

**Q 4. (중간 참여방법) 대상자가 뒤늦게 참여를 원하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A** 4. 출생 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대상자라면 중간 참여 가능합니다. 중간 참여자는 보건소에서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등록이후 일정부터 동 사업에서 비용지원 신청됩니다.



- \* 신규대상자 신청 시 필요정보 및 서류: 사업대상자 분만정보(임신기간, 분만방법, 출생체중 등), 해당아 임신 당시 산모 검사결과지,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 ※ 전산등록방법(보건소):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등록]에서 인적정보 조회 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 후 필수정보 입력 저장
- ※ 기 신청(지급) 내역은 변경되지 않으며, 1차 접종부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비용청구를 원한다면 비용환수 후 1차 접종부터 재등록 필요

**Q 5. (승인방법)(보건소)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로 신생아를 등록하였습니다.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5.** B형간염 대사장관리 메뉴\*에서 관리상태가 ‘신규’ 아동을 선택하여 산모 검사 결과와 검사결과지 사본을 확인 후 ‘대상자승인’을 눌러 승인합니다. 대상자 승인 완료 이후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 → 메뉴보기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상자관리

**Q 6. (지원방법) 출생신고가 지연된 신생아는 예방접종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A 6.**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정출생신고기한(출생 후 1개월 이내)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는 다음 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 심사가 제한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번호가 3개월 이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시관리번호 등으로 인적정보 보완되지 않은 대상자는 추적관리 필요(대상자 추적불가 시 ‘신생아번호관리’ 메뉴에서 사유등록 후 비용지급 처리 가능)

**Q 7. (지원방법)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자녀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7.**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내역 관리를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검사가 가능합니다.

**Q 8. (검사방법) 항원·항체 검사를 EIA, CIA, ECL 등 권장하는 정량검사방법으로 하지 않았는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8.** 아니요. 사업에서 권장하는 항원·항체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항원 또는 항체 검사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시행하면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Q** 9. (예방처치 일정) 기초 1~3회 접종 완료 후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1차 재접종을 실시한 아동입니다. 2차 항원·항체 검사를 하지 못하고 2차 재접종을 시행하였는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9. 아니요.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기준에 따른 진행순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지급 불가합니다. 추가 예방처치일정표를 확인하시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0. (검사결과등록)(의료기관) 항원·항체검사 결과 항체가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입력하여, 수정하려고 하는데 결과 등록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0. 항원·항체 검사결과가 항원(음성)/항체(양성) 또는 항원(양성)/항체(음성)이면 전산등록과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어 의료기관 등록화면에서는 접종력만 확인됩니다.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정보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11. (쿠폰발급대상)(보건소) '예방접종등록' 화면 접종일에 보라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인적정보 하단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란은 공란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맞나요?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	--

**A** 11. 과거 수첩(쿠폰발급) 대상자 중 예방처치일정 미완료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공란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후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관리] 메뉴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완료' 체크 후 '대상자승인' 처리 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관리로 전환되며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으로는 더 이상 비용지원 불가
- ※ 의료기관에서는 사업관리 종료자도 공란으로 보여짐

**Q** 12. (기타)(보건소,의료기관) 산모의 인적정보를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수정할 수 없나요?

**A** 12. 산모의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검사결과지 등을 잘못 입력했다면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전산등록정보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B형간염 민원처리'에서 수정 가능



**Q** 13. (사업대상) (의료기관) 2013년 이전 출생아로 과거 쿠폰지원 대상자입니다.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13. 올해 사업 대상자인 2011년 이후 출생아는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비용지원을 위해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구득 후,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에 '전환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 사업참여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공급

**Q** 1. (협약서확인방법)(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업로드 했는데, 보건소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A** 1. 의료기관에서 계약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지만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을 모두 등록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 (협약서변경)(의료기관) 최초 계약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공급 협약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 되었습니다. 백신공급기관이 변경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2. 백신 공급처 변경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건소 승인 이후부터 변경 정보가 반영되니, 승인이 지연되면 관할 보건소로 계약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계약신청관리' → 변경된 협약서 업로드

**Q** 3. (백신계약체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두 가지 중 한 가지 백신만 선택하여 계약 체결 가능한가요?

**A** 3.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백신 종류(HPV 2가 또는 HPV 4차)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제출(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두 가지 백신 모두 접종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 협약서를 추가 제출(업로드)하고, 보건소에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Q** 4. (오등록)(의료기관) HPV 백신 접종력 등록 시 백신정보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미 비용지급 됐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4. 접종내역을 삭제하고 재등록해야 합니다. 비용지급 심사가 진행된 접종에 대한 수정/삭제는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 가능하니, 해당 보건소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5. (협약업체변경) 의료기관에서 협약업체(백신공급기관)가 변경되었는데, 협약업체를 변경하지 않고 접종 하거나, 협약업체를 변경한 후 기존 협약업체에서 공급받은 백신으로 접종하여 백신비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 접종등록된 정보의 협약업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접종내역이 등록된 협약업체 변경은 관할 보건소에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HPV 예방접종 실시

**Q** 1. (접종일정) 12세에 HPV 2가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5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2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 네,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최소 접종연령 및 최소 접종간격(5개월)을 준수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HPV 2가, HPV 4가 실시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상환 기준 변경(2022. 3. 14. ~)

**Q** 2. (접종일정) 11세 여아에게 3개월 간격으로 HPV 2차 접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접종 안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HPV 2, 4가 백신은 14세까지 1차 접종 후 최소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차와 2차 접종간 최소접종 간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최소 접종간격을 미준수한 2차 접종은 비용지원이 되지 않아,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

최소 12주 이상, 1차 접종과는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Q 3. (접종일정) HPV 1차 접종을 2가 백신으로 접종한 아동이 2차를 4가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2차 접종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3. 두 가지 HPV 백신을 교차해 사용한 경우의 안전성, 면역원성, 효과 등에 관한 연구데이터는 제한적이므로 교차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이 시행됐다면 해당 접종력을 인정하여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용상환 가능하지만, 보호자에게 교차접종 발생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Q 4. (지연접종) HPV 1차 접종 후 18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A 4.** 아니요.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하여 완료합니다. 초회 접종 연령에 따라 2차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합니다.

**Q 5. (지연접종) 12세에 HPV 1차 접종을 하고 15세에 2차 접종을 하면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A 5.** 아니요.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하여 접종을 완료합니다. 이 경우 총 2회의 접종으로 완료합니다.

**Q 6. 2006년 1월생 여아인데,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 17세까지로 올해 2월 나이 18세가 되면 HPV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6.** 아니요. 2024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은 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으로 2006년생은 생일이 지났더라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기타 기입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Q 7. (저소득층확인방법) 저소득층 대상자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행복e음으로 자격 확인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7.** 행복e음으로 자격 확인이 불가능 하면 접종당일 발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차상위초과부가급여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Q▶ 8. (저소득층자격여부) 저소득층 여성 대상자가 1차 접종 후 저소득층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자격 상실 후 접종내역을 등록해도 비용상환이 되나요? 다음 접종도 비용 지원이 되나요?**

**A▶ 8. HPV 저소득층 사업대상은 접종 당일의 저소득층 계층 여부를 확인 후 접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접종 당일 저소득층임이 확인되었다면 예방접종 지원 가능합니다.**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면 저소득층 자격 상실 통보일 다음날부터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지원 불가능합니다.

### 3.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서비스 제공 관련

**Q▶ 1. (지원내용) 12세 여아에게 건강상담 또는 HPV 예방접종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A▶ 1. 아니요. 위탁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상담과 HPV 예방접종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 대상자 본인이 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예방접종서비스만 제공 가능

**Q▶ 2. (지원내용) 예방접종 대상자가 건강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예방접종 대상자가 건강상담 점검표에 건강상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표시하면 건강상담을 거부한 것으로,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화면 하단에 ‘건강상담 동의안함’에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또한 건강상담을 시행하지 않은 건은 건강상담 비용(진료비) 청구가 불가하니 주의합니다.**



**Q 3. (사업대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주민등록말소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HPV 예방접종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 3.**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등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4. (상담대상) 의료급여자(1종/2종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건강상담 비용(초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나요?**

**A 4.** 12세 여성청소년에게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 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면 진료비 청구 시 요구되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건강상담비용(진찰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자의 보험자부담금 청구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안내

**Q 5. (상담대상) 상담대상자(12세)가 아닌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 5.** 12세 여아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초경 등)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HPV 확대대상자 대부분은 초경 시기가 지나 상담을 권고하지 않으며 건강상담비도 지원 불가능합니다.

**Q 6. (상담비확인)(의료기관) 상담비 지급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6.**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의 메뉴보기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상담비지급결과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7. (상담비확인)(의료기관) 건강상담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은 지급이 완료 되었는데, 상담비(본인부담금)에 대한 지급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A 7.** 상담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정보를 우선 확인하시고, 피접종자 관할 보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시 상담코드(상병분류기호 R688, 특정내역구분 MT002, 상담대상자 코드 F012) 기재여부(코드 누락 시 질병관리청에서 확인불가, 코드기재 후 재청구 필요)
- ② 상담동의여부 등록정보
- ③ 상담비 및 접종비 청구시점(청구시점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는 상담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④ 접종비 지급결과(실시기준 미준수 등으로 비용상환에서 제외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불가)
- ⑤ 진료일(요양개시일)과 접종일자 동일여부 확인

#### 4. 상담비 진찰료 산정방법 등

##### ▶ 일반사항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건강보험 이외 의료급여, 보훈 대상자 포함여부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이외 의료급여, 보훈 포함
2	외래 및 입원 시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라 예방접종과 진찰·상담이 실시된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방법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각각의 본인부담률 적용

##### ▶ 수가산정 관련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 시 야간·공휴 가산 적용 여부	현행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1-가. 초진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야간·공휴·토요 가산 적용함
2	같은 날 동일 의사에게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진찰·상담 이외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 받은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에서 제공하는 진찰·상담에 대한 진찰료 1회만 산정 ※ 다만,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별도 질환을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 가능 (분리청구)
3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 시 선택 진료 추가비용 산정 여부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날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 이외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산정 가능(분리 청구)
4	예외인정 대상(예: 면역저하자에게 3회 접종하거나 조혈모세포이식 등 타당한 의학적 사유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의 경우 진찰료도 3회 산정 가능한지 여부	표준 여성청소년 건강상담 시 발생하는 진찰료는 대상자당 최대 2회까지 인정
5	HPV 예방접종 시행일 외 다른 날짜에 방문하여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하는 경우 진찰료 인정 여부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는 예방접종 시행 당일 동시에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청구관련

연번	질의내용	답변내용																				
1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는?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기재함																				
2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내역은?	특정기호 F012(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 대상자) 기재함																				
3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된 본인 일부 부담금은?	<p>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사업예산으로 지급)</p> <p><b>&lt;건강보험, 의원 외래 작성예시&gt;</b></p>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양급여비용총액 2</th> <th>요양급여비용총액 1</th> <th>본인일부부담금</th> <th>청구액</th> <th>특정내역구분 MT002</th> </tr> </thead> <tbody> <tr> <td>주<sup>1)</sup>15,310</td> <td>15,310</td> <td>주<sup>2)</sup>4,500</td> <td>주<sup>3)</sup>10,810</td> <td>F012</td> </tr> </tbody> </table> <p>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 = 진찰료 금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                      15,310원(요양급여비용총액1) X 30%(외래본인부담률) = 4,500원(100원미만 절사)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사업예산으로 지급)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p> <p><b>&lt;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원 외래 작성예시&gt;</b></p>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양급여비용총액 2</th> <th>요양급여비용총액 1</th> <th>본인일부부담금</th> <th>청구액</th> <th>특정내역구분 MT002</th> </tr> </thead> <tbody> <tr> <td>주<sup>1)</sup>15,310</td> <td>15,310</td> <td>주<sup>2)</sup>1,000</td> <td>주<sup>3)</sup>14,310</td> <td>F012</td> </tr> </tbody> </table> <p>주1) 요양급여비용총액2 = 진찰료 금액                      주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의 2호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기재                      = 2종 수급권자 그밖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 1,000원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사업예산으로 지급)                      주3) 요양급여비용총액1-본인일부부담금 = 15,310원-1,000원 = 14,310원</p>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MT002	주 <sup>1)</sup> 15,310	15,310	주 <sup>2)</sup> 4,500	주 <sup>3)</sup> 10,810	F012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MT002	주 <sup>1)</sup> 15,310	15,310	주 <sup>2)</sup> 1,000	주 <sup>3)</sup> 14,310	F012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MT002																		
주 <sup>1)</sup> 15,310	15,310	주 <sup>2)</sup> 4,500	주 <sup>3)</sup> 10,810	F012																		
요양급여비용총액 2	요양급여비용총액 1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구분 MT002																		
주 <sup>1)</sup> 15,310	15,310	주 <sup>2)</sup> 1,000	주 <sup>3)</sup> 14,310	F012																		
4	HPV 예방접종 시행 당일 진찰·상담 외 다른 행위(검사, 처치 등)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청구방법	<p>명세서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특정내역구분</th> <th>특정내역</th> </tr> </thead> <tbody> <tr> <td>예방접종</td> <td>MT002</td> <td>F012</td> </tr> <tr> <td>다른 행위 (검사, 처치 등)</td> <td>MT001</td> <td>R</td> </tr> </tbody> </table>	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예방접종	MT002	F012	다른 행위 (검사, 처치 등)	MT001	R											
구분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예방접종	MT002	F012																				
다른 행위 (검사, 처치 등)	MT001	R																				

## 5. 이상반응 관련

### Q 1. (안전성) HPV 백신은 안전한가요?

A 1. HPV 백신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2022년 기준)에서 국가예방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6년 첫 허가 이후로 500백만 이상 접종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 세계에서 수집된 이상반응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HPV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큼 안전성 우려는 없으며 여전히 안전하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Q 2. (이상반응 종류) HPV 예방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2. HPV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타 영유아 백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HPV 백신의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의 통증\*, 부종, 발적, 두드러기 같은 국소반응과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전신반응이 있으며, 이런 증상은 보통 2~3일 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또한, 매우 드물게 심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HPV 백신은 타 백신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빈도가 높은 편

일부 청소년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심한 긴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는 건강상태가 좋은날 접종하기, 접종 후 반드시 20~30분간 접종 기관에 앉거나 누워 경과 관찰하기 등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023. 11. 30. 기준,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후 약 275만 접종 건 중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발열 등의 증상(199건, 0.007%) 발생,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증 이상반응 신고 0건

### Q 3. (안전성) 뉴스를 보면 일본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던데 사실인가요?

A 3.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3년 자국에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 등의 이상사례에 대해 접종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에 의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2014년 2월, 7월). 또한 일본 이외에 HPV 백신을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안전성 문제없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도 여전히 무료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음).

\* 백신으로 인하여 보행장애, 난소부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온라인 이슈 등은 과학적인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며, 세계보건기구 및 해당 국가들(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그 사례들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없다고 공식 발표



**Q 4. (이상반응 대응방법)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A** 4. 질병관리청은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감시하고 중증 이상반응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해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이하 PPSV23), 폐렴구균 13가 단백질합 백신(이하 PCV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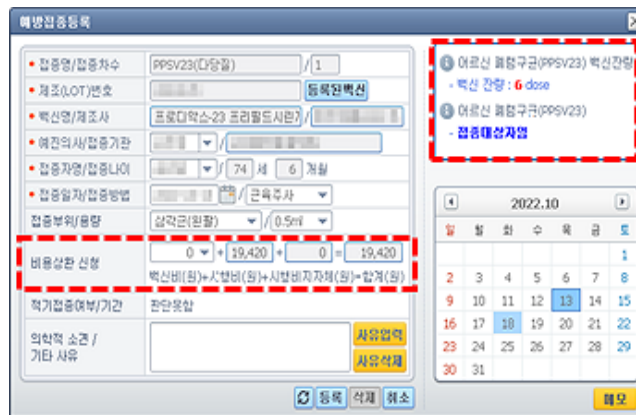
**Q 1. (사업대상) 외국인도 지원가능한가요?**

**A** 1. 네, 가능합니다. 아래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
-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자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은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 여행목적 방문자 등 제외

**Q 2. (사업대상 확인) 참여의료기관인데, 접종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2.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3. (인적정보변경)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3.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의 접종력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Q&A에 접종력 이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Q&A → (민원대상분류) 기타, (제목)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대상 접종력 이전

**Q 4. (접종일정) 2012년도(64세 7개월)에 의료기관에서 PPSV23을 접종한 1947년생인데, 5년 후 재접종 해야 되나요?**

**A** 4. 아니요.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1947년생이 2012년에 PPSV23 접종한 연령은 65세이므로, 5년 뒤 재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65세 = 2012년(PPSV23 접종연도) - 1947년(출생 연도)

**Q 5. (접종일정)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는데, 이력이 있을 경우 PPSV23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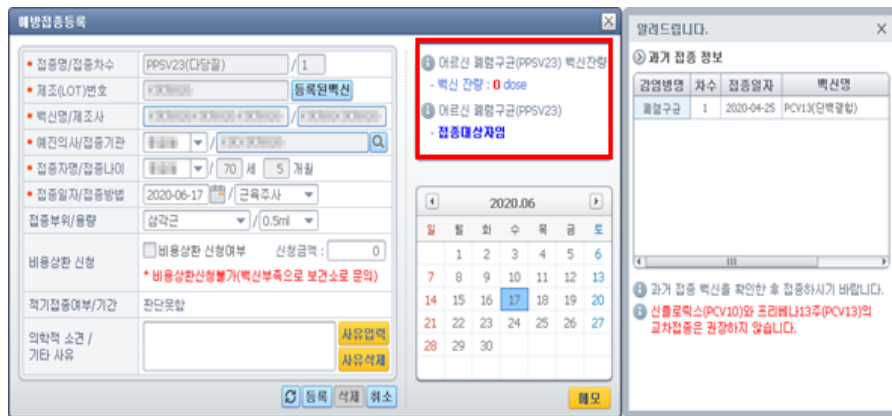
**A** 5. 네,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65세 미만에서 접종한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재접종합니다.

**Q 6. (백신잔량 및 접종정보) 접종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접종했는데, 비용상환 신청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6. ①백신잔량 또는 ②접종정보 입력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백신잔량) 백신잔량이 '0dose'는 비용상환 신청되지 않으니, 중복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기록을 우선 등록하도록 안내해주신 후,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을 재분배 및 입고등록 합니다.

재분배 후 의료기관은 기존 접종기록을 완전 삭제 후 접종정보(실제 접종일 등록, 제조번호 등)을 재등록합니다.



② (접종정보 확인) 의료기관에서 접종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비용상환 신청이 안되니, 접종력 완전히 삭제 후 재등록합니다. 만약, 재등록 이후에도 비용신청이 안된다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7. (기타) 폐렴구균 백신 과거 접종의 기억이 불명확하고, 과거 접종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제로 접종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나요?

**A** 7. 이전 접종력을 모른다면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접종하도록 합니다. 국소반응은 첫 번째 접종보다 두 번째 접종 후에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는 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국소반응 발생 후 5일 이내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Q** 8. (접종일정) 과거에 PCV13을 접종받았다고 하는데, 접종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PPSV23 접종이 가능한가요?

**A**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에 의거하여 접종을 실시했다면, 예방접종기록은 등록되어야 하나, 성인 예방접종은 전산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피접종자가 PCV13을 접종했다면 접종일로부터 1년 후(최소 8주) PPSV23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접종력이 전산등록 되지 않았다면 전산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



**Q 9. (백신종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PCV13 접종을 고려해야 되나요?**

**A** 9. 면역저하자, 무비증,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를 삽입한 환자 등은 PCV13 접종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PCV13 접종은 지원되지 않음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Q 10. (백신반납 등) 백신이 파손되거나 바늘이 오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품이 가능한가요?**

**A** 10.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은 백신을 공급한 업체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수 이후 의료기관 보관 실수 또는 접종 과정 중 백신이 파손되거나 오염되면 자체 보유 물량으로 대체하거나, 대체가 어려우면 보건소에서 백신비를 환수(공문 또는 고지서)합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및 교육이수**



**Q 1. (교육이수)(보건소) 계약체결 전 위탁의료기관 교육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A** 1. 위탁의료기관과 계약체결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의 공통필수 및 기본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규 계약체결 시, 최근 2년 이내의 기본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함.

**Q 2. (교육이수)(의료기관) 계약 체결 후 비용상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후 예방접종 건부터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보건소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승인한 비용상환 참여일 기준

**Q 3. (폐업기관) 기존에 사업 참여를 하였으나 폐업하여 타 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

**A** 3. 예방접종업무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면, 이전한 지역 관할 보건소와 다시 신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의료기관이 폐업신고 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폐업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연계를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신규 계약체결 시, 최근 2년 이내의 공통필수, 기본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함



**Q ▶ 4. (참여백신 수정)(보건소) 의료기관에서 접종실적이 없는 일부 백신 접종을 중단하여 위탁계약 참여백신 정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 4.**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항목이 변경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확인증 수정 및 제출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승인

**Q ▶ 5. (교육이수)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며, 반드시 의사가 이수하여야 하나요?**

**A ▶ 5.**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서 이수가 가능하며, 예방접종 위탁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2년마다 보수교육(공통필수 포함)을 이수해야 재계약(5년) 또는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 6. (교육과목)(의료기관) 교육시스템에 로그인을 했는데, 과정안내 항목에서 NIP사업 관련 교육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 ▶ 6.** 교육과정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소속구분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에서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니면 탈퇴 후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탈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 is.kdca.go.kr](https://is.kdca.go.kr))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나의정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권한의 승인 상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로그인 후 화면 좌측의 권한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관리USER(학습자) 권한 승인요청 관련은

☎ 043-719-8398,8399,8386로 문의

**Q ▶ 7. (교육이수)(의료기관) 사업 참여 전 보건소 주최 사업 설명회 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 7.** 당해년도 공통필수, 기본교육 수료 시 보수교육을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교육 수강 후 매 2년마다 공통필수, 보수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Q** 8. (교육이수)(의료기관) 봉직의로 있던 의료기관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기본교육을 수강 하였습니다. 개업하여 의료기관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교육을 재수강하여야 하나요?

**A** 8. 소속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교육 수료 시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교육 수강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추가 교육 수강시, 현재 의료기관으로 재가입 후 교육을 수강하기길 바랍니다.

## 2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등록 및 시스템 운영(위탁의료기관 이용안내)



**Q** 1. (요양기관번호변경) 위탁의료기관의 요양기관코드번호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내정보'에서 회원 탈퇴 후 변경된 소속기관으로 신규 가입하여 필요한 업무권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요양기관 정보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Q** 2. (기관정보변경) 의료기관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 정보관리'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Q** 3. (권한신청) 예방접종관리에 대한 권한 신청 시 "권한정보가 부적합 합니다." 등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여 신청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 '도구' → '호환성보기기설정' → 'kdca.go.kr' 추가 후 재신청합니다.



**Q** 4. (권한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 메뉴에 ‘예방접종관리’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A**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가입완료) 후 화면좌측의 ‘권한정보’에서 예방접종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권한이 승인되면 메뉴에서 예방접종 관리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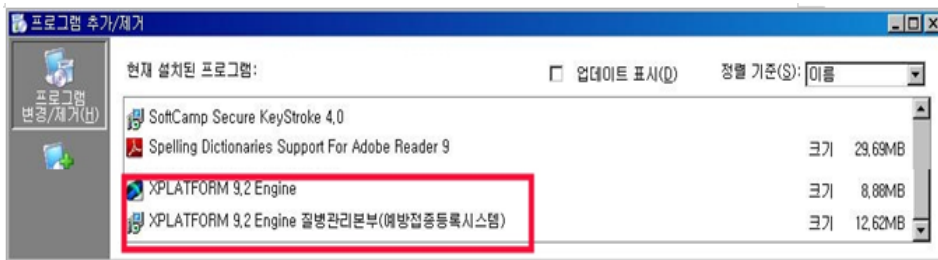
**Q** 5. (비용신청)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예방접종 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5. 의료정보업체에 질병관리청으로 전산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트 요청하신 후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에서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기록(비용사업) 연계가 가능한 업체명: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네오소프트뱅크, 다솜정보, 유비케어, 포인트닉스, 전능아이티, 병원과컴퓨터, 중외정보기술, 메디칼소프트, 메디컴코리아, 엠디소프트, 금우뱅킹소프트, 포닥터, 케이컴, 서전정보개발, 나온소프트, 대일전산, 메트로소프트, 엔지테크, 지누스, 자인컴, 메딕슨, 이헬스플러스, 뉴마테크, 지센커뮤니케이션,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Q** 6. (설치오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6.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프로그램 추가/제거)] 에서 ‘XPLAFORM 9.2 Engine’, ‘XPLAFORM 9.2 Engine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삭제합니다.





**Q ▶ 7. (인적정보)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형식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A ▶ 7.**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맞는지 보호자에게 재확인하고,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8. (인적정보)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8.**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차트프로그램) 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Q ▶ 9. (인적정보)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출생일이 다른면 어떻게 하나요?**

**A ▶ 9.** 실제 태어난 날짜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르면 출생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정보수정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Q ▶ 10. (인적정보) “행정안전부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접종하여 등록(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정보가 변경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확인바랍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1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주민등록번호 오류), 보호자에게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주민등록등본 등)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로 연락하시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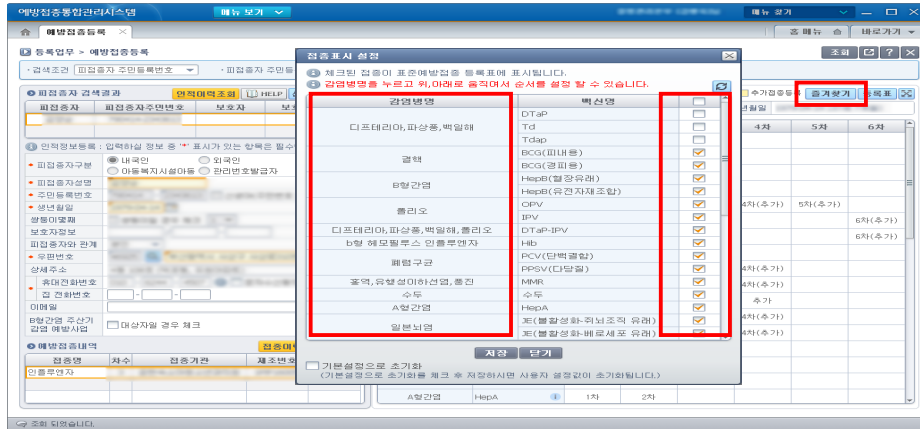
**Q ▶ 11. (재접종) 접종내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재접종한 기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 11.** 동일백신, 동일차수에 중복등록이 필요하면 해당 접종차수 접종일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접종내역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접종정보가 중복으로 등록하면 접종일 박스가 노란색으로 변경됨

**Q** 12. (접종등록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표준예방접종 등록표’는 의료기관에서 자주 등록하는 접종만 따로 설정할 수는 없나요?

**A** 12. 현재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등록화면 오른쪽 상단의 ‘즐거찾기’를 클릭하여 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을 선택하거나 감염병 명을 Drag&Drop하여 순서를 변경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Q** 13. (기관정보수정)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위탁계약현황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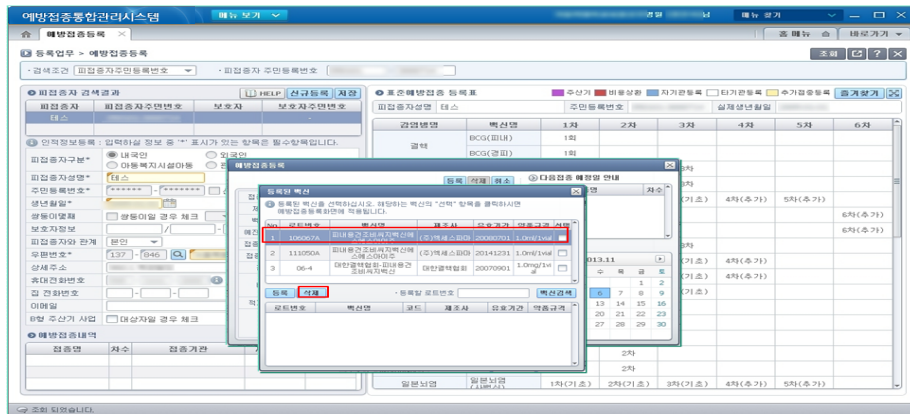
**A** 13. ① ‘질병정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 정보관리’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 위탁계약정보 외 기관정보(전자서명용 기관인증서 등) 직접 수정 가능

**Q** 14. (접종정보) 접종내역 등록 시 매번 백신제조번호를 검색해야 하나요?

**A** 14. 자주 사용하는 백신제조번호를 설정(등록/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화면의 차수 선택 시 생성된 팝업창에서 ‘등록된백신’ 검색 후 조회목록에서 해당 백신의 제조번호를 선택 후 ‘등록’해 상단 목록에 추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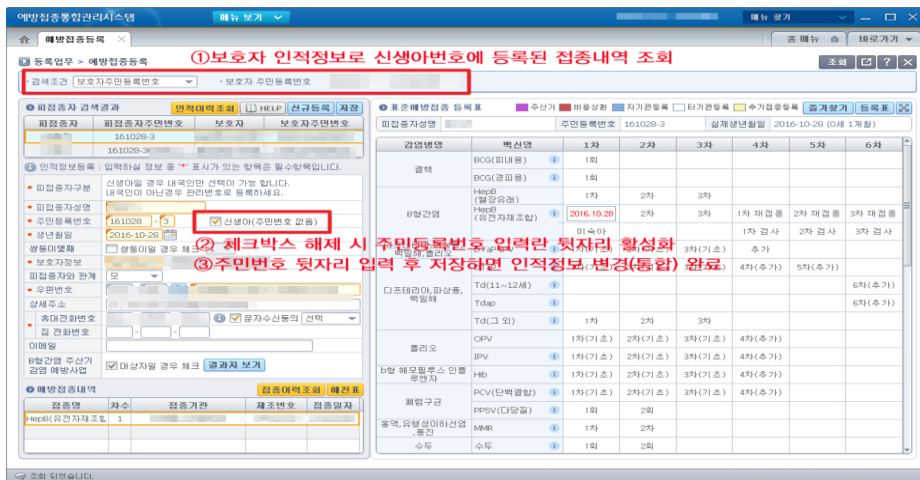


**Q** 15. (인적정보) 출생신고 전 임시 신생아번호 접종내역을 주민등록번호로 어떻게 통합관리 하나요?

**A** 15. 보호자의 주민번호로 신생아번호 접종내역을 조회합니다. 신생아(주민번호없음) 체크박스 선택해제 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활성화되고,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저장하면 주민번호 정보로 통합됩니다.

※ 임시 신생아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중복 접종내역이 존재하면 통합이 불가하므로 중복등록 내역을 우선 처리 후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번호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다르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98~8399)로 인적 및 접종정보 통합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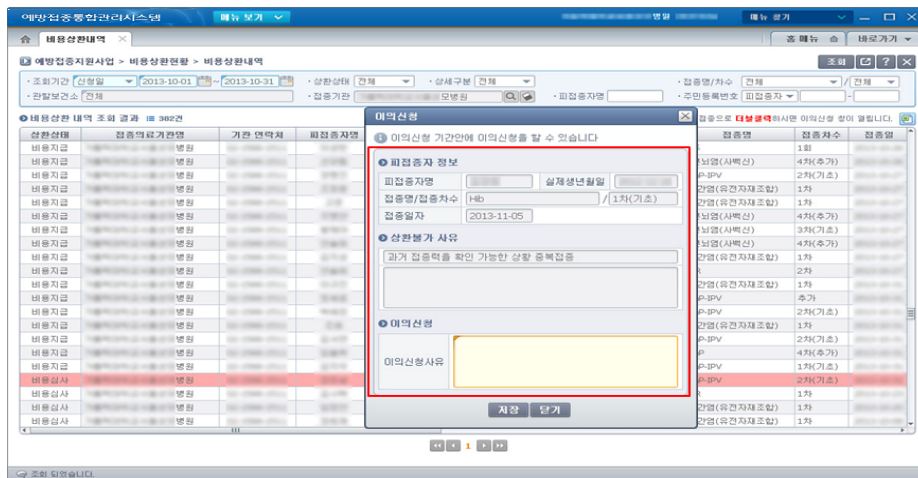


**Q** 16. (비용신청) 과거 접종력을 조회하였는데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16.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기록이 등록된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은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타당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B형간염 고위험군,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등)는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면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17. (이의신청) 비용상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7. ‘비용상환내역’ 메뉴에서 비용상환 신청건 중 상환불가로 심사된 내역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상환불가 내역’을 더블클릭 후 ‘이의신청 팝업창’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완료되며, 이의신청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Q** 18. (폐업기관) 폐업 의료기관의 과거 비용신청 된 내역은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A** 18.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어 과거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을 요청 하시면 보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19. (인적정보) 비용상환 신청건에 대한 행정안전부 오류내역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오류내역'에서 내역 조회 후 수정 할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여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내용을 수정 후 '수정'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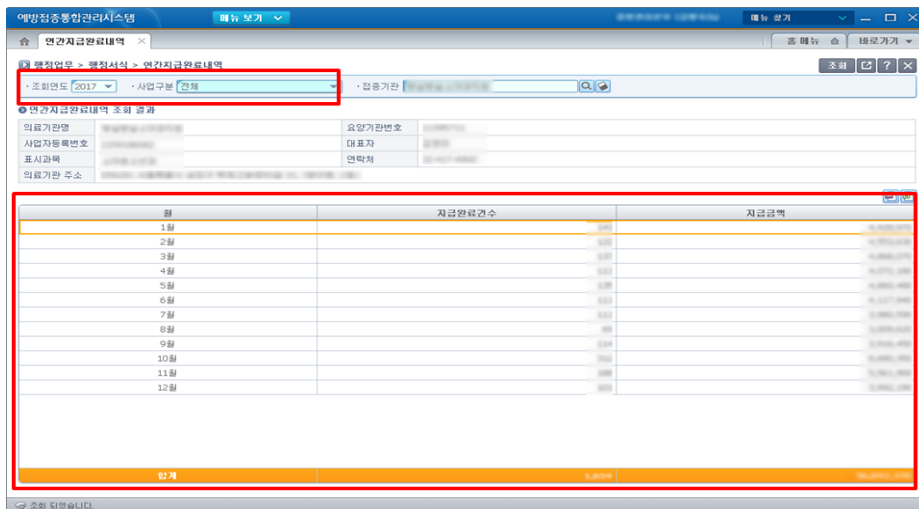
**Q** 20. (지급계좌수정) 비용상환 지급계좌번호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계좌정보 확인 후 통장사본을 새로 등록하고, 관할 보건소에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Q** 21. (비용상환내역) 1년간 비용상환 지급받은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메뉴에서 확인 가능 한가요?

**A** 2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의 '메뉴보기' → '행정업무' → '행정서식' → '연간지급완료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Q** 1. (로그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등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A** 1. 교육 수강시에는 간편인증서 및 개인 공동인증서(은행발급)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공동인증서로 두 명 이상 중복사용이 불가(즉, 하나의 공인인증서에 하나의 핸드폰번호, ID만 사용 가능)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2. (접속오류) 교육사이트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하면(실명 인증 오류, 공인인증서 변경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Help desk(☎043-719-8272, 8282)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 3. (요양기관명 변경) 요양기관번호는 동일하나 소속(요양)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A** 3.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정 및 확인 가능합니다.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한 후, 소속기관명 확인 후 수정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소속(요양)기관명 수정요청 → 익일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소속기관명 변경 여부 확인
- Q** 4. (교육이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입니다.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수강종료과정 에서 '수료'로 확인되는데 관할 보건소에서는 병원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 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4. 누리집 오른쪽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여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IP 사업 교육은 의사 대상 교육이므로 간호사 등 기타 직군이 수료하면 미수료 또는 미인정으로 처리
- Q** 5. (교육이수)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본인의 개인 정보로 회원가입 후 동 ID로 의사분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사분이 교육 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5. 위탁계약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접종시행 의사 1인 이상이 반드시 본인의 개인정보로 회원가입 후, 직접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접종시행 의사가 아닌 분이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교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Q** 6. (교육진도) 다음 강의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6.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① 해당 연도의 교육인지 확인바랍니다.
  - ②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explore'인 경우 프로그램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를 'Google Chrome' 또는 'Microsoft Edge', '네이버 웨일'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Q** 7. (교육이수)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고 진도율도 100%인데 '수강종료과정(수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A** 7. 해당 과정의 마지막 강의의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화면 로딩이 끝나면 동영상 강의창을 닫으면 됩니다.  
※ 수강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과로 문의

**Q** 8. (PDF 파일) 예방접종 교육과정 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A** 8. PDF파일을 다운 받았으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포털사이트에서 PDF뷰어 (Adobe Reader)를 다운받아 설치하기 바랍니다.

**Q** 9. (교육이수) 교육수료증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A** 9. 교육시스템 홈 화면 상단의 '나의강의실-학습완료과정' 또는 '수료증출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0. (소속변경) 소속 의료기관이 변경되어 기존 수강내역을 현재 이전한 소속기관의 ID로 이관했습니다. NIP사업 계약을 위해 수료증을 출력했는데 이전 의료기관 주소로 출력됩니다.

**A** 10. 수료증의 의료기관명과 기관주소는 수료 당시의 기관명과 주소로 인쇄되며, 해당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했다면 보건소 교육시스템 관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같음합니다. 따라서 이전 의료기관에서 수료한 기본교육(최근2년)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Q** 11. (로그인) 기존에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교육을 수료했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니 해당 교육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A** 11.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교육을 수료한 아이디와 공인인증서에 등록된 아이디가 달라 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8386, 8382)로 문의하여 교육내역 이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12. (로그인)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도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A** 12. 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주소창 오른쪽 상단의 ☆ 표시 왼쪽의 팝업 차단 여부를 확인하여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 4 이상반응 관리

**Q** 1. (신고방법)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A** 1. 이상반응 신고를 받게 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 보기 → 예방접종안전관리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에서 신고합니다.

**Q** 2. (보상신청기준) 피해보상 신청 기준이 있나요?

**A** 2.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3. (보상절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시 보상 결정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3.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이 결정되면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피해보상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일부개정예 따라, 본인부담금 30만원 기준으로 보상결정처리 절차가 나뉘어집니다.

본인부담금	보상결정처리 절차
30만원 미만*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를 시·도에 제출 → ③ (시·도) 인과성 심의 및 결과 통지 → ④ (질병관리청) 피해보상금 지급 * 당월 지자체 자체 심의 현황 및 결과는 익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30만원 이상	①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시·도) 보상관련 구비서류, 기초조사 →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④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 ⑤ (질병관리청) 결과통지 및 피해보상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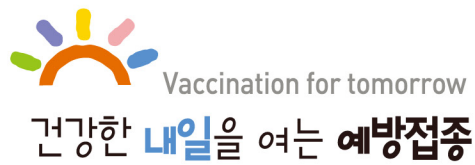
※ 보상관련 세부 사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고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7)로 문의



## 2024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

- 창 간 : 2009년 1월
- 인 쇄 : 2024년 12월
- 발 행 : 2024년 12월
- 발 행 인 :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 편집위원 : 예방접종관리과
- 자문위원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 편 집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주 소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팩 스 : 043) 719-8379
- 누리집 : <https://is.kdca.go.kr>

ISBN : 11-1790387-000679-10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Tel.043)719-8398-8399 Fax.043)719-8379  
<https://is.kdca.go.kr>

